

공개자료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7. 9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과 중미간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ENTRAL AMERICA

CONTENTS | 목차 |

1. 서문, 일반규정	5
2. 상품	7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63
4. 통관 및 무역원활화	71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73
6.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77
7. 무역구제	81
8. 정부조달	85
9. 투자	89
10. 국경간 서비스 무역	97
11. 금융서비스	103
12. 기업인의 일시입국	111

13. 통신	113
14. 전자상거래	117
15. 지식재산권	119
16. 노동	127
17. 환경	129
18. 협력	133
19. 경쟁	135
20. 투명성	137
21. 분쟁해결	139
22. 예외	145
23. 제도 및 최종규정	147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 서문, 일반규정

서문 주요 내용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시장·투자환경 창출, 각국의 발전단계 고려, 무역·투자 장벽 제거, 지속가능한 발전, WTO상 권리·의무 존중 등

일반규정 주요 내용

● 최초규정 : 자유무역지대 창설,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적용 범위 등 규정

● 목적

- 당사국간 무역 확대 및 다양화 장려
-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 공정한 경쟁 조건 증진, 투자 기회 증대
-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 보호 및 집행
- 협정의 이행과 적용·운영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절차 마련
-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의 기틀 마련

● 다른 협정과의 관계 : WTO협정과 당사국들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간 협의를 규정

● 적용 범위 :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간 적용되는 조항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중미 국가간에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일반적 정의 :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 규정

●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국 :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 중미 :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협법에 정의된 코스타리카인 (엘살바도르인, 온두라스인, 니카라과인, 파나마인)

● 지방정부(local level of government)의 정의

- 한국 :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 중미 : 지방자치당국(municipalities)

● 영역(territory)의 정의

한국	중미
1)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1)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파나마)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엘살바도르(온두라스, 파나마)가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바탕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1) 국제법과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국내법에 따른 코스타리카(니카라과)의 영역

● 관세(customs duties)의 정의

-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
-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

※ 관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 ① '94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②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
- ③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④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2. 상품

코스타리카

1 전반적 평가

● 한국과 코스타리카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6%(11,707개), 코스타리카측은 전체 품목의 95.2%(6,637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코스타리카 수입의 100%(2,8억불), 코스타리카측은 對한국 수입의 98%(3.1억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805	80.1	277,356,074	97.8	4,755	68.2	289,440,235	91.9
유관세	7,849	64.1	23,174,642	8.2	4,614	66.2	246,012,530	78.1
무관세	1,956	16.0	254,181,432	89.6	141	2.0	43,427,705	13.8
3년(B)	155	1.3	3,631,817	1.3	15	0.2	3,791	0.0
5년(C)	592	4.8	1,319,091	0.5	464	6.7	4,008,906	1.3
5년내 철폐	10,552	86.2	282,306,982	99.5	5,234	75.1	293,452,931	93.2
7년(D)	135	1.1	898,758	0.3	6	0.1	77	0.0
10년(E)	402	3.3	487,658	0.2	1,052	15.1	9,514,375	3.0
10년내 철폐	11,089	90.6	283,693,398	100.0	6,292	90.2	302,967,383	96.2
12년(F)	435	3.6	0	0.0	3	0.0	0	0.0
15년(G)	138	1.1	174	0.0	329	4.7	5,582,206	1.8
16년(H)	44	0.4	1,009	0.0	12	0.2	0	0.0
19년(I)	1	0.0	0	0.0	1	0.0	0	0.0
전체 자유화율	11,707	95.6	283,694,581	100.0	6,637	95.2	308,549,589	98.0
양허제외(X)	520	4.2	152	0.0	337	4.8	6,438,041	2.0
협정제제(Y)	16	0.1	0	0.0	0	0.0	0	0.0
총합계	12,243	100.0	283,694,733	100.0	6,974	100.0	314,987,630	1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코스타리카) SAC 2015 8단위 기준

** 수입액 : 2012~2014 3개년 평균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확보

- 화장품, 알로에음료, 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재 즉시철폐 및 형강, 타이어, 가전 제품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전체)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코스타리카 양허	
주요 품목 (관세율, %)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
철광, 석탄, 의약품, 원목, 종이류, 철강 및 철강제품, 일반기계, 정보통신기기, 전분박, 원피, 실내장구, 양식용 치어(동, 농어)	1,956	즉시철폐 (무관세)	141	석유제품, 컴퓨터, 반도체제조장비, 전화기, 전자진적회로
원유(3), 윤활유(7-8), 화학공업제품(3-8), 합성수지(4-8), 플라스틱제품(5), 타이어(5-8), 단판(2), 섬유사(1-8), 직물(8-10), 의류(8-13), 알루미늄제품(8), 가전제품(8), 전기기기(3-13), 전자부품(8), 승용차(8), 화물차(10), 승합차(10), 자동차부품(8), 의료기기(8), 커피(2-8), 향신료(8), 펌유(2-3), 원당(3)	7,849	즉시철폐 (유관세)	4,614	철광(1), 석유화학제품(1-10), 의약품(1-6), 화장품(기타)(15), 플라스틱제품(1-15), 합성고무(1), 단판(10), 섬유사(1-6), 직물(1-10), 의류(1-15),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1), 일반기계(1), 가전제품(1-15), 승용차(1), 화물차(1-15), 승합차(1-15), 자동차부품(1-10), 의료기기(1), 식용설육(1), 땅콩(1), 침개(1), 알로에음료(15), 침지(활어/신·냉/냉동)(1), 고등어(냉동)(1)
플라스틱제품(6.5), 의류(면제)(13), 전자부품(6.5-8), 전선 및 케이블(8), 의료기기(8), 코코아제제품(5), 립(20), 틸라피아(냉동)(10), 수산물가공품(20)	155	3년 철폐	15	인쇄용지(10), 전사지(10), 식물성부산물(전분박, 오일케이크, 우박)(6)
제재목(5), 단판(3-8), 신발(8-13), 유리섬유(8), 바나나(30), 구아바(30), 매니옥(45-887.4), 식물잎(8), 후추(8), 설당고자(8), 베이커리류(5-8), 참치(활어/신·냉)(10-20), 틸라피아(활어/신·냉)(10-20)	592	5년 철폐	464	정밀화학제품(6), 고무제 판·시트·스트립(6), 제재목(6), 음향기기(6-15), 조명기기(6-15), 사과(15), 바나나(15), 생강(10), 청어(조제·저장처리)(15), 캐조제·저장처리(15), 소금(15)
-	10,552	5년 철폐 소계	5,234	-
파티클보드(8), 파인애플(30), 망고(30), 파파야(30), 과일잼(30), 연어(냉동)(10), 침지(냉동)(10), 대구(냉동)(10), 어류 피레트(10-20), 바다가재(20), 게(20),	135	7년 철폐	6	파인애플(15), 망고(15), 파파야(15), 기타 수산가공품(가루·펠릿)(6)
휘발유(3-5), 섬유판(8), 합판(8-10), 데지고기(25), 양배추(27), 무(30), 가지(27), 콩(건조)(27), 수박(45), 멜론(45),	402	10년 철폐	1,052	타이어(신품, 버스·화물차용/중고·재생)(6-15), 파티클보드(10), 섬유판(10), 합판(10), 종이류(6-15), 신발(10-15), 형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코스타리카 양허	
주요 품목 (관세율, %)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
조제 및 저장처리 과실류(45), 파인애플주스(50), 시가(40), 닭새우(20), 새우살(20)			강(6-15), 가전제품(15), 연축전지(15),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5-15), 일부 자동차부품(10-15), 마늘(15), 콩[건조](10-15), 수박(15), 멜론(15), 녹차(15), 멸치[신·냉] (15), 대구[신·냉/냉동](10), 명태[신·냉/냉동](10-15)	
-	11,089	10년 철폐 소개	6,292	-
기타 산식물(8-18), 감자[냉동] (27), 훈합주스(30-50), 발효주(15), 고등어[건조·염장·염수장](20), 길치[건조·염장·염수장](20), 새우 [훈제](20), 김(10-20)	435	12년 철폐	3	고등어[조제·저장처리](15), 멸치[조제·저장처리](15), 기타 어류[조제·저장처리](15)
질소비료[황산암모늄](6.5), 장미(25), 카네이션(25), 꽁[산·냉/냉동] (27), 코코넛(30), 자몽(30), 레몬주스(50), 포도주(15), 조주정(10), 일당배(20), 심치[산·냉] (20), 넙치[냉동] (10), 둠[냉동](10), 새우[냉동/건조](20), 문어[냉동](20)	138	15년 철폐	329	일부 플라스틱재 판·시트(6-10), 편직물(6-10), 철강제 제품(6-15), 알루미늄 봉·프로파일(6-10), 기타 가구(15), 천연꿀(15), 장미(15), 카네이션(15), 토마토(15), 오이(15), 포도(15), 배(15), 음료[기타](15), 사료(6-15), 제조담배(15), 틸라피아[신·냉/냉동/파레트/훈제/건조] (10-15), 메기[파레트](46), 새우[훈제](15), 정어리[조제·저장처리](15)
돼지고기[삼겹살](25), 소 설육(18), 백합(25), 토마토(45), 오이 (27), 호박(27), 고구마(45-385), 아보카도(30), 레몬(30), 지당(30), 조제·저장처리 팥(20), 오렌지주스(54), 새우[훨/신·냉/건조](20)	44	16년 철폐	12	이끼류(15), 고구마(15), 양(15), 토란(15), 레몬(15), 오렌지주스(15)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40)	1	19년 철폐	1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15)
-	11,707	19년 철폐 소개	6,637	-
경유(3-5), 기타 석유제품(3), 쇠고기(18-72), 닭고기(18-27), 밀크와 크림(36-176), 치즈(36), 천연꿀(243), 감자(304), 양파(27-135), 마늘(27-360), 고추(27-270), 오렌지(50), 김풀(144), 포도(45), 사과(45), 배(45), 땅콩(230.5), 침깨(630), 인삼류(18- 754.3), 고등어[신·냉/냉동](10-20), 갈치[신·냉/냉동] (10-20), 명태[냉동] (22), 조기[냉동](10), 꽁치[냉동] (28), 민어[냉동](28), 새우[냉동/염장·염수장](20-35)	520	양허제외	337	일부 플라스틱관(6-15), 플라스틱제 포장대(10), 타이어(신품) (6-10), 일부 철강판(6-15), 알루미늄제 케이블(10), 쇠고기(15), 돼지고기(6-46), 닭고기(6-151), 밀크와 크림(10-66), 치즈(15- 66), 김자(41-46), 양파(46), 팥[건조](31), 오렌지(15), 만다린(15), 커피(10-15), 쌀(36), 당류(10-46), 파스타(15), 렘(15), 침치[조제·저장처리](15)
쌀 및 쌀 관련 품목(513)	16	협정배제	-	-
-	12,243	총합계	6,974	-

2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공산품(임산물 포함)>

●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의 98% 이상에 대해 15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공산품의 100%(9,985개), 코스타리카측은 공산품의 98.4%(5,578개)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对코스타리카** 수입의 100%(2.7억불), 코스타리카측은 **對한국** 수입의 98%(3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对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결(A)	9,522	95.3	267,391,048	98.7	4,338	76.5	289,177,995	93.7
유관세	7,668	76.8	13,235,071	4.9	4,197	74.0	245,750,289	79.6
무관세	1,854	18.6	254,155,977	93.8	141	2.5	43,427,705	14.1
3년(B)	105	1.1	3,631,774	1.3	5	0.1	3,791	0.0
5년(C)	174	1.7	14,564	0.0	362	6.4	4,004,570	1.3
5년내 철폐	9,801	98.1	271,037,386	100.0	4,705	83.0	293,186,355	95.0
7년(D)	3	0.0	0	0.0	0	0.0	0	0.0
10년(E)	180	1.8	197	0.0	663	11.7	8,725,906	2.8
10년내 철폐	9,984	99.9	271,037,583	100.0	5,368	94.7	301,912,261	97.8
15년(G)	1	0.0	0	0.0	210	3.7	502,069	0.2
전체 자유화율	9,985	100.0	271,037,583	100.0	5,578	98.4	302,414,331	98.0
양허제외(X)	4	0.0	0	0.0	92	1.6	6,191,339	2.0
총합계	9,989	100.0	271,037,583	100.0	5,670	100.0	308,605,669	100.0

● 코스타리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미국 및 EU에 제공한 것 (10년 비선형 철폐)보다 높은 수준인 즉시철폐로 양허

* 코측 **對韓** 자동차 수입: 1.5억불('12~'14 평균)

* 중미-미국 FTA(CAFTA): 2009년 발효 / 중미-EU 협력협정: 2013년 발효

- 의료기기, 의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형강, 타이어,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오븐 및 쿠키 등)에 대해서는 10년내 철폐

● 우리측은 의료기기, 전자부품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전선 및 케이블, 신발, 핵판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주요 對코스타리카 수입 품목인 컴퓨터용 CPU, 고철 등은 기존 무관세

〈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천불) 12-14 평균	코족 양허 (년)
1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	0	148,170	0	승용차기솔린/1,500cc 초과, 2,000cc 이하)	1	65,363	0
2	모노리식 집적회로	0	36,394	0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0	27,391	0
3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기타]	0	28,676	0	전동기 부분품	1	18,717	0
4	기타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23,385	0	승용차기솔린/2,000cc 초과, 3,000cc 이하)	1	18,442	0
5	의료용 기기[정형외과용]	0	6,936	0	승용차기솔린/1,300cc 초과, 1,500cc 이하)	1	17,321	0
6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0	3,169	0	유선통신기기 부분품	0	10,473	0
7	의료용 기기[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기타]	8	2,888	0	냉연강판 0.5mm 미만)	1	6,882	0
8	의료용 기기[카테터]	8	2,543	0	승합차 11-14인승/디젤]	15	5,545	0
9	의료용 기기[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부분품과 부속품]	8	1,982	0	냉연강판 1mm 초과, 3mm 미만)	1	5,378	0
1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 기기	0	1,649	0	자동차부품 엔진을 갖춘 새시/버스용	1	4,954	0
11	의료용 기기[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용/기타]	8	1,542	0	화물자동차[디젤]/기타]	1	4,611	0
12	영화 촬영기용 부품	8	1,493	0	승용차기솔린/1,000cc 초과, 1,300cc 이하)	1	3,574	0
13	기타 전자기기	8	971	3	승용차기솔린/1,000cc 이하)	1	3,478	0
14	모노리식 집적회로	0	933	0	타이어신품/버스 및 화물차용(래디얼)	6	3,452	10
15	측정 및 검사기기 부품	0	833	0	열연강판 3mm 미만)	1	3,330	0
16	의료용 기기[레이저 적동식]	8	799	0	냉연강판 0.5mm 이상, 1mm 미하)	1	3,214	0
17	의료용 기기[기타]	8	642	0	승용차기솔린/2,000cc 초과, 3,000cc 이하)	1	3,099	0
18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8	491	3	승용차[디젤]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	2,993	0
19	미표백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0	466	0	승용차기솔린/2,000cc 초과, 3,000cc 이하)	1	2,924	0
20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	0	461	0	침투 및 도포 직물	1	2,868	0
20대 수입 소계			264,423		20대 수출 소계		214,009	
공산품 수입 합계			271,038		공산품 수출 합계		308,606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공산품/임산물 포함)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코스타리카 양허	
주요 품목 [관세율, %]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
철광, 석탄, 의약품, 원목, 펄프, 종이류, 철강 및 철강제품, 일반기계, 정보통신기기, 가구, 완구	1,854	즉시철폐 (무관세)	141	석유제품, 컴퓨터, 반도체제조장비, 전화기, 전자집적회로
원유(3), 윤활유(7-8), 화학공업제품(3-8), 합성수지(4-8), 플라스틱제품(6.5), 타이어(5-8), 단판(2), 섬유사(1-8), 직물(8-10), 의류(8-13), 알루미늄제품(8), 기타 비금속제품(2-8), 가전제품(8), 전기기기(3-13), 전자부품(8), 승용차(8), 화물차(10), 승합차(10), 자동차부품(8), 의료기기(8)	7,668	즉시철폐 (유관세)	4,197	철광(1), 석유화학제품(1-10), 의약품(1-6), 화장품(기타)(15), 플라스틱제품(1-15), 합성고무(1), 단판(10), 섬유사(1-6), 직물(1-10), 의류(1-15),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1), 동과 그 제품(1), 알루미늄과 그 제품(1), 일반기계(1), 가전제품(1-15), 승용차(1), 화물차(1-15), 승합차(1-15), 자동차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1-10), 의료기기(1)
병커C유(3), 의약품(항결핵제 등)(8), 플라스틱제 용기(6.5), 목탄(2), 의류(면제)(13), 전자부품(6.5-8), 전선 및 케이블(8), 의료기기(8)	105	3년 철폐	5	인쇄용지(10), 전시지(10)
천연가스(3), 프로판(3), 제재목(5), 단판(3-8), 신발(8-13), 유리섬유(8)	174	5년 철폐	362	정밀화학제품(6), 고무제 판·시트·스트립(6), 고무관(6), 원피 및 가죽제품(6-15), 제재목(6), 음향기기(6-15), 조명기기(6-15), 완구(6-15), 운동기구(10-15)
-	9,801	5년 철폐 소계	4,705	-
파티클보드(8), 원료용 목제품(깔판, 청문, 침문틀)(8)	3	7년 철폐	-	-
휘발유(3-5), 섬유판(8), 합판(8-10), 원료용 목제품(문틀, 패널)(8), 기타 목제품(8)	180	10년 철폐	663	시멘트(6-10), 살충제(6-10), 타이어(신품, 버스·화물차용/중고·재생)(6-15), 파티클보드(10), 섬유판(10), 합판(10), 종이류(6-15), 신발(10-15), 협강(6-15), 철강선(6-15),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오븐, 쿠커)(15), 일자전자(15), 연축전자(15),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5-15), 앰뷸런스 및 장의차(15), 일부 자동차부품(엔진을 갖춘 차체)(10-15), 가구(의자)(15)
-	9,984	10년 철폐 소계	5,368	-
질소비료(황산암모늄)(6.5)	1	15년 철폐	210	비누(6-15), 일부 플라스틱제 판·시트(6-10), 건축용 목제품(15), 편지물(6-10), 의류(속옷)(15), 신발 부분품(10), 철강제제품(6-15), 알루미늄 봉·프로파일(6-10), 기타 가구(15)
-	9,985	15년 철폐 소계	5,578	-
경유(3-5), 기타 석유제품(3)	4	양허제외	92	일부 플라스틱관(6-15), 플라스틱제 포장대(10), 타이어(신품)(6-10), 유리제 병(6-10), 일부 철강판(6-15), 알루미늄제 케이블(10)
-	9,989	총합계	5,670	-

〈농산물〉

● 수입액 기준, 현재 교역 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9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농산물의 69.4%(1,127개), 코스타리카측은 농산물의 76.2%(765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对코스타리카** 수입의 100%(12.7백만불), 코스타리카측은 **对한국** 수입의 96%(5.9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농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对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시(A)	276	17.0	9,965,026	78.7	374	37.3	70,092	1.1
유관세	181	11.2	9,939,571	78.5	374	37.3	70,092	1.1
무관세	95	5.9	25,455	0.2	0	0.0	0	0.0
3년(B)	42	2.6	43	0.0	10	1.0	0	0.0
5년(C)	189	11.6	1,304,527	10.3	90	9.0	817	0.0
5년내 철폐	507	31.2	11,269,597	89.0	474	47.2	70,909	1.1
7년(D)	21	1.3	898,758	7.1	4	0.4	77	0.0
10년(E)	141	8.7	487,461	3.9	177	17.6	786,500	12.7
10년내 철폐	669	41.2	12,655,815	100.0	655	65.2	857,486	13.9
12년(F)	329	20.3	0	0.0	0	0.0	0	0.0
15년(G)	86	5.3	174	0.0	97	9.7	5,079,249	82.1
16년(H)	42	2.6	1,009	0.0	12	1.2	0	0.0
19년(I)	1	0.1	0	0.0	1	0.1	0	0.0
전체 자유화율	1,127	69.4	12,656,998	100.0	765	76.2	5,936,735	96.0
양허제외(X)	480	29.6	152	0.0	239	23.8	246,702	4.0
협정배제(Y)	16	1.0	0	0.0	0	0.0	0	0.0
총합계	1,623	100.0	12,657,151	100.0	1,004	100.0	6,183,437	100.0

● 우리측은 커피(관세: 2~8%) 즉시철폐, 바나나(관세: 30%) 5년 철폐, 파인애플(관세: 30%) 7년 철폐 등 코스타리카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기존 FTA 양허수준(콜롬비아, 페루 등)을 고려하여 양허

● 우리측은 농산물 분야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장기철폐(12~19년) 등 예외적 수단 확보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품목, 쇠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등 496개 품목 (품목수 비중 30.6%)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외부에서 제외(협정배제)

- (장기철폐) 쇠고기 1개 품목(냉동/뼈 없는 것) 19년 철폐, 삼겹살 16년 철폐 등 458개 품목(품목수 비중 28.2%)

● **코스타리카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알로에음료(관세: 15%)는 즉시 철폐하고 기타 음료(관세: 10-15%)는 15년내 철폐로 개방하였으나,**

- * 음료 3개 세번의 코족 對韓 수입액은 5.7백만불로, 전체 對韓 농산물 수입액의 92.8% 차지
- * SAC 22029090 세번은 알로에음료(즉철)와 기타 음료(15년)로 세번분리

- 쌀, 쇠고기, 낙농품 등 239개(품목수 비중 23.8%)는 양허제외하고, 고구마, 오렌지 등 110개(품목수 비중 11%)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천불) 12-14 평균	코족 양허
1	커피[볶지 않고,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2	9,880	0	음료[기타]	15	4,993	15
2	기타 산식물	8	690	5	음료[기타]	10	629	10
3	파인애플[신선/건조]	30	624	7	음료[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첨가한 물]	15	115	10
4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	8	369	5	기타 사료	6	76	15
5	기타 산식물	8	215	10	혼합주스	15	74	양허제외
6	파인애플주스	50	165	10	베이커리류[기타 빵 등]	15	52	양허제외
7	기타 조제식료품	8	164	5	당류[설탕과자/추잉김]	15	39	양허제외
8	기타 과실 및 채소주스	50	150	7	포도주스	15	37	10
9	기타 과실류 기공품	45	125	7	기타 락과 천연감 등	1	29	0
10	커피[볶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8	58	0	기타 사료	1	26	0
11	기타 수수 및 접수	8	49	10	베이커리류[와플과 웨이퍼]	15	26	양허제외
12	기타 산식물	8	41	10	기타 과실 및 채소주스	15	21	양허제외
13	사탕수수당	3	28	5	기타 식물성 점질물 등	1	14	0
14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27	5	음료[물]	15	14	양허제외
15	소 전신원피	0	18	0	기타 조제식료품	15	10	양허제외
16	기타 냉동과실 및 냉동견과류	30	15	5	기타 사료	15	9	15
17	과실류 기공품 [혼합물]	45	10	10	베이커리류[스위트 비스킷]	15	8	양허제외
18	코코아조제품	8	8	5	소스류[간장]	15	4	10
19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8	5	10	녹차[미발효차]	15	1	10
20	기타 전신원피	0	4	0	기타 소스류	15	1	양허제외
20대 수입 소계			12,644		20대 수출 소계		6,180	
농산물 수입 합계			12,657		농산물 수출 합계		6,183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농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코스타리카 양허	
주요 품목 [관세율, %]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
전분박, 원피	95	즉시철폐 (무관세)	-	-
커피[2-8], 향신료[8], 팜유[2-3], 원당[3]	181	즉시철폐 (유관세)	374	식용설육[1], 조란[1], 계피[1], 보리[1], 귀리[1], 옥수수[1], 땅콩[1], 참깨[1], 과실잼[1], 포도주스[1], 알로에음료[15]
밀가루[3], 코코아조제품[5], 럼[20]	42	3년 철폐	10	식물성부산물[전분박, 오일케이크, 유박][6]
바나나[30], 구아바[30], 매니옥[45-887.4], 식물잎[8], 후추[8], 설팅과자[8], 베이커리류[5-8]	189	5년 철폐	90	사과[15], 바나나[15], 후추[6-10], 고추[6-10], 생강[10], 메밀[15]
-	507	5년 철폐 소계	474	-
파인애플[30], 망고[30], 파파야[30], 과일잼[30]	21	7년 철폐	4	파인애플[15], 망고[15], 파파야[15]
돼지고기[25], 양배추[27], 무[30], 가지[27], 풍[건조][27], 수박[45], 멜론[45], 조제 및 저장처리 과실류[45], 파인애플주스[50], 시가[40]	141	10년 철폐	177	마늘[15], 꽂팅배추[15], 상추[15], 가지[15], 흑박[15], 풍[건조][10-15], 수박[15], 멜론[15], 녹차[15], 조제 및 저장처리 과실류[15], 포도주[15], 잎담배[6]
-	669	10년 철폐 소계	655	-
기타 산식물[8-18], 감자[냉동] [27], 마카다미아너트[30], 계피[8], 오이[식초·초산처리][30], 소스류[8-45], 혼합주스[30-50], 밀효주[15]	329	12년 철폐	-	-
장미[25], 카네이션[25], 풍[신선/냉장/냉동][27], 코코넛[30], 자동[30], 레몬주스[50], 아이스크림[8], 포도주[15], 조주정[10], 잎담배[20]	86	15년 철폐	97	천연꿀[15], 장미[15], 카네이션[15], 토마토[15], 오이[15], 포도[15], 배[15], 식물성유지[6-15], 자동주스[6-15], 음료[기타][15], 시료[6-15], 제조담배[15]
돼지고기[삼겹살][25], 소 설육[18], 백합[25], 토마토[45], 오이[27], 흑박[27], 고구마[45-385], 아보카도[30], 레몬[30], 지당[30], 조제·저장처리 팥[20], 오렌지주스[54]	42	16년 철폐	12	이끼류[15], 고구마[15], 암[15], 토란[15], 레몬[15], 오렌지주스[15]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40]	1	19년 철폐	1	쇠고기[냉동/뼈 없는 것][15]
-	1,127	19년 철폐 소계	765	-
쇠고기[18-72], 닭고기[18-27], 밀크와 크림[36-176], 버터[8-89], 치즈[36], 천연꿀[243], 국화[25], 김자[304], 양파[27-135], 미늘[27-360], 고추[27-270], 오렌지[50], 김풀[144], 포도[45], 사과[45], 배[45], 땅콩[230.5], 참깨[630], 인삼류[18-754.3]	480	양허제외	239	쇠고기[15], 돼지고기[6-46], 닭고기[6-151], 밀크와 크림[10-66], 버터[66], 치즈[15-66], 국화[15], 백합[15], 김자[41-46], 양파[46], 팥[건조][31], 오렌지[15], 만다린[15], 커피[10-15], 쌀[36], 당류[10-46], 피스타[15], 럼[15]
쌀 및 쌀 관련 품목[513]	16	협정배제	-	-
-	1,623	총합계	1,004	-

〈수산물〉

● 코스타리카가 우리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수산물의 94.3%(595개), 코스타리카측은 수산물의 98% (294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코스타리카측은 **對한국 수입 100%(19.9만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수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7	1.1	0	-	43	14.3	192,149	96.8
유관세	0	0.0	0	-	43	14.3	192,149	96.8
무관세	7	1.1	0	-	0	0.0	0	0.0
3년(B)	8	1.3	0	-	0	0.0	0	0.0
5년(C)	229	36.3	0	-	12	4.0	3,519	1.8
5년내 철폐	244	38.7	0	-	55	18.3	195,668	98.6
7년(D)	111	17.6	0	-	2	0.7	0	0.0
10년(E)	81	12.8	0	-	212	70.7	1,968	1.0
10년내 철폐	436	69.1	0	-	269	89.7	197,636	99.6
12년(F)	106	16.8	0	-	3	1.0	0	0.0
15년(G)	51	8.1	0	-	22	7.3	887	0.4
16년(H)	2	0.3	0	-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595	94.3	0	-	294	98.0	198,523	100.0
양하제외(X)	36	5.7	0	-	6	2.0	0	0.0
총합계	631	100.0	0	-	300	100.0	198,523	100.0

● 우리측은 고등어, 갈치, 꼬치, 민어, 일부 새우 등 36개 품목 양허제외

- 문어, 새우 등 159개 품목의 관세는 장기철폐(12~16년)하여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

* 현재 코스타리카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전무(全無)

● 코스타리카측은 냉동 황다랑어(관세: 1%) 등 수입액 기준 96.8%를 즉시 철폐하고, 기타 어육(관세: 15%) 등 수입액 기준 99.6%를 10년내 철폐

〈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천불) 12-14 평균	코족 양허
1	-	-	-	-	청다랑어(냉동)	1	192	0
2	-	-	-	-	기타 조제·저장처리 수산물	15	4	5
3	-	-	-	-	기타 어육(냉동)	15	2	10
4	-	-	-	-	기타 계(냉동)	10	1	15
5	-	-	-	-	식용 해조류	1	0	0
5대 수입 소계		-	-	-	5대 수출 소계	-	199	-
수산물 수입 합계		-	-	-	수산물 수출 합계	-	199	-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수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코스타리카 양허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
실뱀장어, 양식용 치어(돔, 농어)	7	즉시칠페 (무관세)	-	-
-	-	즉시칠페 (유관세)	43	참치(활어/신·냉/냉동)(1), 정어리 (신·냉/냉동)(1), 고등어(냉동)(1)
틸라피아(냉동)(10), 수산물가공품(연어, 다랑어)(20)	8	3년 칠페	-	-
송어(활어/신·냉)(10-20), 청치(활어/ 신·냉)(10-20), 틸라피아(활어/신·냉) (10-20), 연어(활어/신·냉)(10-20), 갑오징어(10-20)	229	5년 칠페	12	청어[조제·저장처리](15), 계[조제· 저장처리](15), 소금(15)
-	244	5년 칠페 소계	55	-
연어(냉동)(10), 참치(냉동)(10), 대구 (냉동)(10), 어류 피레트(10-20), 바다가 재(20), 계(20), 소금(1-8)	111	7년 칠페	2	기타 어류[조제·저장처리](15), 기타 수산가공품(가루·펄릿)(6)
닭새우(20), 새우살(20), 흥합(20), 전복 (20)	81	10년 칠페	212	연어(신·냉/냉동)(10), 넙치(신·냉/냉 동)(10), 멸치(신·냉)(15), 대구(신·냉/ 냉동)(10), 명태(신·냉/냉동)(10-15), 농어(신·냉/냉동)(15), 새우(10-15), 바닷기재(10-15), 계(10-15), 오징어 (10), 문어(10-15), 해삼(10-15)
-	436	10년 칠페 소계	269	-
넙치(활어)(10), 흉어(냉동)(10), 농어 (냉동)(10), 고등어[건조·염장·염수장](20), 갈치[건조·염장·염수장] (20), 새우[훈 제](20), 김(10-20)	106	12년 칠페	3	고등어[조제·저장처리](15), 멸치 [조 제·저장처리](15), 기타 어류[조제·저 장처리](15)
삼치(신·냉)(20), 넙치(냉동) (10), 돔(냉 동)(10), 새우(냉동/건조) (20), 문어(냉 동)(20)	51	15년 칠페	22	틸라피아(신·냉/냉동/피레트/훈제/조 제)(10-15), 메기(피레트) (46), 새우(훈 제)(15), 정어리[조제·저장처리](15)

우리 양허		양허단계	코스타리카 양허	
주요 품목 (관세율, %)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
새우(훨/신·냉/건조)[20]	2	16년 철폐	-	-
-	595	16년 철폐 소계	294	-
멸치(신·냉)[20], 고등어(신·냉/냉동) [10-20], 갈치(신·냉/냉동) [10-20], 명태(냉동) [22], 조기(냉동)[10], 꼴치(냉동) [20], 민어 (냉동)[20], 새우(냉동/염장·염수장) [20-35], 오징어(냉동)[22], 대게[20]	36	양허제외	6 전갱이[냉동][10], 침치[조제·저장처리] [15]	
-	631	총합계	300	-

엘살바도르

1 전반적 평가

● 한국과 엘살바도르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5%(11,688개), 엘살바도르측은 전체 품목의 95.1%(6,634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엘살바도르 수입의 100%(37백만불), 엘살바도르측은 對한국 수입의 98.1%(1.7억불)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808	80.1	35,104,244	93.3	3,635	52.1	117,160,726	67.2
유관세	7,852	64.1	20,614,351	54.8	297	4.2	4,041,793	2.3
무관세	1,956	16.0	14,489,893	38.6	3,338	47.9	113,118,933	64.9
3년(B)	178	1.5	1,959,397	5.2	21	0.3	4,865,378	2.8
5년(C)	574	4.7	497,871	1.3	715	10.3	2,351,940	1.3
5년내 철폐	10,560	86.3	37,561,512	99.8	4,371	62.7	124,378,044	71.3
7년(D)	132	1.1	0	0.0	50	0.7	7,771,852	4.5
9년 비선행(J1)	0	0.0	0	0.0	7	0.1	17,190,175	9.9
10년(E)	389	3.2	71,468	0.2	1,746	25.0	1,688,916	1.0
10년 비선행(E1)	0	0.0	0	0.0	65	0.9	19,216,345	11.0
10년내 철폐	11,081	90.5	37,632,980	100.0	6,239	89.5	170,245,332	97.7
12년(F)	430	3.5	0	0.0	55	0.8	634,508	0.4
15년(G)	145	1.2	0	0.0	338	4.8	174,067	0.1
16년(H)	32	0.3	24	0.0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11,688	95.5	37,633,004	100.0	6,634	95.1	171,053,919	98.1
양허제외(X)	538	4.4	18	0.0	340	4.9	3,268,017	1.9
양허제외(X)+TRQ	1	0.0	0	0.0	0	0.0	0	0.0
협정배제(Y)	16	0.1	0	0.0	0	0.0	0	0.0
총합계	12,243	100.0	37,633,022	100.0	6,974	100.0	174,321,936	1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엘살바도르) SAC 2015 8단위 기준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CAFTA, 중미-EU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확보

- 축전지, 기어박스 등 일부 자동차 부품 즉시철폐 및 타이어, 전선, 가구류, 가전 제품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전체)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엘살바도르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고철,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고정식축전기, 강선, 모노리식 직접회로, 액정모니터, 실장어(활어), 둠(양식용 치어), 농어(양식용 치어), 꿀, 시탕무 종자	1,956	즉시철폐 (무관세)	3,338	금강방연강판, 폴리에스테르수지, 용융아연도강판, 도금강판, 기타합성수지, 제트유, 폴리프로필렌, 섬유기계, 착색아연도강판, 당류, 인삼류, 음료베이스, 김, 침치, 오징어
편물제 의류(셔츠 등)[13], 합성수지[6.5], 직물제 의류(바지 등)[13], 인조섬유직물[10], 시멘트제품[8], 전기변환장치[8], 원당[3], 커피[2/8]	7,852	즉시철폐 (유관세)	297	화물자동차[1], 자동차부품(클리치 등)[1], 연죽전지[15], 에틸렌중합체필름[10], 귀금속장식품[15], 장미[15], 어육[15], 연어통조림[15]
인조섬유사[8], 편물제 의류(티셔츠 등)[13], 의료용기기[8], 자동차 부품[8], 원유[3], 커피조제품[8], 주잉김[8], 코코아조제품[5]	178	3년 철폐	21	타이어(신품/버스및화물차용)[5], 타이어(신품/승용차용)[10], 타이어(중고)[15], 타이어튜브[5], 타이어플름[10], 박류[5]
신발류[13], 천연가스[3], 가복[8], 캔디류[8], 채소류기공품[30], 조주정[10], 송어(활어)[10], 잉어(활어)[10], 틸라피아(활어)[10]	574	5년 철폐	715	의약품[5], 자동차부품(유류여과기 등)[10], 나일론사[5], 계전기[10], 라디오[15], VCR[15], 냉방기[10], 전구[5], 밀가루[15], 침치 통조림[15]
-	10,560	5년 철폐 소계	4,371	-
파티클보드[8], 파인애플[30], 망고[30], 과실조제품[잼 등][30], 과실주스[50], 기타 과실음료[9], 생선목[20], 생선소시지[20]	132	7년 철폐	50	타이어(중고재생/버스및화물차용)[15], 훈방재생단섬유직물[10], 폴리에스터직물[10], CRT TV[15], 에어컨[15]
-	0	9년 비선형 철폐	7	승용차[20/25]
휘발유[3], 제트유[5], 섬유판[8], 소스[45], 심수·점수[8], 식물입(신선)[8], 멜론[45], 커피조제품[40], 오렌지주스(냉동)[54]	389	10년 철폐	1,746	잉크[10], 비누[15], 폴리에스터직물[10], 매니큐어세트[10], 비철제품[15], 낭장고[10/15], 향수[15], 커피조제품[15]

우리 양허		양허단계	엘살바도르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	0	10년 비선형 철폐	65	화물자동차(1/5), 승합차(1/5), 승용차(20/25/30), 자동차부품(1), 기타자동차(10)
-	11,081	10년 철폐 소계	6,239	-
채소주스[30], 토마토케첩[45], 스위트콘[30], 민에(활어)[10], 조기[건조/염장/염수징][20]	430	12년 철폐	55	로프(15), 편직물(10), 실크 의류(15), 폴리에스터직물(10), 시멘트(10), 기타섬유제품(10)
황산 암모늄(6.5), 매니옥(칩/냉장)[887.4], 캐슈넛[미탈각][8], 냉수성새우(냉동)[20]	145	15년 철폐	338	양탄자(15), 넥타이(15), 주철관(5), 전선(15), 초콜렛(15), 베이컨(40), 천연꿀(15), 정어리 통조림(15)
자당[30], 수박[45], 천연꿀[243%], 기타 새우[산 것/신선/냉장/건조][20]	32	16년 철폐	0	-
-	11,688	16년 철폐 소계	6,632	-
경유(3), 쇠고기[40], 돼지고기[22.5], 치즈[36], 고추류(270%), 민어(냉동)[28], 새우류[브레드한 것][20]	538	양허제외	342	알루미늄 박[10], 통신용전선(15), 중후판(5), 기타 곡류가공품(15), 돼지고기(햄 등)[40]
기타 새우(냉동)[20]	1	양허제외+TRQ	0	-
쌀[멥쌀, 찹쌀, 쇠미, 현미] 및 쌀 관련 제품[513]	16	협정배제	0	-
-	12,243	총합계	6,974	-

2.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공산품 (임산물 포함)>

●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의 96% 이상에 대해 15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공산품의 100%(9,985개), 엘살바도르측은 공산품의 96.1%(5,453개)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对**엘살바도르 수입의 100%(18백만불), 엘살바도르측은 **对**한국 수입의 98.2%(1.7억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519	95.3	15,566,021	86.5	3,221	56.8	117,140,158	67.4
유관세	7,665	76.7	1,076,128	6.0	195	2.8	4,041,706	2.3
무관세	1,854	18.6	14,489,893	80.5	3,026	43.4	113,098,452	65.1
3년(B)	108	1.1	1,959,338	10.9	11	0.2	4,865,378	2.8
5년(C)	174	1.7	478,475	2.7	626	11.0	2,351,940	1.4
5년내 철폐	9,801	98.1	18,003,834	100.0	3,858	68.0	124,357,476	71.5
7년(D)	3	0.0	0	0.0	50	0.9	7,771,852	4.5
9년 비선형(J1)*	0	0.0	0	0.0	7	0.1	17,190,175	9.9
10년(E)	180	1.8	0	0.0	1,109	19.6	1,672,666	1.0
10년 비선형(E1)**	0	0.0	0	0.0	65	1.1	19,216,345	11.1
10년내 철폐	9,984	99.9	18,003,834	100.0	5,089	89.8	170,208,513	97.9
12년(F)	0	0.0	0	0.0	54	1.0	299,031	0.2
15년(G)	1	0.0	0	0.0	308	5.4	173,571	0.1
전체 자유화율	9,985	100.0	18,003,834	100.0	5,453	96.1	170,681,115	98.2
양허제외(X)	4	0.0	0	0.0	219	3.9	3,158,429	1.8
총합계	9,989	100.0	18,003,834	100.0	5,670	100.0	173,839,544	100.0

- 엘살바도르는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7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및 EU에 제공한 것 보다 높은 수준인 9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하고, 여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65개 품목은 미국, EU와 동일한 수준인 10년 비선형 철폐로 양허

* 엘축 對韓 자동차 수입: 38백만불('12-'14 평균)

* 중미-미국 FTA(CAFTA): 2009년 발효 / 중미-EU 협력협정: 2013년 발효

* 9년 비선형 감축 스케줄: 2%/2%/8%/8%/8%/18%/18%/18%/18%

* 10년 비선형 감축 스케줄: 2%/2%/8%/8%/8%/8%/16%/16%/16%/16%

- 축전지, 귀금속장식품, 우산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타이어, 가전제품(냉장고, 공기조절기, 조명기기 등)에 대해서는 10년내 철폐

- 우리측은 합성수지, 편물제 의류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신발, 인조섬유사, 합판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주요 對엘살바도르 수입 품목인 고철, 축전지 스크랩 등은 기존 무관세

〈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엘축 양허 (년)
1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7,795	0	합금강냉연강판	0	25,871	0
2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3,915	0	폴리에스테르수지	0	17,101	0
3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2,216	0	자동차[화물자동차/입출점화식]	5	11,728	10[비])
4	인조섬유사(폴리에스테르의 것)	8	907	3	철강[이연도강판/0.16mm 이상, 2mm 이하]	0	10,668	0
5	면물제 의류(면제/티셔츠)	13	380	3	철강[알루미늄 도금강판/0.16mm 이상, 2mm 이하]	0	7,391	0
6	신발류[기타]	13	294	5	기타합성수지	0	6,795	0
7	직물제 의류[기타]	13	236	3	제트유	0	6,345	0
8	인조섬유사[기타]	8	231	3	자동차승용차/기술린/1,500cc 초과, 2,000cc 이하]	25	6,310	9[비])
9	면물제 의류[인조섬유제/기타]	13	207	0	기타정밀화학원료	0	5,296	0
10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154	0	폴리프로필렌	0	4,659	0
11	인조섬유원료	8	142	3	자동차승용차/기술린/1,300cc 초과, 1,500cc 이하]	25	4,515	9[비])
12	신발류[기타]	13	142	5	자동차[화물자동차]	5	3,408	10[비])
13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107	0	자동차승용차/기술린/1,000cc 초과, 1,300cc 이하]	20	2,940	9[비])
14	면물제 의류(합성섬유제)	13	102	0	타이어[신품/버스 및 화물차용]	5	2,920	3
15	면물제 의류(면제/남성셔츠)	13	78	0	타이어[중고재생/버스 및 화물차용]	15	2,762	7
16	직물제 의류(면제/기타)	13	69	0	폴리에스텔섬유	0	2,469	0
17	기타 합금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62	0	질소비료	0	2,406	0
18	알루미늄 전해의 고정식축전기	0	52	0	자동차승용차/기술린/1,000cc 이하]	20	2,300	9[비])
19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축전기(다종)	0	52	0	섬유기계	0	1,413	0
20	면물제 의류(합성섬유제)	13	50	0	착색아연도강판	0	1,322	0
20대 수입 소계			17,201		20대 수출 소계		128,630	
공산품 수입 합계			18,003		공산품 수출 합계		173,839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공산품/임산물 포함)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엘살바도로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고철, 일자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고지, 탄탈륨의 고정식축전기, 알루미늄 전해의 고정식축전기, 세라믹유전체의 고정식축전기, 기타 고정식축전기, 강선, 모노리식 직접회로, 액정모니터	1,854	즉시철폐 (무관세)	3,026	합금강냉연강판, 폴리에스테르수지, 용융이연도강판, 도금강판, 기타합성수지, 제트유, 폴리프로필렌, 기타정밀화학원료, 폴리아스텔레우, 섬유기계, 착색아연도강판, 코드분할식 전화기, 의약품, 무게도강관, 휴대용컴퓨터, 폴리스티렌, 기타 타이어
면물제 의류[셔츠 등][13], 합성수지[6.5], 직물제 의류[바지 등][13], 인조섬유직물[10], 시멘트제품[8], 일반기계 부품[8], 운동용구[8], 타이어[8], 오피의류[16], 전기변환장치[8]	7,665	즉시철폐 (유관세)	195	화물자동차[1], 기타 자동차부품[1], 연축전지[15], 클러치[1], 앰뷸런스[1], 특장차[1], 에틸렌증합체필름[10], 기타합성수지[5], 귀금속장식품[15], 기타플라스틱제품[10]
인조섬유사[8], 편물제 의류[티셔츠 등][13], 플라스틱제품[6.5], 편직물[10], 의료용기기[8], 자동차 부품[8], 석탄[3], 월유[3], 벙커유[3], 윤활유[7]	108	3년 철폐	11	타이어(신품/버스및화물차용)[5], 타이어(신품/승용차용[10], 타이어[중고][15], 타이어튜브[5], 타이어플랩[10])
신발류[13], 천연가스[3], 프로판[3], 로진[6.5], 목재[5], 제재목[5]	174	5년 철폐	626	의약품[5], 자동차 부품[유류여과기][10], 나일론사[5], 계전기[10], 라디오카세트[15], VCR[15], 냉방기[10], 기타완구[15], 전구[5]
-	9,801	5년 철폐 소계	3,858	-
파티클보드[8], 원료용 목제품[목재 깔판][8], 원료용 목제품[침/침틀][8]	3	7년 철폐	50	타이어(중고재생/버스및화물차용)[15], 훈방재생단섬유직물[10], 폴리에스터직물[10], CRT TV[15], 에어컨[15], P/C직물[10], 순면사[5], 스포츠화[15], 파일서닐직물[10]
-	0	9년 비선형 철폐	7	승용차[20/25]
휘발유[3], 제트 연료유[5], 동유[3], 섬유판[8], 합판[8/10], 코르크[8]	180	10년 철폐	1,109	잉크[10], 노트[15], 비누[15], 순면직물[10], 폴리에스터직물[10], 매니큐어세트[10], 비철제품[15], 책상[15], 냉장고[10/15], 향수[15], 벽지[10], 접착제[15]
-	0	10년 비선형 철폐	65	화물자동차[1/5], 승합차[1/5], 승용차[20/25/30], 자동차부품[1], 기타자동차[10]
-	9,984	10년 철폐 소계	5,089	-
-	0	12년 철폐	54	로프[15], 편직물[10], 실크 의류[15], 폴리에스터직물[10], 시멘트[10], 기타섬유제품[10]
황산 암모늄[6.5]	1	15년 철폐	308	양탄자[15], 넥타이[15], 주철관[5], 전선[15], 편직제 장갑[15], 직물제 남성바지[15], 기타 세포직물[10], 플라스틱 바닥깔개[10]
-	9,985	15년 철폐 소계	5,451	-
기타 경유[3], 자동차용 경유[5], 경유로 만든 석유제품[3]	4	양허제외	219	알루미늄 박[10], 통신용전선[15], 기타종이제품[15], 기타철강제품[10], 중후판[5], 기타플라스틱제품[15]
-	9,989	총합계	5,670	-

〈농산물〉

● 수입액 기준, 현재 교역 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6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농산물의 68.3%(1,108개), 엘살바도르측은 농산물의 87.8%(882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对엘살바도르 수입의 100%(19.6백만불)**, 엘살바도르측은 **对한국 수입의 77.3%(37만불)**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농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对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282	17.4	19,538,223	99.5	371	37.0	20,083	4.2
유관세	187	11.5	19,538,223	99.5	94	9.4	87	0.0
무관세	95	5.9	0	0.0	277	27.6	19,996	4.2
3년(B)	62	3.8	59	0.0	10	1.0	0	0.0
5년(C)	171	10.5	19,396	0.1	81	8.1	0	0.0
5년내 철폐	515	31.7	19,557,679	99.6	462	46.0	20,083	4.2
7년(D)	18	1.1	0	0.0	0	0.0	0	0.0
10년(E)	128	7.9	71,468	0.4	392	39.0	16,250	3.4
10년내 철폐	661	40.7	19,629,146	100.0	854	85.1	36,332	7.5
12년(F)	324	20.0	0	0.0	1	0.1	335,477	69.6
15년(G)	93	5.7	0	0.0	27	2.7	496	0.1
16년(H)	30	1.8	24	0.0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1,108	68.3	19,629,170	100.0	882	87.8	372,306	77.3
양허제외(X)	499	30.7	18	0.0	122	12.2	109,588	22.7
협정배제(Y)	16	1.0	0	0.0	0	0.0	0	0.0
총합계	1,623	100.0	19,629,188	100.0	1,004	100.0	481,895	100.0

- 우리측은 커피(관세: 2~8%) 즉시철폐, 원당(관세: 3%) 즉시철폐, 소스류(관세: 45%) 10년 철폐 등 엘살바도르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기존 FTA 양허수준 (콜롬비아, 페루 등)을 고려하여 양허

- 우리측은 농산물 분야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장기철폐 (12~16년) 등 예외적 수단 확보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품목, 쇠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등 515개 품목 (품목수 비중 31.7%)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장기철폐) 자당, 호박, 천연꿀, 수박 16년 철폐 등 447개 품목(품목수 비중 27.6%)

- 엘살바도르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기타 음료(관세: 15%)는 12년내 철폐하고 커피조제품(관세: 15%)은 10년 철폐로 개방하였으나,

* 기타음료 1개 세번의 엘축 對韓 수입액은 33만불로, 전체 對韓 농산물 수입액의 69.6% 차지

- 쌀, 돼지고기, 낙농품 등 122개(품목수 비중 12.2%)는 양허제외하고, 베이컨, 과일주스 등 28개(품목수 비중 2.8%)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엘축 양허(년)
1	기타의 시탕수수당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16,415	0	음료[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첨가/기타]	15	335	12
2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2	3,089	0	곡류가공품	15	108	양허 제외
3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장류, 토마토 케첩, 겨자, 마요네스, 카레, 조미료, 매주 등 이외 기타)	45	58	10	인삼류	0	12	0
4	파종류(기타)	8	32	0	접착제	10	7	10
5	거북	8	19	5	사료	5	4	10
6	기타 화훼류	8	12	10	커피조제품	15	3	10
7	삽수와 접수(뿌리없는 것/기타)	8	0	10	기타당류	0	2	0
8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8	0	3	기타당류	0	2	0
9	커피[볶은 것/카페인 제거한 것]	8	0	0	기타천연섬유원료	0	1	0
10	사료용식물성부산물기타	46.4	0	양허 제외	기타식물성유지	0	0	0
11	자당(고체의 것/향미 또는 착색제 첨가)	30	0	16	음료[기타]	15	0	양허 제외
12	자당(고체의 것/향미, 착색에 첨가된 것 이외 기타)	30	0	16	초코렛	15	0	15
13	사탕무당(조당/당도 98.5 이하)	3	0	10	돼지고기	40	0	양허 제외
14	광수와탄산수[설탕,감미료,향미첨가 않은 것]	8	0	5	된장	15	0	10
15	향미용 조제품	8	0	5	음료베이스	0	0	0
-	-	-	-	-	연류	15	0	양허 제외
-	-	-	-	-	음료[기타]	15	0	10
-	-	-	-	-	간장	15	0	10
-	-	-	-	-	음료베이스	10	0	0
-	-	-	-	-	녹두	15	0	10
20대 수입 소계		19,629,188		20대 수출 소계		481,670		
농산물 수입 합계		19,629,188		농산물 수출 합계		481,895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농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엘살바도르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밀(농기·시운용), 소·면양·번식용, 오리·번식용, 토끼·번식용), 여우(번식용), 밀, 사탕무 종자, 화초용 초본, 양파 종자	95	즉시 철폐 (무관세)	277	당류, 인삼류, 음료베이스, 치즈, 기타 낙농품, 커피, 정향, 후추, 아몬드, 난류, 면, 가죽, 밀, 쌀가루, 소, 돼지, 닭, 감자, 난초, 마늘
월당[3], 커피[볶은 것은 것][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은 것][2], 피中心城市[기타][8], 커피[볶은 것은 것][카페인 제거한 것은][8]	187	즉시 철폐 (유관세)	94	기타 가죽[10], 장미[15], 카네이션[15], 코코넛[10/15], 모과[15], 사료[5], 면류[15], 겨자[5], 모피[15]
커피조제품[8], 추잉검[8], 코아야조제품[5], 베이커리류[5/8], 시료[5], 브랜디[20], 소주[30]	62	3년 철폐	10	박류[5]
거북[8], 음료[광수/탄산수][8], 캔디류[8], 오트밀[8], 채소류기공품[30], 식물성 유지[5/8], 조주정[10], 타피오카[8]	171	5년 철폐	81	양고기[15], 버터[5], 녹용[5], 무[15], 양송이[5/10], 시과[15], 감[15], 고추류[5/10], 타피오카[15], 밀가루[15], 생강[10]
	515	5년 철폐 소계	462	-
파인애플[30], 망고[30], 과실 조제품[잼, 제리 등][30], 과실 가공품[조제저장처리][45], 과실주스[50], 수프[18], 기타 과실음료[9]	18	7년 철폐	0	-
소스[45], 기타 화훼류[8], 삽수·접수[8], 월당 및 당밀[3], 식물원[신선][8], 멜론[45], 커피조제품[40], 오렌지주스[냉동][54]	128	10년 철폐	392	글루[10], 기타 사료[5], 커피조제품[15], 기타 소스[15], 기타 물[15], 긴장[10], 녹두[15], 겨자조제[15], 양배추[15]
	661	10년 철폐 소계	854	-
요구르트[36], 채소주스[30], 혼합주스[포도 혼합주스][50], 혼합주스[채소혼합주스][40], 토마토케첩[45], 소시지[18], 스위트콘[30], 마카다미아[신선/건조][30]	324	12년 철폐	1	기타 음료[15]
매니옥[침/냉장][887.4], 캐슈넛[미탈각][8], 바나나[30], 아몬드[신선/건조][8], 코코넛[30], 기타 단일 과실주스[50]	93	15년 철폐	27	초콜렛[15], 베이컨[40], 천연꿀[15], 소시지[40], 기타 육류기공품[40], 기타 당류[40], 당밀[15], 과일주스[15], 비스킷[15], 사탕[15]
지당[30], 아보카도[30], 토마토[신선/냉장][45], 흙박[27], 아보카도[30], 수박[45], 천연꿀[243%]	30	16년 철폐	0	-
	1,108	16년 철폐 소계	882	-
기타사료[46.4], 쇠고기[40], 돼지고기[22.5], 닭고기[냉장/냉동][18/20], 연유[89], 우유[36], 분유[176], 치즈[36], 암[385], 고추류[270%], 흥삼음료[754.3%]	499	양허제외	122	기타 곡류기공품[15], 돼지고기[햄 등][40], 연류[15], 쌀[40], 우유[40], 분유[15/20], 밀효유[40], 버터[30], 치즈[40], 커피[15], 마가린[15], 원당[40], 감자[15]
쌀[멥쌀, 찹쌀, 쇠미, 현미] 및 쌀 관련 제품[513]	16	협정배제	0	-
	1,623	총합계	1,004	-

〈수산물〉

● 엘살바도르가 우리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수산물의 94.3%(595개), 엘살바도르측은 수산물의 99.7% (299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엘살바도르측은 **對한국 수입 100%(4.9백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수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7	1.1	0	0.0	43	14.3	486	97.6
유관세	0	0.0	0	0.0	8	2.7	0	0.0
무관세	7	1.1	0	0.0	35	11.6	486	97.6
3년(B)	8	1.3	0	0.0	0	0.0	0	0.0
5년(C)	229	36.3	0	0.0	8	2.7	0	0.0
5년내 철폐	244	38.7	0	0.0	51	17.0	486	97.6
7년(D)	111	17.6	0	0.0	0	0.0	0	0.0
10년(E)	81	12.8	0	0.0	245	81.7	0	0.0
10년내 철폐	436	69.1	0	0.0	296	98.7	486	97.6
12년(F)	106	16.8	0	0.0	0	0.0	0	0.0
15년(G)	51	8.1	0	0.0	3	1.0	12	2.4
16년(H)	2	0.3	0	0.0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595	94.3	0	0.0	299	99.7	498	100.0
양허제외(X)	35	5.5	0	0.0	1	0.3	0	0.0
양허제외(X)+TRQ	1	0.2	0	0.0	0	0.0	0	0.0
총합계	631	100.0	0	0.0	300	100.0	498	100.0

● 우리측은 고등어, 갈치, 꼬치, 민어, 새우 등 35개 품목 양허제외하고, 냉동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물량 100톤)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문어, 가자미 등 159개 품목의 관세는 장기철폐(12~16년)하여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

* 현재 엘살바도르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전무(全無)

● 엘살바도르는 김(관세: 0%), 연어 통조림(관세: 15%) 등 수입액 기준 97.6%를 즉시철폐하고, 소금(관세: 15%) 등 수입액 기준 100%를 15년내 철폐

〈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엘축 양허 (년)
1	-	-	-	-	김	0	0	0
2	-	-	-	-	소금	15	0	15
2대 수입 소계		-		2대 수출 소계		498		
수산물 수입 합계		-		수산물 수출 합계		498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수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엘살바도르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둥(양식용 치어), 농어(양식 용 치어), 굴, 피조개, 진주조개, 우렁쉥이	7	즉시철폐(무관세)	35	김, 참치, 오징어, 수산부산물, 소금
-	0	즉시철폐(유관세)	8	어육(15), 연어통조림(15)
틸라피아(냉동)[10], 연어[조제][20], 참치(기름에 담근 것/삶은 것)[20]	8	3년 철폐	0	-
송어[활어][10], 잎어[활어][10], 틸라피아[활어][10], 어린[건조/훈제][20], 개설[훈제][20], 명란[냉동][10], 바닷가재[밀폐][20]	229	5년 철폐	8	참치 통조림[15], 청어 통조림[15], 기타 수산물[훈제][15]
-	244	5년 철폐 소계	51	-
명태[신선/냉장][20], 연어[냉동][10], 아귀[냉동][10], 낙지[산 것][20], 바지락[냉동][20], 생선[20], 생선 마리네이트[20], 생선소시지[20], 천일염[1]	111	7년 철폐	0	-
김[냉동/기타][10/20], 닭새우[냉동][20], 보리멸[냉동][10], 흥합[20], 전복[20], 미역[냉장/냉동][20/45], 문어[훈제][20]	81	10년 철폐	245	기타어류[민물의 것/활어][15], 송어[10], 백장어[10], 틸라피아[10], 어육[15], 건조수산물[15], 닭새우[10/15], 바다거재[훈제/기타][15/10], 냉수성새우[훈제/기타][15/10], 수산물통조림[15]
-	436	10년 철폐 소계	296	-
민어[활어][10], 조기[건조/염장/염수장][20], 고등어[염장/염수장][20], 닭새우[훈제][20], 굴[신선/냉장][20], 냉수성새우[신선/냉장/훈제][20], 기타새우[훈제][20]	106	12년 철폐	0	-
냉수성새우[냉동][20], 기타 새우살[훈제/냉동][20], 꽃게[산 것/신선/냉장][20], 문어[냉동][20], 가자미[신선/냉장파레트][20]	51	15년 철폐	3	소금(15), 정어리 통조림[15]
기타 새우[산 것/신선/냉장/건조][20]	2	16년 철폐	0	-
-	595	16년 철폐 소계	299	-
새우류[브레드한 것][20], 굴[조제][20], 해삼[조제][20], 조미오징어[20], 대개[냉동][20], 멸치[건조][20], 민어[냉동][28], 꼬치[냉동][28], 조기[냉동][10], 갈치[냉동][10]	35	양허제외	1	기타 어류 통조림[15]
기타 새우[냉동][20]	1	양허제외+TRQ	0	-
-	631	총합계	300	-

온두라스

1 전반적 평가

● 한국과 온두라스 양측 모두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95%,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5%(11,693개), 온두라스측은 전체 품목의 95.6%(6,667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온두라스 수입의 98.7%(62백만불)**, 온두라스측은 **對한국 수입의 93.2%(74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온두라스]				온두라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811	80.1	60,825,998	96.4	4,481	64.3	22,352,259	27.9
유관세	7,855	64.2	36,922,183	58.5	1,125	16.1	5,388,631	6.7
무관세	1,956	16.0	23,903,815	37.9	3,356	48.1	16,963,629	21.2
3년[B]	156	1.3	1,363,564	2.2	0	0.0	0	0.0
5년[C]	585	4.8	45,925	0.1	649	9.3	4,303,713	5.4
5년내 철폐	10,552	86.2	62,235,487	98.6	5,130	73.6	26,655,973	33.3
7년[D]	129	1.1	26,931	0.0	0	0.0	0	0.0
8년[K]	0	0.0	0	0.0	40	0.6	42,358,844	52.9
9년[U]	1	0.0	0	0.0	0	0.0	0	0.0
10년[E]	392	3.2	3,268	0.0	1,191	17.1	4,926,162	6.2
10년내 철폐	11,074	90.5	62,265,686	98.7	6,361	91.2	73,940,978	92.4
12년[F]	438	3.6	8	0.0	0	0.0	0	0.0
15년[G]	142	1.2	0	0.0	302	4.3	614,781	0.8
16년[H]	38	0.3	0	0.0	4	0.1	10,984	0.0
19년[I]+TRQ**	1	0.0	0	0.0	0	0.0	0	0.0
자유화율	11,693	95.5	62,265,694	98.7	6,667	95.6	74,566,744	93.2
양허제외[X]	534	4.4	829,762	1.3	307	4.4	5,431,484	6.8
협정배제[Y]	16	0.1	0	0.0	0	0.0	0	0.0
총합계	12,243	100.0	63,095,456	100.0	6,974	100.0	79,998,228	1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온두라스) SAC 2015 8단위 기준

** 19년[I]+TRQ: 우리측 냉동새우 1개(600톤)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CAFTA, 중미-EU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확보

- 서스펜션, 클러치 등 일부 자동차 부품 즉시철폐 및 형강, 타이어, 가전제품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와 및 장기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전체)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온두라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고철,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고정식축전기, 강선, 모노리식 직접회로, 액정모니터, 실장에어홀에어, 등(양식용 치에), 농에양식용 치에), 굴, 사탕무 종자	1,956	즉시철폐 (무관세)	3,356	경작기계, 고무제품, 비철금속(아연, 알루미늄), 석유화학제품(초산), 의약품, 섬유(면직물, 의류, 편물제), 자동차부품, 칠강(냉연강판), 도금강판, 양모, 잎담배, 곡분, 대두의 분과 조분, 송어·뱀장어(활어), 타이어(기타)
의류 및 의류부속품(8-13), 섬유기계(트리코트기)(8), 원구류(8), 가구(8), 화학공업제품(3-8), 염료(4-8), 합성수지(4-8), 정밀화학제품(1-50), 일반기계 및 부품(3-13), 정밀기계(3-8), 중고차(8-10), 의료용기기(8), 가죽(3-8), 직물(2-13), 비철금속부산물(3), 커피(2-8), 팜넛/핵유박(3), 원당 및 당밀(3), 정제유(야자유)(3)	7,855	즉시철폐 (유관세)	1,125	유리제품(5-15), 화물차(5), 자동차부품(플리치·서스펜션·핸들)(5), 중고의류 및 중고 섬유제품(15), 전선(5-15), 배전반(10), 계전기(10), 고무제품(5), 고무제가스킷 및 시일(5), 섬유(면직물/섬유사, 의류 등)(5-15), 글리세롤(5), 접착제(15), 접시세척기(15), 플리프로필렌(5), 박류(5), 가죽 및 모피(15), 연어(조제자장처리)(15), 타이어(5-15)
기타전자부품(6.5-8), 연극(3), 섬유기계(방축기공기)(8), 전선및케이블(8), 고무제품(8), 렘(20), 밀가루(3), 옥수수기류(5), 소주(30), 사료(5), 식물성 원료 및 연료(5), 틸라피아(냉동)(10), 닭새우류(훈제)(20), 바닷가재(20), 새우(훈제)(20), 해삼(냉동)(20)	156	3년 철폐	-	-
신발류(8-13), 천연가스/액화한 것(3), 프로판(3), 화학공업제품(6.5), 목재(제재목, 단판 등)(3-8), 비금속광물제품(8), 유리제품(8), 금(3), 레지스토리드(식물성유지)(8), 양서류(8), 인스턴트커피(8), 비스킷(5), 버나나(30), 추인검(8), 드롭스(8), 오트밀(8), 바닷가재(기타)(20), 자라(8), 방어·갯장어·복어(활어)(10), 정어리·메기·민대구(신선/냉장)(10-20), 까나리·명란(냉동)(10), 성게(조제저장처리)(20)	585	5년 철폐	649	고무제 이너튜브(5), 자동차부품(공기여과기, 개스킷 등)(5-10), 고무관(5), 음향기기(5-15), 젤강(내형강·형강 등)(5), 타이어(5-15), 볼트 및 너트(5), 전구(5), 의자(5-15), 보온병(10), 잉크(10), 만년필(10), 헤어드라이어(15), 칠판(15), 운동기구(10), 전기다리미(10), 전자레인지(5), 콘택트렌즈(5), 양파(5-15), 고주류(5-10), 식초 및 식초대용물(15), 콩(15), 샐러리(15), 수박(15), 무화과(15), 파인애플(15), 고구마(15), 암(15), 토란(15), 굴(조제저장처리)(15)
목재(원료용목제품, 파티클보드)(8), 코코아조제품(5.4), 담배(시가필로)(40), 수프(육류/채소 등)(18), 파인애플(30), 어류분(5), 명태/신선/냉장(20), 대구·어귀(냉동)(10), 청어(조제저장처리)(20), 생선페이스트(20), 생선 마리네이드(20)	10,552	5년 철폐 소계	5,130	
-	129	7년 철폐	-	-
-	-	8년 철폐	40	승용차(5-15), 화물차(5-10), 승합차(10-15), 특장차(5)

우리 양허		양허단계	온두라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멜론[45]	1	9년 철폐	-	-
온걸리[목제][8],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윤활유 등][3-8], 가스[기타][5], 목재파티클보드, 섬유판, 핵판 등][8], 소비자용 목제품[8], 담배시가, 셀룰트 등][40], 가지[27], 수박[45], 포도당[8], 과당[8], 콘플레이크[5-4], 콘칩[5-4], 해삼[건조][20], 수생동물엑스[30], 기타[세우(냉동)][20], 가리비조개[조제저장처리][20], 농어·꽁치[신선/냉장][20], 해덕·검정대구·홍설치[냉동][10-20], 뱃장어·홍합·전복[조제저장처리][20]	392	10년 철폐	1,191	죽전지[15], 공기조절기[10], 냉장고·냉동고[15], 종이제품[15], 인쇄물[15], 에어컨[15], 세탁기[15], 인전유리[5-10], 플라스틱컵[10], 문구[15], 화장지[10], 유리공예품[10-15], 앤불런스[5], 안료[5], 건조기[15], 사료용 조제품[5-15], 간장[15], 마늘[15], 상치[15], 원두[15], 가지[15], 올리브[15], 콩[10-15], 바나나[15], 망고[15], 오렌지[15], 그레이프프루트[15], 녹차[15], 흥차[15], 럴[15], 잎담배[5], 담배부산물[5], 잉어[활어][10], 송어·황새치·대구·명태[신선/냉장][10-15]
	11,074	10년 철폐 소계	6,361	
음료[흔한주스/채소주스][30-50], 스파게티[5], 국수[5], 토마토케첩/소스[45], 된장[45], 고추장[35], 카세인[8-20], 민어[활어][10], 넙치·청어[신선/냉장][20], 가자미·홍어[냉동][10], 고등어·멸치·개·문어[조제저장처리][20], 김[10-20]	438	12년 철폐	-	-
질소비품[화산암모늄][6.5], 장미·카네이션[절화][25], 당근[30], 양배추[30], 무[30], 코코넛[30], 아몬드[8], 음료[레몬주스/라임주스 등][50], 조수성[10], 담배주출물과 에센스[40], 봉장어·블랙홀어[10], 가지·마·황다랑어[신선/냉장][20], 은대구·옥돔[냉동][10], 굽·조개[조제저장처리][20]	142	15년 철폐	302	전선[15], 가구[금속제 등][15], 문구[5-15], 기계요소[5], 스프링[10], 비누[15], 조명기기[15], 스포츠화[15], 도료[15], 흔한주스[15], 천연꿀[15], 장미[15], 카네이션[15], 오이류[15], 녹두[15], 배, 당콩[15], 토마토주스[15], 제조담배[15], 틸라피아[신선/냉장][15], 틸라피아[냉동][10], 정어리·사르디넬라[조제저장처리][15]
돼지고기[25-30], 국화[8], 백합[25], 고구마[45-385], 이보카도[30], 망고[30], 레몬[30], 자당[30], 복숭아주스[50], 기타[세우(활어/신선/냉장)][20], 기타[새우(건조)][20]	38	16년 철폐	4	가구 부분품[5-15], 플라스틱제품[5-10]
기타[세우(냉동)][20]	1	19년 철폐+TRQ	-	-
	11,693	19년 철폐 소계	6,667	
경유[3-5], 기타[석유제품][3], 쇠고기[18-72], 닭고기[18-27], 분유[17], 연유[8], 버터[8-8], 치즈[36], 고추[27-270], 양파[27-135], 마늘[27-360], 팥[420.8], 구아바[30], 망고스틴[30], 오렌지[50], 땅콩[230.5], 침개[630], 계[활어/신선/냉장][20], 갈치[냉동][10], 해삼[조제저장처리][20], 멸치·전갱이·갈치[신선/냉장][20], 정어리·기오리·조기·삼치[냉동][10], 조미오징어[20]	534	양허제외	307	도금강판[15], 목제가구[15], 플라스틱제품[기타][5-15], 측선[0]연도강판[15], 신발류[15], 종이제품[10-15], 수프[15], 파스타[15], 소스류[15], 치나 마테의 주출물[15], 커피주출물[15], 요구르트[35], 버터[20], 치즈[15-35], 커피[10-15], 현미[45], 수수[15], 토마토케첩 및 소스[15]
쌀 및 쌀 관련 품목[513]	16	협정배제	-	-
	12,243	총합계	6,974	

2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공산품(임산물 포함)>

●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의 93% 이상에 대해 16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공산품의 100%(9,985개), 온두라스측은 공산품의 97.9% (5,551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온두라스 수입의 100%(29백만불), 온두라스측은 對 한국 수입의 93.2%(74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온두라스]				온두라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528	95.4	28,551,716	95.4	4,072	71.8	22,352,251	28.0
유관세	7,674	76.8	4,670,222	15.6	1,020	18.0	5,388,626	6.7
무관세	1,854	18.6	23,881,494	79.8	3,052	53.8	16,963,625	21.2
3년(B)	99	1.0	1,363,564	4.6	0	0.0	0	0.0
5년(C)	174	1.7	386	0.0	524	9.2	4,303,606	5.4
5년내 철폐	9,801	98.1	29,915,666	100.0	4,596	81.1	26,655,857	33.4
7년(D)	3	0.0	438	0.0	0	0.0	0	0.0
8년(K)	0	0.0	0	0.0	40	0.7	42,358,844	53.0
10년(E)	180	1.8	19	0.0	692	12.2	4,923,029	6.2
10년내 철폐	9,984	99.9	29,916,124	100.0	5,328	94.0	73,937,730	92.6
12년(F)	0	0.0	0	0.0	0	0.0	0	0.0
15년(G)	1	0.0	0	0.0	219	3.9	498,287	0.6
16년(H)	0	0.0	0	0.0	4	0.1	10,984	0.0
전체 자유화율	9,985	100.0	29,916,124	100.0	5,551	97.9	74,447,001	93.2
양허제외(X)	4	0.0	688	0.0	119	2.1	5,431,044	6.8
총합계	9,989	100.0	29,916,811	100.0	5,670	100.0	79,878,046	100.0

● 온두라스측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및 EU에 제공한 것 보다 높은 수준인 8년 철폐로 양허하고, 여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미국, EU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인 10년 이내 철폐로 양허(일부 제외)

* 온측 대한 자동차 수입 : 43백만불 ('12~'14 평균)

● 우리측은 의류(의류부속품, 티셔츠)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신발, 목재(파티클 보드)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주요 對온두라스 수입 품목인 비철금속광, 고철 등은 기존 무관세

〈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천불) 12-14 평균	온족 양허(년)
1	아연광과 그 정광	0	12,581	0	승용차[압축점화식/ 2,000cc 초과, 2,500cc 이하]	5	8,260	8
2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0	3,613	0	승합차[15-45인승/디젤]	10	5,630	8
3	납광과 그 정광	0	3,505	0	승용차[가솔린/1,300cc 초과, 1,500cc 이하]	5	5,364	8
4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기타)	0	3,140	0	알루미늄 도금강판[0.16mm 이상, 2mm 이하]	15	5,235	양허 제외
5	의류부속품(기타)	13	2,144	0	승용차[가솔린/1,500cc 초과, 2,000cc 이하]	15	4,429	8
6	전선및케이블	8	874	0	승용차[디젤/1,500cc 초과, 2,000cc 이하]	5	3,851	8
7	구리 웨이스트와 스크랩	0	658	0	착색이연도강판	15	3,529	10
8	전자부품(기타)	8	597	3	화물차[압축점화식/ 2.5톤 이하]	5	3,176	8
9	면 티셔츠	13	454	0	화물차[압축점화식]	5	2,441	8
10	연괴(비철금속)	3	326	3	승용차[디젤/1,500cc 초과, 2,000cc 이하]	5	2,137	8
11	전자부품(기타)	8	215	3	승용차[가솔린/1,000cc 이하]	5	1,934	8
12	면 남성용 셔츠	13	178	0	타이어[중고재생/버스 및 화물차용]	15	1,850	5
13	의류(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71	0	승용차[가솔린/1,000cc 초과, 1,300cc 이하]	5	1,828	8
14	전자부품(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5	113	3	도금강판	0	1,520	0
15	트리코트기[섬유기계]	8	106	0	타이어[신품/버스 및 화물차용]	5	1,488	0
16	방죽가공기[섬유기계]	8	100	3	의약품	0	1,418	0
17	완구류[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88	0	정밀화학원료[기타]	0	1,352	0
18	티셔츠	13	74	0	타이어[신품/고무제 기 타 공기타이[여]]	5	1,303	5
19	고지[주로 기계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	0	67	0	폴리프로필렌	0	1,256	0
20	면 의류(기타)	13	60	0	화물차[불꽃점화식/ 2.5톤 이하]	5	998	8
20대 수입 소계			29,066		20대 수출 소계		58,999	
공산품 수입 합계			29,917		공산품 수출 합계		79,878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공산품/임산물 포함)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온두라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정밀화학제품, 기타 전자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의약품, 원목, 펄프, 비철금속광, 고철, 비철금속부산물, 고지, 유리 및 유리제품(기타), 천연섬유원료	1,854	즉시철폐 (무관세)	3,052	중고의류 및 중고 섬유제품, 전선, 계전기, 고무제품, 섬유(면직물/섬유사, 의류 등), 접시세척기, 도금강판, 의약품, 폴리프로필렌, 정밀화학(잉크), 연마제품, 철강, 비철금속(알루미늄)
의료[기타/면풀제](13), 전선 및 케이블(8), 정밀화학제품[기타](6.5), 기구부분품(8), 원구류(8), 염료 및 안료(8), 천연섬유직물(10), 유리 및 유리제품(8), 정밀기계부품(8), 의료용기기(10), 유기화합물(6.5), 소와 마속 가죽(3)	7,674	즉시철폐 (유관세)	1,020	타이어(5-15), 자동차부품(클리치·서스펜션·핸들 등)(5), 인쇄물(15), 섬유의류/면풀제[기타](15), 유리제품(15), 신발류(15), 정밀화학(플라스틱제품)(5)
기타전자부품(8), 연괴(3), 섬유기계[방축가공기](8), 전선및케이블(8), 고무제품(8)	99	3년 철폐	-	-
신발류(13), 천연기스(3), 프로판(3), 화학공업제품(6.5), 목재[제재목, 단판 등](5), 비금속광물제품(8), 유리제품(8), 금(3)	174	5년 철폐	524	고무제품(5), 이너튜브(5), 자동차부품(공기여과기·캐스킷 등)(5-10), 고무관(5), 음향기기(15), 철강(H형강·I형강 등)(5), 타이어(5-10), 볼트및너트(5), 전구(5), 의자(15), 보온병(10), 헤어드라이어(15), 칠판(15), 전기다리미(15), 전자레인지(5), 콘택트렌즈(5)
-	9,801	5년 철폐 소계	4,596	
목재[원료용목제품, 파티클보드](8)	3	7년 철폐	-	-
-	-	8년 철폐	40	승용차(5-15), 화물차(5-15), 승합차(10), 특장차(5)
웃걸이[목제](8),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윤활유 등)(3-8), 가스[기타](5), 목재[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8-10), 소비자용 목제품(8)	180	10년 철폐	692	죽전지(15), 공기조절기(15), 냉장고·냉동고(15), 종이제품(10), 인쇄물(15), 에어컨(15), 세탁기(15), 안전유리(5), 플라스틱깔개(10), 문구(15), 화장지(15), 유리공예품(15), 앤불린스(5-15), 안료(5), 건조기(15)
-	9,984	10년 철폐 소계	5,328	
질소비품[황산암모늄](6.5)	1	15년 철폐	219	전선(15), 가구(금속제 등)(15), 문구(5-15), 기계·부분품(5), 자동차부품[스프링](10), 비누(15), 조명기기(15), 스포츠화(15), 도료(15)
-	-	16년 철폐	4	기구 부분품(5-15), 플라스틱제품(5-10)
-	9,985	16년 철폐 소계	5,551	
경유(3-5), 기타석유제품(3)	4	양허제외	119	도금강판(15), 목제가구(15), 플라스틱제품[기타](15), 착색이연도강판(15), 신발류(15), 종이제품(10)
-	9,989	총합계	5,670	

〈농산물〉

● 수입액 기준, 현재 교역 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6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농산물의 68.5%(1,111개), 온두라스측은 농산물의 81.3%(816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对온두라스 수입의 100%(32백만불)**, 온두라스측은 **对한국 수입의 99.6%(11.9만불)**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농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对온두라스]				온두라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274	16.9	32,274,282	100.0	364	36.3	8	0.0
유관세	179	11.0	32,251,961	99.9	95	9.5	5	0.0
무관세	95	5.9	22,321	0.1	269	26.8	3	0.0
3년(B)	42	2.6	0	0.0	0	0.0	0	0.0
5년(C)	181	11.2	961	0.0	107	10.7	43	0.0
5년내 철폐	497	30.6	32,275,244	100.0	471	46.9	52	0.0
7년(D)	17	1.0	11	0.0	0	0.0	0	0.0
9년(J)	1	0.1	0	0.0	0	0.0	0	0.0
10년(E)	132	8.1	3,239	0.0	266	26.5	3,133	2.6
10년내 철폐	647	39.9	32,278,493	100.0	737	73.4	3,185	2.7
12년(F)	332	20.5	8	0.0	0	0.0	0	0.0
15년(G)	96	5.9	0	0.0	79	7.9	116,494	97.0
16년(H)	36	2.2	0	0.0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1,111	68.5	32,278,501	100.0	816	81.3	119,678	99.6
양허제외(X)	496	30.6	0	0.0	188	18.7	439	0.4
협정배제(Y)	16	1.0	0	0.0	0	0.0	0	0.0
총합계	1,623	100.0	32,278,501	100.0	1,004	100.0	120,118	100.0

- 우리측은 커피(관세: 2~8%) 즉시철폐, 바나나(관세: 30%) 5년 철폐, 파인애플(관세: 30%) 7년 철폐 등 온두라스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기존 FTA 양허수준(콜롬비아, 페루 등)을 고려하여 양허

- 우리측은 농산물 분야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장기철폐 (12~16년) 등 예외적 수단 확보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품목, 쇠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등 512개 품목 (품목수 비중 31.6%)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장기철폐) 돼지고기, 호박, 자당 16년 철폐 등 464개 품목(품목수 비중 28.6%)

● 온두라스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음료(관세: 15%)는 15년내 철폐하고
사료용 조제품(관세: 15%)은 10년 철폐로 개방하였으나,

* 음료 3개 세번의 온두라스측 對韓 수입액은 11만불로, 전체 對韓 농산물 수입액의 97.3% 차지

- 쌀, 낙농품, 육류가공품 등 188개(품목수 비중 18.7%)는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제조담배 등 79개(품목수 비중 7.9%)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천불) 12-14 평균	온족 양허 (년)
1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2	32,252	0	음료[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첨가/기타]	15	105	15 (milk-based drinks 양허 제외)
2	소가죽	0	12	0	음료[과일주스·채소주스/기타]	15	10	15
3	소가죽	0	10	0	사료용 조제품(기타)	15	2	10
4	담배(시가)	40	3	10	사료용 조제품(기타)	15	2	10
5	레지노이드[기타 식물성 원료 및 연료]	8	1	5	음료[혼합주스]	15	1	15
6	양서류	8	0	5	조제식료품	15	0	양허 제외
7	커피[볶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8	0	0	면류	15	0	양허 제외
8	커피[볶았으며 카페인 제거한 것]	8	0	0	된장	15	0	양허 제외
9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한 것]	2	0	0	농산가공품(기타)	15	0	양허 제외
10	커피추출물	8	0	5	파스타[기타]	15	0	양허 제외
11	베이카리류	8	0	5	양파	15	0	5
12	코코아조제품	5.4	0	7	간장	15	0	10
13	팜넛유박	2	0	0	커피추출물	15	0	양허 제외
14	음료[혼합주스]	50	0	12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 한 것]	5	0	5
15	커피조제품	3	0	10	마늘	15	0	10
15대 수입 소계			32,278	15대 수출 소계			120	
농산물 수입 합계		-	32,279	농산물 수출 합계		-	120	-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농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온두라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원두, 전분박, 천연섬유원료, 소와 마속 가죽, 농산물 종자류, 수목 종자류	95	즉시철폐 (무관세)	269	치즈, 침깨, 툴립, 장미, 김자, 마늘, 강낭콩, 아몬드, 식물성 한약재, 밀, 보리, 옥수수, 종자류, 음료 베이스, 천연섬유원료(면/견)
커피[2-8], 원당[3], 시료[4.2-5], 점밀화학제품[기타][5-30], 모피[3], 천연섬유원료[2], 식물성유지[야자유][3], 팜넛유액[2]	179	즉시철폐 (유관세)	95	과실류[모과/버찌/설구/자두 등][15], 박류[5], 소가죽[5], 링크모피[15], 코코넛[10-15], 향신료[10]
럼[20], 밀가루[3], 옥수수가루[5], 소주[30], 사료[2], 식물성 원료 및 연료[5]	42	3년 철폐	-	-
레지노이드[식물성유지][8], 양서류[8], 인스턴트커피[8], 비스킷[5], 바나나[30], 추잉검[8], 오트밀[8], 코코아조제품[8]	181	5년 철폐	107	양파[15], 고추류[5], 식초 및 식초대용물[15], 풍[15], 셀리리[15], 수박[15], 무화과[15], 파인애플[15], 고구마[15], 암[15], 토란[15]
	497	5년 철폐 소계	471	
코코아조제품[5.4], 담배(시가릴로)[40], 수프[육류/채소 등][18], 파인애플[30]	17	7년 철폐	-	-
멜론[45]	1	9년 철폐	-	-
담배(시가, 셔懦트 등)[40], 가지[27], 수박[45], 포도당[8], 과당[8], 콘플레이크[5.4], 콘칩[5.4]	132	10년 철폐	266	사료용 조제품[15], 간장[15], 마늘[15], 상치[15], 원두[15], 가지[15], 올리브[15], 풍[15], 바나나[15], 망고[15], 오렌지[15], 그레이프프루트[15], 녹차[15], 흉차[15], 럼[15], 일당배[5], 담배부산물[5]
	647	10년 철폐 소계	737	
음료[혼합주스/채소주스][30-50], 스파게티[5], 국수[5], 토마토케첩/소스[45], 된장[45], 고추장[35], 카세인[8-20]	332	12년 철폐	-	-
장미·카네이션[절화][25], 당근[30], 양배추[27], 무[30], 코코넛[30], 아몬드[8], 음료[레몬주스/라임주스 등][50], 조주정[10], 담배추출물과 애센스[40]	96	15년 철폐	79	혼합주스[15], 천연꿀[15], 장미[15], 카네이션[15], 오이류[15], 녹두[15], 아보카도[15], 배[15], 땅콩[15], 토마토주스[15], 제조담배[5-15]
돼지고기[25], 국화[8], 백합[25], 고구마[385], 아보카도[30], 망고[30], 레몬[30], 자당[30], 복숭아주스[50]	36	16년 철폐	-	-
	1,111	16년 철폐 소계	816	
쇠고기[40], 닭고기[20], 분유[36], 연유[89], 버터[89], 치즈[36], 고추[270], 양파[135], 마늘[360], 땅[420.8], 구아비[30], 망고스틴[30], 오렌지[50], 땅콩[230.5], 침깨[630]	496	양허제외	188	수프[15], 파스타[15], 소스류[15], 치나마테의 초출물[15], 커피초출물[15], 요구르트[35], 버터[20], 치즈[15-35], 커피[10-15], 현미[45], 수수[15]
쌀 및 쌀 관련 품목[513]	16	협정배제	-	-
	1,623	총합계	1,004	

〈수산물〉

● 온두라스가 우리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수산물의 94.6%(597개), 온두라스측은 수산물의 100% (300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온두라스** 수입 7.9%(71천불), 온두라스측은 **對한국** 수입 100%(64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온두라스]				온두라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	1.4	0	0.0	45	15.0	0	0.0
유관세	2	0.3	0	0.0	10	3.3	0	0.0
무관세	7	1.1	0	0.0	35	11.7	0	0.0
3년(B)	15	2.4	0	0.0	0	0.0	0	0.0
5년(C)	230	36.5	44,577	5.0	18	6.0	64	100.0
5년내 철폐	254	40.3	44,577	5.0	63	21.0	64	100.0
7년(D)	109	17.3	26,482	2.9	0	0.0	0	0.0
10년(E)	80	12.7	10	0.0	233	77.7	0	0.0
10년내 철폐	443	70.2	71,069	7.9	296	98.7	64	100.0
12년(F)	106	16.8	0	0.0	0	0.0	0	0.0
15년(G)	45	7.1	0	0.0	4	1.3	0	0.0
16년(H)	2	0.3	0	0.0	0	0.0	0	0.0
19년(I)+TRQ*	1	0.2	0	0.0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597	94.6	71,069	7.9	300	100.0	64	100.0
양허제외(X)	34	5.4	829,074	92.1	0	0.0	0	0.0
총합계	631	100.0	900,143	100.0	300	100.0	64	100.0

* 19년(I)+TRQ: 우리측 냉동새우 1개 (600톤)

● 우리측은 고등어, 갈치, 꼬치, 민어, 일부 새우 등 34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냉동새우는 저율 관세할당(물량 600톤)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문어, 가자미, 새우 등 154개 품목의 관세는 장기철폐(12~19년)하여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

● 온두라스는 김(관세: 0%), 연어 통조림(관세: 15%), 잉어(관세: 5%) 등 수입액 기준 100%를 5년내 철폐

〈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 12-14 평균	온족 양허(년)
1	계(산것.신선.냉장/기타)	20	820	양허 제외	굴(조제 또는 저장처리)	15	64	5
2	바닷가재(냉동, 훈제)	20	36	5	-	-	-	-
3	수산물 부산물(어류분)	5	26	7	-	-	-	-
4	갈치	10	8	양허 제외	-	-	-	-
5	닭새우	20	8	5	-	-	-	-
	5대 수입 소계	-	898	-	5대 수출 소계	-	64	-
	수산물 수입 합계	-	898	-	수산물 수출 합계	-	64	-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수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온두라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 둠, 농어, 굴, 피조개, 진주조개, 우렁쉥이	7	즉시칠페(무관세)	35	김, 뱀장어, 참치, 새우, 오징어, 소금, 식용어분, 정어리, 한천
새우살(20), 새우(냉동)(20)	2	즉시칠페(유관세)	10	연어통조림(15), 어육및어란(15), 산호공예품(5), 식용설육(10-15)
틸라피아(냉동)(10), 바닷가재(20), 새우(훈제)(20), 해삼(냉동)(20), 연어·참치(조제저장처리)(20)	15	3년 철페	-	-
바닷가재(기타)(20), 자라(8), 방어·갯장어·복어·황어(10), 정어리·매기·민대구(신선/냉장)(20), 까나리·명란(냉동)(10), 성게(조제저장처리)(20)	230	5년 철페	18	굴(조제저장처리)(15), 임어(활어)(5), 간고 어란(냉동)(5), 청어·멸치·홍합(조제저장처리)(15)
	254	5년 철페 소계	63	
어류분(5), 명태(신선/냉장)(20), 대구·아귀(냉동)(10), 정어(조제저장처리)(20), 생선파이스트(20), 생선 마리네이드(20), 천일염(1), 식염(8)	109	7년 철페	-	-
해설간조(20), 수생동물엑스(30), 가리비조개(조제저장처리)(20), 농어·꽁치(신선/냉장)(20), 허드·검정대구·홍설치(냉동)(10-20), 백장어·홍합·전복(조제저장처리)(20)	80	10년 철페	233	잉어(활어)(10), 송어·황새치·대구·명태(신선/냉장)(10-15), 매기·청어·전갱이·농어(냉동)(10-15), 문어·전복·해삼·성게(조제저장처리)(15), 소금(15)
	443	10년 철페 소계	296	
민어(활어)(10), 넙치·청어(신선/냉장)(20), 가지마·홍어(냉동)(10), 고등어·멸치·개·문어(조제저장처리)(20), 김(8-20)	106	12년 철페	-	-
봉장어·볼락(활어)(10), 가지마·황다랑어(신선/냉장)(20), 은대구·울듬(냉동)(10), 굴·조개(조제저장처리)(20)	45	15년 철페	4	틸라피아(신선/냉장)(15), 틸라피아(냉동)(10), 정어리·사르디넬리(조제저장처리)(15)
기타새우(활어)(20), 기타새우(건조)(20)	2	16년 철페	-	-
기타새우(냉동)(20)	1	19년 철페+TRQ	-	-
	597	19년 철페 소계	300	
계(활어/신선/냉장)(20), 해삼(조제저장처리)(20), 멸치·전갱이·갈치(신선/냉장)(20), 정어리·가오리·조기·삼치(냉동)(10), 조미오징어(20)	34	양허제외	-	-
	631	총합계	300	

니카라과

1 전반적 평가

● 한국과 니카라과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9%(11,735개), 니카라과측은 전체 품목의 95.9%(6,691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니카라과 수입의 100%(29백만불), 니카라과측은 對한국 수입의 99.1%(80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니카라과]				니카라과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795	80.0	27,878,588	95.7	3,731	53.5	25,089,488	31.0
유관세	7,839	64.0	8,914,846	30.6	342	4.9	372,276	0.5
무관세	1,956	16.0	18,963,742	65.1	3,389	48.6	24,717,213	30.5
3년[B]	170	1.4	266,565	0.9	15	0.2	5,059	0.0
5년[C]	589	4.8	188,342	0.6	761	10.9	7,246,043	9.0
5년내 철폐	10,554	86.2	28,333,495	97.3	4,507	64.6	32,340,590	40.0
7년[D]	131	1.1	61	0.0	129	1.8	36,559,573	45.2
10년[E]	410	3.3	135,744	0.5	1,612	23.1	10,451,420	12.9
10년내 철폐	11,095	90.6	28,469,300	97.8	6,248	89.6	79,351,584	98.1
12년[F]	438	3.6	0	0.0	18	0.3	8,340	0.0
15년[G]	137	1.1	3,999	0.0	373	5.3	723,073	0.9
16년[H]	62	0.5	0	0.0	50	0.7	93,969	0.1
19년[I]	2	0.0	0	0.0	2	0.0	0	0.0
19년[I]+TRQ**	1	0.0	649,234	2.2	0	0.0	0	0.0
자유화율	11,735	95.9	29,122,533	100.0	6,691	95.9	80,176,966	99.1
양허제외(X)	492	4.0	10	0.0	283	4.1	739,026	0.9
협정배제(Y)	16	0.1	0	0.0	0	0.0	0	0.0
총합계	12,243	100.0	29,122,543	100.0	6,974	100.0	80,915,992	1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니카라과) SAC 2015 8단위 기준

** 19년[I]+TRQ : 우리측 냉동새우 1개 (500톤)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확보

- 알로에음료, 의료기기 등 주요 소비재 즉시 철폐 및 형강, 타이어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와 및 장기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전체) 〉

우리 양허		양허단계	니카라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고철,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고정식축전기, 강선, 모노리식 직점회로, 액정모니터, 실장어(활어), 물(양식용 치어), 농어(양식용 치어), 꿀, 시탕무, 촌자	1,956	즉시철폐 (무관세)	3,389	직물, 로프, 건설중장비, 의약품, 초산, 불베어링, 초음파영상진단기, 첨개, 감자와의 분, 해조류(김), 눈다당어·다랭이류(신선/냉장), 정어리·고등어(냉동), 식용어분, 한천
의류(8-13), 가죽(3-8), 중고차(8-10), 화학공업제품(왁스 등)(1-50), 섬유직물(2-13), 일반기계 및 부품(5-8), 수송장비부품(3-8), 섬유제품(8-10), 발전기 및 전동기(8), 의약류(8), 운동용구(8), 장식용 세공품(8), 재봉기(8), 섬유사(1-8), 원구류(8), 비금속광물(1-8), 비철금속부산물(3),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8), 원당 및 당밀(3), 커피(2-8), 럼(20), 커피 컵데기와 컵걸(3), 정제유(야자유)(3), 팜넛/핵유(2), 소기죽(3-5), 치어(양식용)	7,839	즉시철폐	342	플라스틱제품(필름류 등)(5-10), 섬유사(5), 필기구(볼펜, 만년필)(5), 미술용구(5), 섬유제품(15), 가발(5), 무선원격조절기(5), 펌프(5), 납제품(5), 조명기(5), 귀금속장식품(15), 우산(15), 접착제(5), 치실(15), 전기용계기(5), 그림(5-10), 금(5), 정밀화학원료(5), 폴리프로필렌(15), 폴리에틸렌(로프)(15), 천연고무(5), 페건전지(5), 대두의 분과조분(5), 알로에음료(15), 박류(5), 상황(강황)(10), 기타채유종실(5), 양어(조제저장처리)(15), 신발류(스키부츠)(15)
의류(13), 전선및케이블(8), 신발(13), 직물(2-13), 플라스틱제품(6.5), 자동차부품(8), 의료용기기(8), 섬유사(8), 전자부품(6.5-8), 연고(3), 의약품(8), 정밀기계부품(8), 음(3), 기타 식물성한의제(8), 밀기류(3), 옥수수기류(5), 아보카도(30), 사료(5), 릴라피아(10), 닭새우/훈제(20), 바디가제(20), 새우/새우살/훈제(20), 양어(20), 달팽이(20), 버니토우(20)	170	3년 철폐	15	배전반(10), 박류(5), 새우·바다가재(훈제)(15)
신발류(8-13), 목재(재재목, 단판)(3-8), 유리 및 유리제품(8), 비금속광물제품(8), 양서류(8), 뱀(8), 거북(8), 인스턴트커피(8), 레진노이드(식물성유지)(8), 비스킷(5), 바나나(30), 구이버(30), 닭새우(기타)(20), 잎어·송어(활어)(10), 양어(신선/냉장)(20), 날새기·까마귀(냉동)(10), 대구(20), 해삼(20), 성게(20), 해파리(20), 파래(20-45), 한천(8), 어류증(30), 어류분(20)	589	5년 철폐	761	타이어(5-10), 자동차부품(클리치·서스펜션·유류여과기·완충기 등)(5-10), 고무제품(5-10), 유리제품(5-15), 화물차(5), 전구(5), 농약(5), 기계류(10-15), 볼트및너트(5), 공기조절기(5), 콘택트렌즈(5), 잉크(10), 접착제(5), 전자레인지(5), 인쇄물(5-15), 쟁기(10), 양파(5-15), 식초 및 식초대용품(15), 고추류(5-10), 버섯(10), 바나나(15), 무화과(15), 구이버(15), 망고스틴(15), 샤프란(10), 살구·프룬(건조)(15), 잉어(활어)(5), 간과 어린(5), 청어·캐비아대용물(조제저장처리)(15)
	10,554	5년 철폐 소계	4,507	
목재(임료용목제품, 파티클보드)(8), 수프(육류/채소)(18), 파인애플(30), 망고(30), 망고스틴(30), 명태(신선/냉장)(20), 양어(10-20), 매기(냉동)(10), 볶어(냉동)(10), 아귀(냉동)(10), 상어지느리미(건조)(20), 바지락(냉동)(20), 꽁	131	7년 철폐	129	승용차(5-10), 화물차(5), 축전지(15), 타이어(10-15), 타이어튜브(5), 냉장고(15), TV(15), 가구(5), VCR(15), 전선(5-15), 애어컨(15), 철강(H형강)(5), 계전기(10), 농약(5), 플라스틱제품(10), 알루미늄(10-15), 냉동고(15), 세탁기

우리 양허		양허단계	니카라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치[조제/밀폐용기](20), 생선페이스트(20), 생선마리네이드(20), 생선소시지(20), 생선육(20), 소금(80)				[15], 식품포장기계(10), 평판디스플레이(15), 이륜차(5), 살충제(5), 파인애플(15), 망고(15), 골·개·훌·합·오징어[조제저장처리](15)
소비자용 목제품(8),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윤활유 등](3-8), 농재[파티클보드, 섬유판, 할판, 원료용목제품 등](8), 담배[시가](40), 산 수목(8), 양배추(27), 배추(27), 무(30), 가지(27), 셀러리(27), 코코넛(30), 멜론(45), 기타새우[냉동](20), 농어·돔[신선/냉장](20), 보리멸[냉동](10)	410	10년 철폐	1,612	도금강판(15), 타이어[5-10], 회물차(5), 승합차(5-10), 승용차(5-10), 주철(5), 금속제기구(10), 주강(5-10), 자동차부품[스프링·섀시·에어백 등](5-10), 앰뷸런스(5), 볼펜(15), 종이제품(15), 개폐기(10), 항수(15), 소스류(15), 수프(15), 주류[리큐르류와코디얼](10), 파스타(15), 간장(15), 차나·마테의 주출물(15), 토미토케첩과 소스(15), 흉차(15), 녹차(15), 오징어(10), 소금(15), 송어·뱀장어·잉어·황어(10), 황새치·대구·민대구[신선/냉장](10-15), 넙치·가자미[냉동](10), 캐비어·달팽이·전복[조제저장처리](10-15)
		10년 철폐 소계	6,248	
혼합주스(50), 피스타치오(30), 마카다미아[넛](30), 무화과(30), 살구·프루[건조](18-45), 넙치(10-20), 가오리[신선/냉동](20), 뱃장아·홍어[냉동](10), 오징어(10-20), 낙지(20), 주꾸미(20), 소라(20)	438	12년 철폐	18	플라스틱제품[필름류](10), 섬유·편직물(10), 코일(15), 음료[설탕 기타 김이료 또는 향미 점가](15), 계피[갈거나 부순 것](10), 산채류(15), 다량어·고등어·넙치[조제저장처리](15)
질소비료[황산암모늄](6.5), 담배[시가/릴로](40), 장미·튤립[절화](25), 원두(27), 수박(45), 잎담배(20), 조주정·돔·봉장어[황어](10-28), 가지·삼치[신선/냉장](20), 은대구[냉동](10)	137	15년 철폐	373	의류(15), 기타섬유제품(15), 뜨(10), 장식용품(15), 알루미늄(5-10), 형강(5-15),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10), 음료[과일주스, 인삼음료](5-15), 침기름과 그 분획물(15), 후추(5), 천연꿀(15), 땅콩(10), 양파(15), 제조담배(15), 정어리[조제저장처리](15), 틸라피아(15), 새우[냉동](15), 오징어(15)
돼지고기(25-30), 치즈(36), 천연꿀(243), 토란(45-385), 참깨(630), 들깨(40), 자당(30), 피넛버터(50), 기타새우[황어/신선/냉장](20), 기타새우[건조](20)	62	16년 철폐	50	목제기구(15), 의류(15), 알루미늄(15), 프로필리온중합체필름(5-10), 폴리아이드필름(10), 커피추출물·에센스·농축물(15), 사탕(15), 김(15), 레몬(15)
뼈없는쇠고기[냉장/냉동](20), 기타새우[냉동](20)	3	19년 철폐, 19년 철폐+TRQ	2	뼈없는쇠고기[냉장/냉동](30)
	11,735	19년 철폐 소계	6,691	
경우(3-5), 기타석유제품(3), 쇠고기(18-72), 닭고기(18-27), 분유(176), 감자(304), 양파(27-135), 마늘(27-360), 고추(27-270), 오렌지(50), 유당(20-49.5), 해설[조제저장처리](20), 멸치·고등어·전갱이·갈치[신선/냉장](20), 터번·조기·삼치[냉동](10), 대게(20), 굴(20), 오징어(10-22)	492	양허제외	283	시멘트클링커(5), 아연도강판(15), 플라스틱관(5), 의자(15), 산발류(15), 화장지(10-15), 생선희(10), 시멘트(10), 과일주스(15), 헌미(60), 비스킷(15), 빵(15), 음료제(15), 당류[원당·정당](55), 요구르트, 치즈, 오렌지(15), 기타 계(냉동)(10)
쌀 및 쌀 관련 품목(513)	16	협정배제	-	
	12,243	총합계	6,974	

2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공산품(임산물 포함)〉

●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의 98% 이상에 대해 16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공산품의 100%(9,985개), 니카라과측은 공산품의 98.7% (5,598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니카라과 수입의 100%(19백만불), 니카라과측은 對 한국 수입의 99.1%(79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니카라과]				니카라과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511	95.2	19,338,682	97.8	3,325	58.6	25,087,024	31.3
유관세	7,657	76.7	666,940	3.4	238	4.2	371,761	0.5
무관세	1,854	18.6	18,671,742	94.4	3,087	54.4	24,715,263	30.8
3년(B)	116	1.2	266,380	1.3	2	0.0	5,059	0.0
5년(C)	174	1.7	167,780	0.8	668	11.8	7,245,241	9.0
5년내 철폐	9,801	98.1	19,772,841	100.0	3,995	70.5	32,337,324	40.3
7년(D)	3	0.0	0	0.0	119	2.1	36,559,322	45.6
10년(E)	180	1.8	341	0.0	1,145	20.2	10,420,286	13.0
10년내 철폐	9,984	99.9	19,773,182	100.0	5,259	92.8	79,316,932	98.9
12년(F)	0	0.0	0	0.0	9	0.2	0	0.0
15년(G)	1	0.0	0	0.0	291	5.1	104,151	0.1
16년(H)	0	0.0	0	0.0	39	0.7	92,617	0.1
전체 자유화율	9,985	100.0	19,773,182	100.0	5,598	98.7	79,513,700	99.1
양허제외(X)	4	0.0	0	0.0	72	1.3	704,605	0.9
총합계	9,989	100.0	19,773,182	100.0	5,670	100.0	80,218,305	100.0

● 니카라과는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5개 품목에 대해서는 EU에 제공한 것보다 높은 수준인 7년 철폐로 양허하고, 여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주요 품목은 10년 이내 철폐로 양허

* 니측 對韓 자동차 수입: 39백만불('12~'14 평균)

- 섬유, 귀금속장식품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신발, 고무제품, 타이어 등에 대해서는 10년내 철폐

● 우리측은 의류, 비금속광물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전선 및 케이블, 의료 기기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주요 對니카라과 수입 품목인 고철, 비철금속 부산물 등은 기존 무관세

〈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천불] 12-14 평균	니총 양허 [년]
1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기타]	0	13,939	0	승용차[기술린/1,500cc 초과, 2,000cc 이하]	10	12,030	7
2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2,410	0	승용차[기술린/1,300cc 초과, 1,500cc 이하]	10	6,257	7
3	동 웨이스트와 스크랩	0	1,418	0	알루미늄 도금강판 [0.16mm 이상, 2mm 이하]	15	4,425	10
4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0	689	0	정밀화학원료[기타]	0	4,406	0
5	면 의류[기타]	13	399	0	화물차[압축점화식/2.5톤 이하]	5	4,213	7
6	고지(표백하지 않은 크리프트지 ·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 판지로 만든 것)	0	188	0	승용차[기술린/1,000cc 초과, 1,300cc 이하]	10	4,098	7
7	면 티셔츠	13	177	3	승용차[기술린/1,000cc 이하]	5	3,135	7
8	신발[기타]	13	158	5	승용차[기술린/2,000cc 초과, 3,000cc 이하]	10	1,932	7
9	가죽[스플릿하지 않은 풀 그레이인, 그레이인 스플릿]	3	42	0	폴리프로필렌	0	1,709	0
10	면 의류[기타]	13	32	3	철도차량부품[기타]	0	1,491	0
11	의류[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29	0	타이어[신풀/버스 및 화물차용]	5	1,356	5
12	의류[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25	0	건설중장비[기타]	0	1,150	0
13	데님 의류	13	21	3	착색야연도강판	0	1,042	0
14	기타 방직용 섬유 티셔츠	13	20	3	축전지	15	1,025	7
15	의류[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8	0	의약품	0	1,021	0
16	의류[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15	0	타이어[중고재생/버스 및 화물차용]	15	969	10
17	기타 방직용 섬유 의류	13	12	0	화물차[압축점화식/5톤 초과 20톤 이하]	0	945	0
18	면 남성 바지	13	11	0	화물차[불꽃점화식/2.5톤 이하]	5	937	7
19	면 남성 셔츠	13	11	0	승합차[11-14인승/디젤]	5	915	10
20	원목[기타]	0	11	0	화물차[디젤/5톤 이하]	5	769	7
20대 수입 소계			19,624		20대 수출 소계		53,825	
공산품 수입 합계			19,773		공산품 수출 합계		80,218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공산품/임산물 포함) 〉

우리 양허		양허단계	니카라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비철금속광, 비철금속부산물, 고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종이류, 인쇄물, 석탄, 나프타, 의약품,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원목, 펄프	1,854	즉시철폐 (무관세)	3,087	철강(냉연강판/작색아연도강판), 정밀화학(계면활성제), 의약품, 철도차량부품, 의료기기, 잉크, 알루미늄, 지류, 초산, 전자전기부품, 고무제품, 축전지, 염료, 문구
의류(8-16), 가죽(3-8), 중고차(6.5-8), 화학공업제품(왁스 등)(6.5), 섬유직물(2-13), 일반기계 및 부품(3-8), 고무(2-8), 수송장비부품(8), 섬유제품(8-10), 발전기 및 전동기(8), 약기류(8), 운동용구(8), 장식용 세공품(8), 재봉기(8), 섬유사(1-8), 원구류(8)	7,657	즉시철폐 (무관세)	238	직물(5-10), 로프(15), 플라스틱제품(필름류 등)(5), 섬유사(5), 미술용구(5), 섬유제품(15), 가발(5), 무선원격조절기(5), 펌프(5)
의류(8-13), 전선케이블(8), 신발(13), 직물(13), 플라스틱제품(6.5), 자동차부품(8), 의료용기기(8), 섬유사(8), 전자부품(6.5-8), 연괴(3), 의약품(8), 정밀기계부품(8), 은(3)	116	3년 철폐	2	배전반(10)
신발류(13), 목재(제재목, 단판) (3-8), 유리 및 유리제품(8), 비금속광물제품(8)	174	5년 철폐	668	타이어(5-10), 자동차부품(클리치·서스펜션·원총기 등)(5-10), 고무제품(5), 유리제품(15), 화물차, 전구(5), 농약(5), 기계류(10-15), 볼트및너트(5), 공기조절기(10), 콘택트렌즈(5), 잉크(5), 접착제(15), 전자레인지(5), 인쇄물(15), 쟁기(10)
	9,801	5년 철폐 소계	3,995	
목재(원료용목제품, 파티클보드)(8)	3	7년 철폐	119	승용차(5-10), 화물차(5), 축전지(15), 타이어(5-15), 타이어튜브(5), 냉장고(15), TV(15), VCR(15), 전선(15), 에어컨(15), 철강(H형강)(5), 계전기(10), 농약(5), 플라스틱제품(10), 알루미늄(15), 낭동고(15), 세탁기(15), 식품포장기계(10), 평판디스플레이(15), 이륜차(5), 살충제(5)
소비재용 목제품(8),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유휴유 등)(3-8), 목재파티클보드, 섬유판, 힙판, 원료용목제품 등)(8-10)	180	10년 철폐	1,145	도금강판(15), 타이어(5-15), 화물차(5-10), 승용차(5-10), 주철(5-10), 주강(5), 자동차부품(스프링·섀시·에어백 등)(5-10), 앰뷸런스(5), 볼펜(15), 종이제품(15), 개폐기(15), 형수(15)
	9,984	10년 철폐 소계	5,259	
-	-	12년 철폐	9	플라스틱제품(필름류)(10), 섬유(면직물)(10), 코일(15)
질소비료(황산암모늄)(6.5)	1	15년 철폐	291	의류(15), 섬유제품(15), 옷(10), 장식용품(15), 알루미늄(10), 헝겊(5-15)
-	-	16년 철폐	39	목제기구(15), 의류(15), 알루미늄(15), 프로필렌중합체필름(5-10), 폴리아미드필름(10)
	9,985	16년 철폐 소계	5,598	
경유(3-5), 기타석유제품(3)	4	양허제외	72	시멘트클링커(5), 아연도강판(15), 플라스틱관(15), 의자(15), 신발류(15), 화장지(15), 생식회(10), 시멘트(10)
	9,989	총합계	5,670	

〈농산물〉

● 수입액 기준, 현재 교역 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9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농산물의 71%(1,153개), 니카라과측은 농산물의 79.1% (794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니카라과 수입의 100%(8백만불), 니카라과측은 對한국 수입의 95%(66만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농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니카라과]				니카라과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277	17.1	8,539,907	99.7	361	36.0	615	0.1
유관세	182	11.2	8,247,907	96.3	94	9.4	514	0.1
무관세	95	5.9	292,000	3.4	267	26.6	101	0.0
3년(B)	41	2.5	185	0.0	10	1.0	0	0.0
5년(C)	184	11.3	1,701	0.0	84	8.4	802	0.1
5년내 철폐	502	30.9	8,541,793	99.7	455	45.3	1,417	0.2
7년(D)	19	1.2	61	0.0	2	0.2	0	0.0
10년(E)	150	9.2	17,826	0.2	256	25.5	30,003	4.3
10년내 철폐	671	41.3	8,559,680	100.0	713	71.0	31,421	4.5
12년(F)	332	20.5	0	0.0	3	0.3	8,200	1.2
15년(G)	88	5.4	3,999	0.0	65	6.5	618,651	89.1
16년(H)	60	3.7	0	0.0	11	1.1	1,352	0.2
19년(I)	2	0.1	0	0.0	2	0.2	0	0.0
전체 자유화율	1,153	71.0%	8,563,679	100.0	794	79.1	659,624	95.0
양허제외(X)	454	28.0	0	0.0	210	20.9	34,421	5.0
협정배제(Y)	16	1.0	0	0.0	0	0.0	0	0.0
총합계	1,623	100.0	8,563,679	100.0	1,004	100.0	694,044	100.0

- 우리측은 커피(관세: 2~8%) 즉시철폐, 원당(관세: 3%) 즉시철폐, 담배류(관세: 40%) 10년 철폐 등 니카라과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기존 FTA 양허수준 (콜롬비아, 페루 등)을 고려하여 양허
- 우리측은 농산물 분야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장기철폐 (12~19년) 등 예외적 수단 확보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470개 품목(품목수 비중 29.0%)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장기철폐) 쇠고기 2개 품목(신선/냉장, 냉동) 19년 철폐, 식용설육, 치즈, 천연꿀 16년 철폐 등 482개 품목(품목수 비중 29.7%)

❸ 니카라과는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알로에음료(관세: 15%)는 즉시철폐하고, 기타 음료(관세: 10~15%)는 15년내 철폐로 개방하였으나,

* 음료 3개 세번의 니측 對韓 수입액은 62만불로, 전체 對韓 농산물 수입액의 90% 차지
* SAC 22029090 세번은 알로에음료(즉철폐)와 기타 음료(15년)로 세번분리

- 쌀, 쇠고기, 낙농품 등 210개(품목수 비중 20.9%)는 양허제외하고, 고구마, 고사리 등 81개(품목수 비중 9.1%)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출액(천불) 12-14 평균	니측 양허(년)
1	원당[당도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3	7,009	0	음료[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 첨가/기타]	15	616	15 [알로에외]
2	당밀[기타]	3	772	0	음료[과일주스·채소주스/기타]	15	20	양허제외
3	커피[볶지 않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2	463	0	소스류[기타]	15	11	10
4	소가죽	0	292	0	수프·브로드와수프·브로드용 조제품[육류기공품]	15	9	10
5	담배[시가]	40	9	10	음료[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15	8	12
6	산수목[기타]	8	9	10	현미	60	6	양허제외
7	담배[시기릴로]	40	4	15	비스킷	15	6	양허제외
8	커피[볶았으며 카페인 제거하지 않은 것]	8	3	0	주류[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10	4	10
9	양서류[기타]	8	1	5	파스타[기타]	15	2	10
10	뱀	8	0	5	간장	15	2	10
11	한약자제[기타/향료, 의료용 등]	8	0	3	과일주스	15	1	양허제외
12	파종류[기타]	8	0	5	커피조제품	15	1	16
13	럼 및 태피아	20	0	0	기타 식물성유지	10	1	15
14	거북	8	0	5	면류	15	0	10
15	육류수프	18	0	7	인삼주스	10	0	15
15대 수입 소계		-	8,563	-	15대 수출 소계	-	688	-
농산물 수입 합계		-	8,564	-	농산물 수출 합계	-	694	-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농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니카라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사료, 농산물 종자류, 화훼류, 수목 종자류, 천연섬유원료[면/양모], 소와 마속가죽, 기타가죽	95	즉시철폐 (무관세)	361	참깨, 치즈, 화초류[난초/장미/기타], 포도, 식물성 한약재, 강낭콩, 이모드, 보리, 밀, 옥수수, 종자류, 효모류, 잎담배
커피[2-8], 원당[3], 사료[4.2-5], 정밀화학제품[기타][5-30], 모피[3], 천연섬유원료[2], 견[3-51.7], 팜넛유박[2], 식물성 한약재[8], 밀[1.8-3]	182	즉시철폐 (유관세)	95	박류[5], 떼지고기[5], 알로에음료[15 버찌[10], 가발 및 가눈썹[5], 상아[5], 녹용[5], 모과·살구·버찌·자두[15]
기타 식물성한약재[8], 밀가루[3], 옥수수 가루[5], 아보카도[30], 사료 [2-5]	41	3년 철폐	10	박류[5]
양서류[8], 뱀[8], 거북[8], 인스턴트커피[8], 레지노이드[식물성유지][8], 비스킷[5], 바나나[30], 구이바[30]	184	5년 철폐	84	양파[15], 식초 및 식초대용물[15], 고추류[5], 버섯류[5-10], 바나나[15], 무화과[15], 구아바[15], 망고스틴[15], 샤프란[10], 살구·프룬[건조][15]
	502	5년 철폐 소계	455	
수프[육류/채소][18], 파인애플[30], 망고[30], 망고스틴[30]	19	7년 철폐	2	파인애플[15], 망고[15]
담배[시가][40], 산 수목[8], 양배추[27], 배추[27], 무[30], 가지[27], 샐러리[27], 코코넛[30], 멜론[45]	150	10년 철폐	256	소스류[15], 수프[15], 주류[리큐르류와 코디얼][10], 파스타[15], 간장[15], 차나 마티의 주출물[15], 토마토케첩과 소스[15], 흉차[15], 녹차[15]
	671	10년 철폐 소계	713	
훈합주스[50], 피스타치오[30], 마카다미 아보[30], 무화과[30], 살구[45], 프룬[건조][18]	332	12년 철폐	3	음료[설탕 기타 김미료 또는 향미 첨가][15], 계피[갈거나 부순 것][10], 고사리[15]
담배[시가릴로][40], 장미·튤립[절화][25], 완두[27], 수박[45], 잎담배[20], 조주정[10]	88	15년 철폐	65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10], 인삼음료[15], 침기름과 그 분획물[15], 후추[5], 천연꿀[15], 땅콩[10], 쪽파[15], 제조담배[5-15]
돼지고기[25], 치즈[36], 천연꿀[243], 토란[385], 참깨[630], 들깨[40], 자당[30], 피넛버터[50]	60	16년 철폐	11	커피추출물·에센스·농축물[15], 사탕[15], 검[15], 레몬[15]
뼈없는쇠고기[냉장/냉동][40]	2	19년 철폐	2	뼈없는쇠고기[냉장/냉동][30]
	1,153	19년 철폐 소계	794	
쇠고기[40], 닭고기[18-20], 틸지분유[176], 김자[27-304], 양파[304], 미들[360], 고추[270], 오렌지[50], 유당[20-49.5]	454	양허제외	210	과일주스[15], 현미[60], 비스킷[15], 빵[15], 음료베이스[15], 당류[55], 요구르트[40], 치즈[5-40], 오렌지[15]
쌀 및 쌀 관련 품목[513]	16	협정배제		
	1,623	총합계	1,004	

〈수산물〉

● 니카라과가 우리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수산물의 94.6%(597개), 니카라과측은 수산물의 99.7% (299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니카라과 수입의 100%(78만불)**, 니카라과측은 **對한국 수입 100%(36백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니카라과]				니카라과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7	1.1	0	0.0	45	15.0	1,849	50.8
유관세	0	0.0	0	0.0	10	3.3	0	0.0
무관세	7	1.1	0	0.0	35	11.7	1,849	50.8
3년[B]	13	2.1	0	0.0	3	1.0	0	0.0
5년[C]	231	36.6	18,861	2.4	9	3.0	0	0.0
5년내 철폐	251	39.8	18,861	2.4	57	19.0	1,849	50.8
7년[D]	109	17.3	0	0.0	8	2.7	251	6.9
10년[E]	80	12.7	117,577	15.0	211	70.3	1,131	31.0
10년내 철폐	440	69.7	136,438	17.4	276	92.0	3,231	88.7
12년[F]	106	16.8	0	0.0	6	2.0	140	3.8
15년[G]	48	7.6	0	0.0	17	5.7	272	7.5
16년[H]	2	0.3	0	0.0	0	0.0	0	0.0
19년[I]+TRQ*	1	0.2	649,234	82.6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597	94.6	785,672	100.0	299	99.7	3,642	100.0
양허제외[X]	34	5.4	10	0.0	1	0.3	0	0.0
협정배제[Y]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	631	100.0	785,682	100.0	300	100.0	3,642	100.0

* 19년[I]+TRQ: 우리측 냉동새우 1개 (500톤)

● 우리측은 고등어, 갈치, 꽁치, 민어, 일부 새우 등 34개 품목 양허제외하고, 냉동새우는 저율 관세할당(물량 500톤)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 문어, 가자미, 새우 등 157개 품목의 관세는 장기철폐(12~19년)하여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

● 니카라과는 김(관세: 0%), 연어 통조림(관세: 15%), 잉어(관세: 5%) 등 수입액 기준 100%를 15년내 철폐

〈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니족 양허 (년)
1	새우	20	649	19+TRQ	김	0	1	0
2	새우살	20	117	10	기타수산가공품[건조]	15	0	10
3	닭새우	20	18	5	기타수산가공품	15	0	10
4	가리비조개[조제저장처리]	20	0	10	정어리 통조림	15	0	15
5	해삼[조제저장처리]	20	0	양허제외	굴 통조림	15	0	7
	5대 수입 소계	-	785	-	5대 수출 소계	-	3	-
	수산물 수입 합계	-	785	-	수산물 수출 합계	-	3	-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수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니카라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뱀장어[활어], 치어[양식용], 굴·조개[종파용], 둥[양식용], 농어[양식용]	7	즉시철폐[무관세]	35	김, 눈다랑어·다랭이류[신선/냉장], 정어리·고등어[냉동], 식용어분, 한천
-	-	즉시철폐[유관세]	10	어우 및 어란(15), 연어통조림(15), 산호공예품(5)
딜리피아(10), 닭새우[훈제](20), 바다기재(20), 새우/새우살[훈제](20), 연어(20), 달팽이(20), 버니토우(20)	13	3년 철폐	3	새우·바다기재[훈제](15)
닭새우[기파](20), 잉어·송어[활어](10), 연어[신선/냉장](20), 날새기·끼나리[냉동](10), 대구(20), 해삼(20), 성게(20), 해파리(20), 피라(20-45), 한천(8), 어류즙(30), 어류분(5)	231	5년 철폐	9	잉어[활어](5), 간과 어란(5), 청어·캐비아 대용물[조제저장처리](15)
	251	5년 철폐 소계	57	
명태[신선/냉장](20), 연어(20), 메기(냉동)(10), 아귀(냉동)(10), 상어지느러미(20), 바지락[냉동](20), 생선페이스트(20), 소금(1-8)	109	7년 철폐	8	굴·개·총합·오징어[조제저장처리](15)
기타새우[냉동](20), 농어·돔[신선/냉장](20), 보리멸[냉동](10)	80	10년 철폐	211	오징어(10), 소금(15), 송어·뱀장어·잉어[활어](10), 황새치·대구·민대구[신선/냉장](10-15), 넙치·가자미[냉동](10), 캐비어·달팽이·전복[조제저장처리](10-15)
	440	10년 철폐 소계	276	
넙치(10), 가오리[신선/냉장](20), 뱀장어·홍어[냉동](10), 오징어·넙치·주꾸미·소라(20)	106	12년 철폐	6	다랑어·고등어·멸치[조제저장처리](15)
돔·붕장어[활어](20), 가자미·넙치[신선/냉장](20), 은대구[냉동](10)	48	15년 철폐	17	정어리[조제저장처리](15), 딜리피아(10-15), 새우[냉동](15), 오징어(15)
기타새우[활어/신선/냉장](20), 기타새우[건조](20)	2	16년 철폐	-	-
기타새우[냉동](20)	1	19년 철폐+TRQ	-	-
	597	19년 철폐 소계	299	
해삼[조제저장처리](20), 멸치·고등어·전갱이·갈치[신선/냉장](20), 티벌·조기·넙치[냉동](10), 대개(20), 굴(20), 오징어(20)	34	양허제외	1	기타 게[냉동](10)
	631	총합계	300	

파나마

1 전반적 평가

● 한국과 파나마 양측 모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 9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달성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전체 품목의 95.6%(11,707개), 파나마측은 전체 품목의 95.3%(8,416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파나마 수입의 99.5%(5.3억불)**, 파나마측은 **對한국 수입의 99.3%(3.9억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전체 품목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파나마]				파나마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795	80.0	462,080,715	86.3	5,350	60.6	330,419,994	83.8
유관세	7,839	64.0	2,326,400	0.4	1,570	17.8	40,972,747	10.4
무관세	1,956	16.0	459,754,315	85.9	3,780	42.8	289,447,247	73.4
3년(B)	172	1.4	15,768,027	2.9	47	0.5	523,508	0.1
5년(C)	608	5.0	52,548,472	9.8	1,403	15.9	7,600,735	1.9
5년내 철폐	10,575	86.4	530,397,214	99.0	6,800	77.0	338,544,236	85.9
7년(D)	131	1.1	256,172	0.0	27	0.3	632,815	0.2
10년(E)	408	3.3	1,385,661	0.3	1,201	13.6	49,812,981	12.6
10년내 철폐	11,114	90.8	532,039,047	99.3	8,028	90.9	388,990,032	98.7
12년(F)	435	3.6	0	0.0	8	0.1	0	0.0
15년(G)	123	1.0	0	0.0	372	4.2	52,390	0.0
16년(H)	32	0.3	0	0.0	8	0.1	2,278,307	0.6
19년(I)	2	0.0	0	0.0	0	0.0	0	0.0
19년(I)+TRQ	1	0.0	791,022	0.1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11,707	95.6	532,830,069	99.5	8,416	95.3	391,320,729	99.3
양허제외(X)	520	4.2	2,689,999	0.5	415	4.7	2,896,985	0.7
협정배제(Y)	16	0.1	0	0.0	0	0.0	0	0.0
총합계	12,243	100.0	535,520,068	100.0	8,831	100.0	394,217,713	100.0

* 품목수 :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파나마) SAC 2015 8단위 기준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확보

- 철강제품, 알로에음료, 배전반 등에 대해 즉시철폐 및 에어컨, 타이어,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등의 수단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전체) 〉

우리 양허		양허단계	파나마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화물선, 고철, 화액선, 냉동선, 하이브리드 직접회로, 액정모니터,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사탕 무 종자	9,795	즉시철폐 (무관세)	5,350	승용차, 용용이연도강판, I형강, H형강, 화 물자동차, 착색아연도강판, 벌브, 유기계 면활성제, 철근, U형강, 사료용 조제품, 음 료베이스, 침차[신선/냉장]
기타 섬유제품(8), 펌프 및 압축기(8), 합성 섬유(8), 윤활유(7), 커피(2/8), 럼 및 태피아 (20), 새우살[새우/냉수성/냉동]/기타(20)		즉시철폐 (유관세)		기타철구조물(10), 건설중장비(5), 엘리베 이터(3), 중대형직류전동기(3), 유압식변압 기(4), 일로에음료(10), 김(15), 침차[활어(15)]
원유(3), 벙커시유(3), 천연섬유세(8), 고무제 가스켓(8), 내시경(8), 코코아 분말(5), 밀 락파이어(냉동)(10), 닭새우(냉동/훈제)(20)	172	3년 철폐	47	전구(10), 건선용진선(10), 분식시설키기 (5), 음향기기부품(10), 라디오(5), 전자레 인지(10), VCR(5), 블류(10/15)
천연가스(3), 프로판(3), 로진(6.5), 커피조 제품(엑스 등)(8), 초콜렛(8), 위스키류 (20), 바나나(30), 코코아두(8), 생선육(20)	608	5년 철폐	1,403	에어컨(10), 건축용목제품(15), 무계목강 관(10), 초음파영상진단기(10), 공기조절 기(10), 기타조명기기(10), 수박(15)
	10,575	5년 철폐 소계	5,800	-
파티클보드(8), 원료용 목제품(8), 파인애 플(30), 파파야(30), 매니옥(냉동)(45), 잼, 제리[마멀레이드(30), 과즙음료(9)]	131	7년 철폐	27	회전의자(15), 자동차부품[방열기, 클리치 등](15), 합판(10), 기타 세탁기(10), 모터 사이클(15), 유모차(15)
윤활유(7), 섬유판(8), 휘발유(5), 차, 마태 조제품(40), 수박(45), 멜론(45), 코코아조 제품(8), 기타 새우살(냉동/기타)(20), 기 타새우선 것/신선/냉장)(20)	408	10년 철폐	1,201	기타철구조물(15), 타이어(10), 책상(15), 철강제 용기(15), 냉장고(10), 긴장(10), 기 타과일주스(10), 고일농축액(10), 음료베 이스(10), 수프(10)
	11,114	10년 철폐 소계	8,028	-
화훼류(8), 무화과[신선/건조] (30), 납치 (활어)(10), 낙지[냉동](20), 흥합[냉동](20)	435	12년 철폐	8	엔진을 갖춘 새시(15), 차체[버스](15), 캠핑카(15)
황산암모늄(6.5), 조란[닭의 것] (27), 절화 (25), 미요네즈(45), 닭새우(훈제)(20)	123	15년 철폐	372	도료(6), 비누(15), 기타표면활성제(15), 프로 필린 중합체의 관(6), 기타종이제품(15), 기타 음료코코아베이스(15), 오렌지주스[냉동](10)
망고[신선/건조](30), 자당(30), 조제분유 (36), 조제식료품(유아용)(40)	32	16년 철폐	8	기타 축진지(15),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10), 기타 연산축전지(15), 축전지 부문품 (3), 혼합주스(10), 기타음료(10)
쇠고기[뼈 없는 것](40)	2	19년 철폐	0	-
기타 새우[냉동](20)	1	19년 철폐+TRQ	0	-
	11,707	19년 철폐 소계	8,416	-
경유(3/5), 쇠고기[갈비 등](40), 우유(36), 탈지분유(176), 치즈(36), 천연풀(243%), 갈치[냉동](10), 민어[냉동](28)	520	양허제외	415	연산축전지(15), 알루미늄 케이블(10), 알 루미늄 봉(10), 기타 비스킷(10), 탄산음료 (10), 스위트비스킷(10), 뺑제조용재료(10)
쌀[멥쌀, 쫙쌀, 쇠미, 현미] 및 쌀 관련 제품(513)	16	협정배제	0	-
	12,243	총합계	8,831	-

2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공산품(임산물 포함)〉

● 전체 공산품(임산물 포함)의 98% 이상에 대해 16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공산품의 100%(9,985개), 파나마측은 공산품의 98%(6,996개)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파나마** 수입의 99.8%(5.3억불), 파나마측은 **對한국** 수입의 99.3%(3.9억불)에 대한 관세를 16년내로 철폐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파나마]				파나마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511	95.2	461,537,434	86.7	4,805	67.3	330,376,871	84.1
유관세	7,657	76.7	1,796,365	0.3	2,016	28.2	76,607,694	19.5
무관세	1,854	18.6	459,741,069	86.4	2,789	39.1	253,769,177	64.6
3년(B)	116	1.2	15,768,027	3.0	36	0.5	523,508	0.1
5년(C)	174	1.7	52,547,917	9.9	1,005	14.1	7,597,668	1.9
5년내 철폐	9,801	98.1	529,853,378	99.6	5,846	81.9	338,498,046	86.2
7년(D)	3	0.0	0	0.0	26	0.4	632,815	0.2
10년(E)	180	1.8	1,364,300	0.3	958	13.4	49,361,591	12.6
10년내 철폐	9,984	99.9	531,217,679	99.8	6,830	95.7	388,492,452	99.0
12년(F)	0	0.0	0	0.0	8	0.1	0	0.0
15년(G)	1	0.0	0	0.0	153	2.1	0	0.0
16년(H)	0	0.0	0	0.0	5	0.1	1,291,929	0.3
전체 자유화율	9,985	100.0	531,217,679	99.8	6,996	98.0	389,784,381	99.3
양허제외(X)	4	0.0	823,978	0.2	143	2.0	2,830,329	0.7
총합계	9,989	100.0	532,041,657	100.0	7,139	100.0	392,614,710	100.0

● 파나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주요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가구류 및 가전용 전자제품 10년내 철폐로 양허

* 파측 **對韓** 자동차 수입: 2억불('12~'14 평균)

- 섬유·의류 관련, 50류, 51류, 53류, 54류, 55류, 56류, 57류, 58류, 59류, 61류, 62류, 63류의 996개 품목 전체에 대해 즉시철폐

● 우리측은 예인선, 공기조절기 부분품 등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천연가스, 원유, 윤활유 등에 대해 10년내 철폐

* 우리 주요 對파나마 수입 품목인 컴퓨터용 화물선, 탱커 등은 기존 무관세

〈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파측 양허 [년]
1	화물선	0	381,293	0	자동차(승용차/기슬린/1,500cc 초과, 3,000cc 이하)	0	96,734	0
2	탱커(tanker)	0	42,656	0	자동차(승용차/기슬린/1,000cc 초과, 1,500cc 이하)	0	65,479	0
3	천연가스	3	30,782	5	기타철구조물	15	28,875	10
4	프로판	3	21,734	5	기타철구조물	10	27,695	0
5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19,537	0	자동차(승용차/기슬린/1,000cc 초과, 1,500cc 이하)	0	15,216	0
6	원유(섬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3	10,352	3	용융아연도강판	0	9,886	0
7	벙커시유	3	4,696	3	기타건설중장비	5	8,739	0
8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4,665	0	철및비합금강형강	0	7,242	0
9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4,077	0	철및비합금강H형강	0	7,024	0
10	냉동선	0	3,242	0	승용차용타이어	10	6,338	10
11	화객선	0	1,833	0	화물자동차(디젤)	0	5,633	0
12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0	1,460	0	엘리베이터	3	4,886	0
13	윤활유	7	1,217	10	중대형직류전동기	3	4,732	0
14	예인선	5	1,074	0	착색아연도강판	0	4,586	0
15	경유	3	823	양허 제외	유압식변압기	3	4,537	0
16	해체용 선박	0	550	0	버스및화물차용타이어	10	4,460	10
17	중유(벙커비유)	3	349	3	운반하역기계	3	4,135	0
18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8	268	3	자동차(승용차/기슬린/1,500cc 초과, 3,000cc 이하)	0	3,673	0
19	선박용 기관오일	7	134	10	책상	15	3,247	10
20	공기조절기 부분품	8	99	0	밸브	0	3,145	0
20대 수입 소계			530,848	20대 수출 소계			316,272	
공산품 수입 합계			532,041	공산품 수출 합계			392,614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공산품/임산물 포함) 〉

우리 양허		양허단계	파나마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화물선, 텐카, 고철,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화객선, 네동선, 하이브리드 직접화로, 액정모니터,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	1,854	즉시철폐 (유관세)	2,789	승용차, 융용아연도강판, I형강, H형강, 화물자동차, 척색아연도강판, 벌브, 유기계면활성제, 철근, U형강
에인선[5], 기타 섬유제품[8], 소가죽[3], 범선[8], 중고차[8], 펌프 및 압축기[8], 명반[5.5], 합성섬유[8], 윤활유[7], 원료용 고무제품[8]	7,657	즉시철폐 (유관세)	2,016	기타철구조물[10], 건설중장비[5], 엘리베이터[3], 중대형직류전동기[3], 유압식변압기[4], 운반하역기[3], 세탁기[15], 배전반[10], 통신용전선[10], CRT TV[5], 건조기[15]
원유[3], 냉커시유[3], 냉커비유[3], 천연섬유사[8], 고무제 가스켓[8], 내시경[8], 무수말레산[6.5], 의약품[0]스피린제제, 항히스타민제제 등)[8], 신발[선들][13]	116	3년 철폐	36	전구[10], 권선용전선[10], 선박용 부품[10], 분식시험기[5], 음향기기부품[10], 라디오[5], 측정공구[15], 전자레인지[10], 난방기기 부품[15], 기타 평판디스플레이[15], VCR[5]
천연가스[3], 프로판[3], 제재목[5], 기타 신발류[13], 로진[6.5]	174	5년 철폐	1,005	에어컨[10], 건축용목제품[15], 무계목강관[10], 초음파영상진단기[10], 공기조절기[10], 기타조명기기[10], 의료용전자기기[10], 기타기구[15], 카메라[5], 인쇄용지[10]
-	9,801	5년 철폐 소계	5,846	-
파티클보드[8], 원료용 목제품[8]	3	7년 철폐	26	회전의자[15], 자동차부품[방열기, 클러치 등][15], 핵판[10], 기타 세탁기[10], 모터사이클[15], 유모차[15], 트레일러[15]
윤활유[7], 섬유판[8], 휘발유[5]	180	10년 철폐	958	기타철구조물[15], 타이어[10], 책상[15], 철강제 용기[15], 냉장고[10], 플라스틱 깔개[5], 이너튜브[15], 문갑[15], 타일[10]
-	9,984	10년 철폐 소계	6,830	-
-	0	12년 철폐	8	엔진을 갖춘 새시[15], 차체[버스][15], 캠핑카[15]
황산암모늄[6.5]	1	15년 철폐	153	도로[6], 그림물감[6], 비누[15], 기타표면활성제[15], 프로필렌 중합체의 관[6], 기타종이제품[15]
-	0	16년 철폐	5	기타 축전지[15],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10], 기타 연산축전지[15], 축전지 부분품[3]
-	9,985	16년 철폐 소계	6,996	-
경유[3/5], 기타 석유제품(경유로 만든 것)[3]	4	양허제외	143	연산축전지[15], 알루미늄 케이블[10], 알루미늄 봉[10],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포장용기[10]
-	9,989	총합계	7,139	-

〈농산물〉

● 수입액 기준, 현재 교역 중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9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농산물의 68.7%(1,115개), 파나마측은 농산물의 80%(1,089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对파나마** 수입의 97.3%(80만불), 파나마측은 **对한국** 수입의 95.8%(1.5백만불)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농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对파나마]				파나마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275	16.9	543,281	66.1	483	35.5	42,902	2.7
유관세	180	11.1	530,035	64.4	167	12.3	119	0.0
무관세	95	5.9	13,246	1.6	316	23.2	42,783	2.7
3년(B)	41	2.5	0	0.0	10	0.7	0	0.0
5년(C)	182	11.2	555	0.1	140	10.3	2,665	0.2
5년내 철폐	498	30.7	543,835	66.1	633	46.5	45,567	2.8
7년(D)	17	1.0	256,132	31.1	1	0.1	0	0.0
10년(E)	142	8.7	74	0.0	237	17.4	451,390	28.2
10년내 철폐	657	40.5	800,041	97.3	871	64.0	496,957	31.0
12년(F)	329	20.3	0	0.0	0	0.0	0	0.0
15년(G)	95	5.9	0	0.0	215	15.8	52,390	3.3
16년(H)	32	2.0	0	0.0	3	0.2	986,378	61.6
19년(I)	2	0.1	0	0.0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1,115	68.7	800,041	97.3	1,089	80.0	1,535,724	95.8
양허제외(X)	492	30.3	22,467	2.7	272	20.0	66,656	4.2
협정배제(Y)	16	1.0	0	0.0	0	0.0	0	0.0
총합계	1,623	100.0	822,508	100.0	1,361	100.0	1,602,380	100.0

- 우리측은 커피(관세: 2~8%) 즉시철폐, 바나나(관세: 30%) 5년 철폐, 파인애플(관세: 30%) 7년 철폐 등 파나마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기존 FTA 양허수준(콜롬비아, 페루 등)을 고려하여 양허
- 우리측은 농산물 분야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및 관세 장기철폐(12~19년) 등 예외적 수단 확보

-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품목, 쇠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등 508개 품목 (품목수 비중 31.3%)

* 우리측 쌀 관련 품목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협정배제)

- (장기철폐) 뼈 없는 쇠고기 19년 철폐, 삼겹살 16년 철폐 등 458개 품목(품목수 비중 28.2%)

● **파나마는 알로에음료(관세: 10%)는 즉시철폐하고 혼합주스 및 기타 음료(관세: 10~15%)는 16년내 철폐로 개방하였으나,**

- * 혼합주스 및 음료 4개 세번의 파족 對韓 수입액은 1.3백만불로, 전체 對韓 농산물 수입액의 87% 차지
- * 22029090 세번은 알로에음료(즉철)와 기타 음료(16년)로 세번분리

- 쌀, 쇠고기, 낙농품 등 272개(품목수 비중 20%)는 양허제외하고, 고구마, 오렌지 주스 등 218개(품목수 비중 16%)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 (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파족 양허 (년)
1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2	529	0	혼합주스[기타]	10	533	16
2	파인애플[신선, 건조]	30	256	7	혼합주스[열대과일]	10	408	10
3	보조식료[기타]	50.6	22	양허 제외	기타 음료	10	381	16/ aloе 0
4	소와 마속 가죽	0	13	0	혼합주스[기타]	10	72	16
5	양서류	8	0	5	시료용 조제품	0	35	0
6	커피[볶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8	0	0	기타주스[열대과일]	10	30	15
7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8	0	5	분말상태의 미들	10	17	10
8	위스키류[스카치, 버번, 라이 이외 기타]	20	0	5	기타 음료	15	16	15
9	업권련	40	0	10	기타 비스킷	10	11	양허제외
10	커피[볶은 것/카페인 제거한 것]	8	0	0	탄산음료	10	9	양허제외
11	럼 및 태피아	20	0	0	요구르트	15	8	양허제외
12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제거한 것]	2	0	0	파인애플주스	10	8	양허제외
13	차, 마태등 조제품[기타]	40	0	10	간장	10	7	10
14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8	0	5	포도주스	10	5	10
15	어류용 배합사료	5	0	0	오렌지주스	10	5	15
16	커피의 각과 피	3	0	0	스위트비스킷[코코아 함유]	10	4	양허제외
-	-	-	-	-	스위트 비스킷[기타]	10	4	양허제외
-	-	-	-	-	기타 음료	10	4	양허제외
-	-	-	-	-	베어카리제품 제조용 혼합 물과 기루반죽	10	4	양허제외
-	-	-	-	-	복숭이주스	10	4	양허제외
20대 수입 소계			822	20대 수출 소계			1,574	
농산물 수입 합계			822	농산물 수출 합계			1,602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농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파나마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밀(농가사육용), 면양(번식용), 오리(번식용), 사탕무종자, 양파종자, 원두(건조/시료용), 양배추 종자, 토마토 종자, 기타 채소종자	95	즉시철폐 (무관세)	316	사료용 조제품, 기타 가공 곡물(보리), 음료 베이스, 고일주스(복숭이), 기타 소스, 기타 흥차, 밀(번식용), 소(번식용), 김재(종자용)
커피(볶지 않은 것)[2], 커피(볶은 것)[8], 럼 및 태피[40], 어류용 배합사료[5], 커피의 각과 피[3]	180	즉시철폐 (유관세)	167	전분박[15], 당나귀[15], 돼지[15], 기타 산동 물[15], 난류[5], 코코넛[15], 건포도[2], 피스 터치오[2], 호도[5], 인삼[5], 알로에음료[10]
코코아 분말[5], 코코아 버터[3], 밀가루[3], 메슬린(종자)[3], 옥수수기루[5], 호밀기루[5]	41	3년 철폐	10	옥수수에서 얻은 박류[15], 채두류에서 얻은 박류[10], 해바라기씨유 추출시 얻은 박류[15]
양서류[8],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8], 초콜렛[8], 위스키류[20], 바나나[30], 코코아두[8]	182	5년 철폐	140	포도주[15], 양고기[15], 난류[15], 기타육류[15], 모류[15], 풍[15], 수박[15], 배[5], 바나나(플랜틴/건조)[기타][15]
	498	5년 철폐 소계	633	-
파인애플[30], 파파야[30], 매니옥(냉동)[45], 젤, 제리마일레이드[30], 곡물 조제식료품[5.4], 과즙음료[9], 수프[18]	17	7년 철폐	1	바나나(플랜틴/신선)[15]
업권력[40], 차, 마태 조제품[40], 수박[45], 멜론[45], 코코아조제품[8], 과실조제품[40]	142	10년 철폐	237	열대과일 혼합주스[10], 마늘가루[10], 간장[10], 기타과일주스[10], 과일농축액[10], 맥주[15], 음료베이스[10], 수프[10]
	657	10년 철폐 소계	871	-
요구르트[36], 올리브(신선/냉장)[27], 감자(냉동)[27], 원두(건조)[27], 화훼류[8], 무화과(신선/건조)[30]	329	12년 철폐	0	-
조란(닭의 것)[27], 절화[25], 무(신선/냉장)[30], 샐러리(신선/냉장)[27], 원두(냉동)[27], 마요네즈[45]	95	15년 철폐	215	열대과일 농축주스[10], 기타음료(코코아 베이스)[15], 오렌지주스(냉동)[10], 고구마[15], 강낭콩[15]
망고(신선/건조)[30], 자당[30], 조제분유[36], 조제식료품(유아용)[40], 호박(신선/냉장)[27], 돼지고기(냉동/삼겹살)[25], 닭고기(조제/저장)[30]	32	16년 철폐	3	혼합주스[10], 기타음료[10]
쇠고기(뼈 없는 것)[40]	2	19년 철폐	0	-
	1,115	19년 철폐 소계	1,089	-
기타보조사료[50.6], 쇠고기(갈비 등)[40], 우유[36], 탈지분유[176], 치즈[36], 천연꿀[24.3%]	492	양허제외	272	기타 비스킷[10], 탄산음료[10], 요구르트[15], 파인애플주스[10], 스위트비스킷[10], 뺨제조용재료[10], 뼈 없는 쇠고기[30]
쌀(멥쌀, 챙쌀, 쇠미, 현미) 및 쌀 관련 제품[513]	16	협정배제	0	-
	1,623	총합계	1,361	-

〈수산물〉

● 파나마가 우리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양허

- 품목수 기준, 우리측은 수산물의 96.2%(607개), 파나마측은 수산물의 100% (331개)에 대한 관세를 19년내로 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對파나마** 수입의 30.6%(81만불), 파나마측은 **對한국** 수입 100%(6백불)에 대한 관세를 15년내로 철폐

〈 수산물 양허수준 〉

양허 유형	우리 양허 [對파나마]				파나마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USD) '12~'14 평균	비중(%)
즉철(A)	9	1.4	0	0.0	62	18.7	221	35.4
유관세	2	0.3	0	0.0	40	12.1	221	35.4
무관세	7	1.1	0	0.0	22	6.6	0	0.0
3년(B)	15	2.4	0	0.0	1	0.3	0	0.0
5년(C)	252	39.9	0	0.0	258	77.9	402	64.6
5년내 철폐	276	43.7	0	0.0	321	97.0	623	100.0
7년(D)	111	17.6	40	0.0	0	0.0	0	0.0
10년(E)	86	13.6	21,286	0.8	6	1.8	0	0.0
10년내 철폐	473	75.0	21,327	0.8	327	98.8	623	100.0
12년(F)	106	16.8	0	0.0	0	0.0	0	0.0
15년(G)	27	4.3	0	0.0	4	1.2	0	0.0
19년(I)+TRQ	1	0.2	791,022	29.8	0	0.0	0	0.0
전체 자유화율	607	96.2	812,349	30.6	331	100.0	623	100.0
양허제외(X)	24	3.8	1,843,554	69.4	0	0.0	0	0.0
총합계	631	100.0	2,655,903	100.0	331	100.0	623	100.0

● 우리측은 고등어, 갈치, 민어, 멸치 등 24개 품목 양허제외

- 문어 15년 철폐, 냉동새우 19년 철폐와 저율 관세할당(물량 200톤) 등 134개 품목의 관세는 장기철폐(12~19년)하여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
- **파나마는 김 (관세: 15%) 등 수입액 기준 35.4%를 즉시철폐하고, 굴(관세: 10%) 등 수입액 기준 100%를 5년내 철폐**

〈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품목(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우리 양허(년)	품목(HS 8단위)	관세율 (%)	수입액(천불) 12-14 평균	파족 양허(년)
1	계산갓, 산선, 냉장/기타)	20	1,207	양허 제외	굴[조제 또는 저장처리]	10	0	5
2	기타새우(냉동한 것)[훈제한 것 외 기타]	20	791	19+ TRQ	김	15	0	0
3	대게(냉동하지 않은 것)	20	612	양허 제외	조개류[조제 또는 저장처리]	10	0	5
4	기타어류(냉동)	10	21	10	-	-	-	-
5	굴[조제·저장처리][일폐용기에 넣은 것]	20	20	양허 제외	-	-	-	-
5대 수입 소계		-	2,652	-	5대 수출 소계	-	0	-
수산물 수입 합계		-	2,655	-	수산물 수출 합계	-	0	-

〈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수산물) 〉

우리 양허		양허단계	파나마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둠[양식용 치어], 농이[양식용 치어], 굴치때[종때용], 조개류[종때용], 우렁쉥이]	7	즉시철폐(무관세)	22	참치[신선/냉장], 건조대구, 냉수성 새우[산 것/신선/냉장], 정어리[조제/저장], 참치[조제/저장]
새우살 및 새우[냉수성/냉동/기타](20)	2	즉시철폐(유관세)	40	김(15), 참치[활어](15), 기타 새우류(15), 연어[조제/저장](15)
틸리피아[냉동](10), 닭새우[냉동/훈제](20), 새우살[냉수성/훈제](20), 기타새우[냉동/훈제](20), 새우[조제저장](20)	15	3년 철폐	1	고등어[조제/저장](5)
생선류(20), 생선페이스트(20), 생선 소시지(20), 새우[조제/기타](20)	252	5년 철폐	258	굴[조제/저장](10), 조개[조제/저장](10), 어육(15), 계[훈제/기타](15), 닭새우류(15)
	276	5년 철폐 소계	321	-
참치[신선/냉장](20), 참치[냉동](10), 볶어[냉동](10), 냉동 파레트(10), 꽁치[조제/저장](20), 미역[냉동](45)	111	7년 철폐	0	-
기타어류[냉동](10), 조개[냉동](10), 기타 새우살[냉동/기타](20), 새우[냉수성/간조](20), 기타새우산 것[신선/냉장](20)	86	10년 철폐	6	소금[수염화나트륨](15), 수산부산물(10/15), 기타 수산기공품(15)
	473	10년 철폐 소계	327	-
민어[활어](10), 넙치[활어](10), 미역[건조](20), 소라(20), 낙지[냉동](20), 흉합[냉동](20)	106	12년 철폐	0	-
계설[냉동/훈제](20), 문어[냉동](20), 닭새우[훈제](20), 꽂개[냉동](14), 꽁치[냉동](28)	27	15년 철폐	4	소금[바닷물](15), 식탁염(81)
기타 새우[냉동](20)	1	19년 철폐+TRQ	0	-
	607	19년 철폐 소계	331	-
계산 것[신선/냉장](20), 가오리[냉동](10), 고등어[냉동](10), 갈치[냉동](10), 민어[냉동](28), 조미오징어(20), 명태[냉동](22)	24	양허제외	0	-
	631	총합계	331	-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개요

- (원산지 규정)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품목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
 - 원산지 일반기준으로는 (i) 완전생산 기준, (ii) 실질적 변형기준으로서 세변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 그 외 사용된 세변변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미소량(10%) 포함 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는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및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누적기준 등 포함
 -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는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하여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 최종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
- (역외가공지역) 향후 역외가공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 요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역외가공위원회(OPZ위원회)를 설치
- (원산지 절차)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 검증 등을 규정
 - (원산지 증명)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는 자율증명방식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에 한해 작성 가능(상세내용 참조)
 - (특혜관세 신청) 특혜관세 신청자는 원산지 증명서류,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검증) 수입국의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서면검증, 수출국에 의한 대행검증, 수입국 방문검증을 규정

상세내용

1 원산지 기준 (제3.1조)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기준으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규정

-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당사국에서 원산지 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2 완전생산 상품 (제3.2조)

● 다음의 경우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인정

-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및 이로부터 획득한 상품
-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뒷사냥을 통해 획득한 상품,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양식 또는 어로로 획득한 상품
-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상품
-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이러한 상품만을 사용하여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가공된 상품
- 당사국 영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당사국의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해 취득 또는 추출된 상품
 -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

-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人)에 의해 획득되어야 함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 공정에서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수집된 중고품에서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다만,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함

3 역내부가가치(RVC) 계산방법 (제3.3조)

-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계산방식으로 집적법(Build-up) 또는 공제법(Build-down)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제법(Build-down):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제외하여 계산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집적법(Build-up): 원산지 재료가치를 누적하여 계산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4 중간재 (제3.4조)

- 중간재에 비원산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최종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최종상품의 원산지 지위 판정시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

5 불인정 공정 (제3.5조)

-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단순·경미한 공정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상품의 운송·보관을 위한 보존 공정, 포장의 변경 및 해체, 직물의 다림질, 곡물 및 쌀의 탈각, 도축 등이 불인정 공정에 포함

6 누적 (제3.6조)

- FTA로 인한 시장 통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국에서 최종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최종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향후 양 당사국은 유사누적(양 당사국이 모두 무역협정을 체결한 비당사국과의 원산지 누적)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

7 최소허용수준(미소기준) (제3.7조)

-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 상품가치의 10% 이하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만약, 제1류-제14류(신선농수산물)에는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지 않음
 - 제15류-제24류(가공식품)에는 비원산지재료가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규정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허용수준 적용
 -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에 대해서는 중량기준 적용
 - 필요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8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제3.8조)

- 대체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

*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제3.28조 정의)

9 간접재료 (제3.13조)

- 연료, 공구, 예비부품, 윤활제 등과 같이 상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시 고려되지 않음

10 직접 운송 (제3.14조)

●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 다만,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있고,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

11 역외가공 (제3.15조 및 부속서 3-나)

● 향후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범위 및 생산품의 원산지 요건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

12 품목별원산지기준(PSR) (부속서 3-가)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및 교역 구조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화학제품)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되,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화학공정 규칙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에 합의
-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일부 철강제품은 부가가치 기준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자동차) 완성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충족시 원산지를 인정하고,
 - 자동차 부품·세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0%, 차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45%를 선택기준으로 도입
-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고 부가가치기준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
 - ※ 가습기, 제습기, 가정용 진공청소기 : CTSH 또는 RVC 30%(집적법) 또는 40%(공제법)
 - ※ 차량용 엔진(가솔린, 디젤) : CTH 또는 RVC35%(집적법) 또는 45%(공제법)

- (섬유·의류) 대부분 원사기준으로 설정하되, 중미 4개국(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원사 및 원단 사용을 허용
 - ※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 원사직물(50류~60류)은 원화된 원사기준, 완성의류(61류~63류)는 재단봉제 기준(CC), 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5504)·사(5403, 5405)는 원사기준 예외로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
 - ※ 엘살바도르 : 완성의류를 포함하여 섬유·의류(50류~63류) 품목 대부분 원사기준 적용
- (농축수산물) 대체로 신선농수산물을 엄격한 기준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가공농수산물은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 신선농수산물(01류~14류) : 대부분 원전생산기준(WO) 중심
(예: 육류, 어패류, 낙농품, 채소, 과일, 곡물, 채유용 종자 등)
 - ※ 가공식품(15류~24류) :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 CTH) 중심
(예: 식용유, 소시지, 참치통조림, 식초, 잼, 음료, 발효주, 담배 등)

13 원산지 증명 (제3.17조)

● 수출자, 생산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자율증명방식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의 작성이 가능함
 - 상품이 원산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수출자의 인지
 - 상품이 원산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생산자 서면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 생산자가 작성·서명한 원산지 증명을 자발적으로 수출자에게 제공

14 특혜관세 신청 (제3.20조)

● 특혜관세는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신청자는 신청시 원산지 증명을 보유해야 함
- 신청자는 신청시 직접운송 증명서류를 보유해야 함
- 세관 요청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15 특혜관세 사후신청 (제3.21조)

● 수입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 사후신청시 신청서, 원산지 증명,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6 자료보관 의무 (제3.22조)

● 상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증빙서류(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들의 구입내역 등)를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증명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 수입자의 보관기간은 각국 국내법이 규정(우리는 5년)

17 원산지 검증 (제3.24조)

●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서면검증, 수출국에 의한 대행검증, 수입국 방문검증을 규정

- 서면검증시 자료 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요청 후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함
 - 30일 이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
 - 경고 후 30일 경과시 특혜관세 배제 가능
- 수입국 방문검증시 수입국은 검증시행 30일 전 이를 수출자·생산자·수출국 관세 당국에 통지하고 수출자·생산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수출자·생산자가 30일 이내 허가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 가능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4. 통관 및 무역원활화

개요

본 챕터는 사전심사, 특송화물, 관세위원회 등을 규정

- (사전심사) 수입자·수출자·생산자(대리인도 가능)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충족여부로 규정
- (특송화물) 일반적인 경우, 상품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하고 150불 이하 수입시 관세 면제
- (관세위원회) 원산지·통관 모두의 이행을 다루며 이행관련 이슈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가 이를 결정

상세내용

1 신속통관 (제4.2조)

각국은 통관과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관세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간 이내, 그리고 가능한 한 상품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통관을 허용
- 부과할 관세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수입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상품의 통관을 허용

2 비밀유지 (제4.7조)

각국은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득한 경우 이를 비밀로 보호해야 하며,

- 법집행,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밀로 지정된 정보라도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함

3 특송화물 (제4.8조)

● 각국은 특송화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함

- 도착 전 수속을 위해 관련정보의 전자적 제출 가능
- 가능한 한 최소의 서류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조치
-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품 도착 및 필요서류 제출 후 6시간 이내 통관을 허용
- 150불 이하 수입시 관세의 면제를 허용

4 사전심사 (제4.11조)

● 수입자·수출자·생산자(대리인도 가능)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충족여부로 규정

- 각국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발급
- 신청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심사결과의 소급무효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

5 관세위원회 (제4.13조)

● 원산지·통관 모두의 이행을 다루며 이행관련 이슈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나 안될 경우 공동위원회가 이를 결정

- 원산지, 통관 챕터의 해석 이슈 및 조문의 수정, 변경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건의 가능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개요

- WTO SPS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의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
 - 상호 이해 증진, 역량 강화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한 협력 모색
 - 동 챕터의 이행을 점검하고 정보교환 등의 협력을 증진하며, SPS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 양측 간 SPS 관련 분쟁은 FTA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5.2조)

- 양국 간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SPS 조치의 채택 및 이행에 적용

2 권리와 의무 (제5.3조)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물보호협약 및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국제기준을 고려하며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

3 협력 (제5.4조)

- WTO SPS 협정의 이행, SPS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및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협력 활동의 개발·증진 등에 노력
 - SPS 권한당국 중 일부도 상대국의 관련당국과 협력활동 가능

● 협력 활동 사례

- 국제표준과 국내 SPS조치의 개발·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 위험분석, 동·식물 질병·병해충 관리, 실험실 시험 기술 등 협력 강화
- 양국의 WTO SPS 문의처간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
- 동물 질병, 식물 병해충 및 식품안전 등에서의 공동 연구 및 그 결과 공유

4 정보교환 (제5.5조)

- 양국의 SPS 관련 정보·설명을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소통
 - 수입국의 SPS 요건에 부적합하여 수입이 거부된 경우, 관련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상호 교환
 - 위험분석 절차 관련 설명이나 수출국이 요청한 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국 상품의 수입이 허용된 경우 행정적·법적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

5 SPS위원회 (제5.6조)

● 동 챕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행을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세칙 설정 가능
- SPS 사안에 권한이 있는 양국의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 주기로 회합하되, 대면회의가 아닌 기술적 수단을 활용한 회합도 가능
- 위원회 회의 조율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접촉선 지정

● 위원회의 기능

- 동 챕터의 이행을 점검

- SPS조치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및 각종 정보 교환
- SPS조치에 권한이 있는 양국의 당국들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 제4조에 따른 협력 등 SPS 관련 협력활동의 조정
- WTO SPS위원회, OIE, IPPC, Codex 등 국제회의에서의 입장 및 의제에 대한 논의
- 양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에 대하여 협의하고, 필요시에는 부속작업반 설치를 고려
- 양국이 합의한 기타 기능 수행

6 분쟁해결 (제5.7조)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SPS 관련 분쟁은 동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개요

- TBT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TBT) 수준 이상 및 포괄적으로 규정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투명성 등 총 13개조로 구성
 - TBT 위원회 설치 및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의견수렴기간 명시 등 규제조치 수립 및 이행의 투명성을 강화

상세내용

1 국제표준 (제6.5조)

-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활용

2 기술규정 (제6.6조)

- 상대국의 기술규정 동등성 인정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
- 상대국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불인정하는 경우, 상대국 요청에 따라 불인정 사유를 설명

3 적합성평가절차 (제6.7조)

- 상대국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상이하더라도 동등성이 보장될 경우,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수용

- 상대국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협상 요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상호인정협정(MRA)을 이행하도록 노력

4 투명성 (제6.8조)

- 기술규정 채택과 시행시기 간에 합리적인 기간(통상 6개월 이상)허용 및 기술 규정 등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 최소 60일 허용

- 상대국 요청시 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의 채택 목적 및 이유 관련 정보 제공
-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등을 즉시 공개하거나, 상대국 및 상대국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
- 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대한 상대국 코멘트를 고려하고, 상대국 요청시 코멘트에 회신토록 노력
- 기술규정 채택 이후, 시행시기 연장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5 공동협력 (제6.9조)

-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하여 무역 촉진화 사업을 발굴 및 개발
- 상대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협력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

6 마킹 및 라벨링 (제6.10조)

- 기술규정이 의무적 마킹 또는 라벨링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함

7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제6.11조)

- 통관이 억류된 제품(시험샘플 포함)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상대국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 즉시 통보

-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권한당국에 의해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가 수행되도록 보장

8 TBT 위원회 (제6.12조)

-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해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대국 요청에 의해 회합

-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채택시 발생되는 이슈 처리, 협력 증진을 위한 우선분야 발굴 및 TBT 관련 정보교환 등 역할

9 정보교환 (제6.13조)

- 상대국 정보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 정보(설명)를 제공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무역구제

개요

-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미 FTA 양허로 인한 국내 기업의 심각한 피해 방지 및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 방지 조항을 통한 수출 기업 보호
- 통보 및 협의 조항을 통한 무역구제조치 절차 투명성 제고와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로 국내 산업 보호 노력

상세내용

1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제7.1조 및 제7.2조)

- 한·중미 FTA에서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요건, 조치 내용, 기타 조건 및 제한 등을 규정

- 적용 요건

- 한·중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실질적 원인일 경우

- 조치 내용

- 관세율 추가 인하 정지, 또는
- 관세율 인상

※ 단, 조치 적용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발효일 직전일의 MFN 실행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 기타 조건 및 제한

- 조사 개시 서면 통지 및 세이프가드 조치 전 가능한 조속히 협의
- 심각한 피해의 방지·구제 및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 적용, 조사개시 후 1년 내에 종결

- ③ 발동기간은 2년으로서 2년 연장이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과도기간* 내 적용
- ④ 기 조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 조치 기간 동안 재적용 금지(최소 2년)
- ⑤ 예상 조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점진적 자유화 실시

* 과도기간 : 협정 발효 후 10년, 다만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에 3년을 더한 기간

2 잠정조치 (제7.3조)

-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중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증가된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를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당국이 예비 판정시, 조치의 잠정적 적용이 가능

3 보상 (제7.4조)

-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를 제공하며,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 제공
- 협의 후 30일 내 보상 미합의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허적용 정지 30일 전 상대국에 통지

4 절차 규정 (제7.5조)

-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에 있어 협정상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부합하는 국내 절차 규정 적용 가능

5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제7.6조)

- WTO상 다자 세이프가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상대국 요청시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되, 양·다자 세이프가드 동시 발동을 금지

6 반덤핑/상계관세 일반규정 (제7.7조)

- WTO 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 공개 및 이해당사자를 위한 청문기회 부여

7 반덤핑/상계관세 통지 및 협의 (제7.8조)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전 상대국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관련 협의 기회를 부여

8 반덤핑/상계관세 가격 약속 (제7.9조)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예비긍정 판결 후 가격 약속* 제안이 있을 경우 수입국의 조사 당국은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당사국 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 가격 약속 : 수출자의 가격 인상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9 최소부과 원칙 (제7.10조)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결정시, 그 관세액은 덤팡 또는 상계기능보조금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결정

●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마진 미만이 되는 것이 바람직

10 공공이익의 고려 및 공청회 (제7.11조 및 제7.12조)

-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전 공공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 요청이 있는 경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동안 청문회 개최 여부를 고려

11 재심 종료 후 조사 (제7.13조)

- 양국은 재심의 결과로 12개월 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신청에 대해 주의를 갖고 검토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8. 정부조달

개요

- 정부조달 시장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미가입국인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

※ 중미 6개국은 모두 WTO GPA 미가입국이며,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는 옵서버 국가

WTO GPA

- 정부조달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WTO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으로 우루과이 라운드(1994)에서 여타 WTO 협정과 함께 서명되어 1996.1.1. 발효
- 1997년부터 WTO GPA 개정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2014년에 WTO 개정 GPA 발효
- 현재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46개국이 가입(우리는 1997.1.1. 발효, 개정GPA는 2016.1.14. 발효)하였으며, 중미 국가들은 미가입
- 동 협정 가입국은 부속서의 자국 양허표에 개방범위(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 등)를 기재하고,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등 협정상 의무 부담

- 정부조달 일반원칙 및 절차 등의 협정문은 WTO 개정 GPA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 GPA 미가입국인 중미 5개국도 정부조달 절차 진행시 우리 기업에 대해 GPA 가입국 수준의 의무 부담

- 협정 적용대상 조달(covered procurement)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대우, 전자적 수단의 사용, 대응구매(offset) 금지 등의 정부조달 일반원칙(제 8.4조)이 적용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8.2조 및 부속서 8-가)

- 조달기관(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이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리스·임차 등의 계약을 통해 양허하한선(threshold) 이상의 금액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적용
-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의 민자사업을 적용대상 조달에 포함시켜, 일반 정부 조달에 적용되는 절차와 예외, 부속서상 양허기관 및 양허하한선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민자사업 개방

※ 민자사업 :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신항만 건설 등이 대표적인 예

※ 국내 민자사업 시장은 현재 국내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등 모든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개방되어 있음

2 협정적용 예외 (제8.3조 및 부속서 8-가)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 등은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WTO GPA 및 기체결 FTA 우리 양허표상의 예외를 유지(부속서 8-가 제1절)
- 정부조달의 민감성 및 국가정책 수행 측면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공공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부분은 협정적용의 예외를 인정(제8.3조)
- 학교급식 예외 조항을 포함,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농수산물 우선 구매가 가능(부속서 8-가 제7절)

3 참가조건 (제8.7조)

- 조달기관은 공급자의 입찰 참가조건 평가시, 조달 당사국 내에서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조달 당사국 밖에서의 영업활동을 기초로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평가

- 조달 참가 또는 계약 낙찰의 조건으로 조달 당사국내에서의 낙찰 실적이나 사전 작업 경험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4 미소 및 중소기업의 참여 (제8.17조)

-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MSMEs)의 정부조달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개발을 위한 조달 정책에 대해서 고려

5 협력 및 기술지원 (제8.18조)

- 정부조달 관련 협력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확인하고, 조달 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지식 및 기술이전 협력을 위해서 노력

6 정정 및 수정 (제8.19조)

- 양허기관을 수정하는 경우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당사국은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 제시 필요
 - 양허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조정)을 검토

7 정부조달 위원회 (제8.20조)

- 협정상 의무 이행 평가 및 기타 양국간 협력 등을 위해 정부조달 위원회 (Committee on Government Procurement) 설치

8 정부조달 시장 개방 (부속서 8-가)

- 우리는 WTO 개정GPA 현행 양허를 바탕으로 개방,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도 우리와 동등한 수준에서 양허하한선과 대상기관을 설정하여 개방
 - (양허하한선) 중앙정부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13만 SDR*, 건설 서비스는 5백만 SDR이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도 대부분 같은 수준으로 양허

* SDR :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1SDR=약 1.14USD

- 단, 온두라스 중앙정부기관의 건설서비스는 1천만 SDR이며 나카라과는 지방정부 미양허
 - (상품 및 서비스) 우리는 WTO 개정GPA 수준으로, 중미는 중미-EU FTA 기체결 수준으로 개방
 - (민자사업, BOT) 우리는 WTO 개정GPA 수준으로, 중미 국가 중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개방
- ※ BOT(Build-Operate-Transfer) : 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충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

〈한·중미 FTA 정부조달 양허 비교(부속서 8-가)〉

[단위 : SDR]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공공기관
		우리측	중미측	
상품	13만	(A)20만/ (B)40만 ^[2]	35.5만/40만 ^[3]	40만
서비스	13만	(A)20만/ (B)40만 ^[2]	35.5만/40만 ^[3]	40만
건설서비스	5백만 ^[1]	15백만	15백만 ^[4]	15백만

1) 온두라스 건설서비스 : 10백만 SDR

2) A그룹 : 광역지방자치단체, B그룹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3) 40만 : 파나마, 35.5만 : 코스타리카, 엘살비도르, 과테말라

4) 나카라과는 지방정부 미양허

〈WTO GPA 및 기체결 FTA, 한·중미 FTA 우리 양허 비교〉

[단위 : SDR]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공공기관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구GPA	13만	13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5만	미양허	15백만
개정GPA	13만	13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0만	40만	15백만
한-칠레	5만	5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5만	미양허	15백만
한-싱가포르	10만	10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5만	미양허	15백만
한-EU	13만	13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0만	40만	15백만
한-페루	9.5만	9.5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0만	40만	15백만
한-미국	1억원 ^[1]	1억원 ^[1]	5백만	미양허					
한-호주	13만	13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5만	미양허	15백만
한-콜롬비아	7만	7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0만	40만	15백만
한-중미	13만	13만	5백만	20만	20만	15백만	40만	40만	15백만

1) 한·미 FTA의 경우, 중앙정부기관 상품·서비스 양허하한선을 미국은 10만 USD, 우리는 1억원(KRW)으로 설정

9. 투자

개요

● 투자 챕터는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본문 내용과 관련 부속서로 구성

- 본문에서는 ①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투자 유치국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대우*와 ②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CS) 등을 규정
- ※ 내국민대우(NT) 및 최혜국대우(MFN) 부여, 투자 관련 이행 요건(PR) 부과 금지, 고위 경영진(SMBD)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 최소기준대우, 손실 또는 수용시 보상, 송금 보장 등
- 부속서에서는 국제관습법, 수용 부속서(간접수용에 대한 판단 법리) 등을 규정

상세내용

1 적용 범위 (제9.1조)

● 상대국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와 관련된 조치가 대상이며 협정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 및 행위, 발효 이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소급효 배제)

※ 당사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도 포함

2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9.3조)

-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자국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9.4조)

-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게 동종의 상황(like circumstances)에서 제3국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CS)에는 MFN대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함

●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제9.5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
-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 심판 절차상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 수용 및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제9.7조)

- 수용은 1)공공목적을 위해 2)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적법절차와 협정상 최소기준 대우에 따라서만 가능
 - 단, 수용시에도 신속·적절·효과적으로 수용 직전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상이 필요
-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간접수용 판단법리는 수용 부속서에서 규정)
 - ※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할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 송금(Transfer) (제9.8조)

-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 단,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 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 ※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송금부속서에 규정)

●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제9.9조)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관하여 7가지 특정 이행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되, 일정 수준의 수출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가능
- ※ 일정 수준 또는 일정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수출 및 국내 재료 사용 달성, 국내상품 사용, 수출과 수입간의 연계, 수출과 판매간의 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으로의 독점 공급 등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국적 제한 금지 요건 (제9.10조)

- 외국투자기업의 고위경영진에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외국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국적요건은 부과 가능하나 그러한 요건이 외국인 투자자의 해당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materially impair)해서는 안 됨

3 챕터상 예외 조치

● 혜택의 부인(Denial of Benefits) (제9.12조)

- ① 제3국인이 소유한 타당사국의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②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이른바 paper company)에는 협정상 혜택 부인이 가능함을 규정

●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 (제9.13조)

- 4대 의무(NT, MFN, PR, SMBD)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서상 유보목록에 명시
 - ※ 서비스·투자 유보목록은 공통으로 작성, 협정의 부속서로 포함
- 현재유보(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은 협정조치로 래치이 적용)와 미래유보(향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현재의 비합치 조치 또는 새로운 제한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 분야 나열)로 구성

4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S)

● ISDS 적용범위 (제9.17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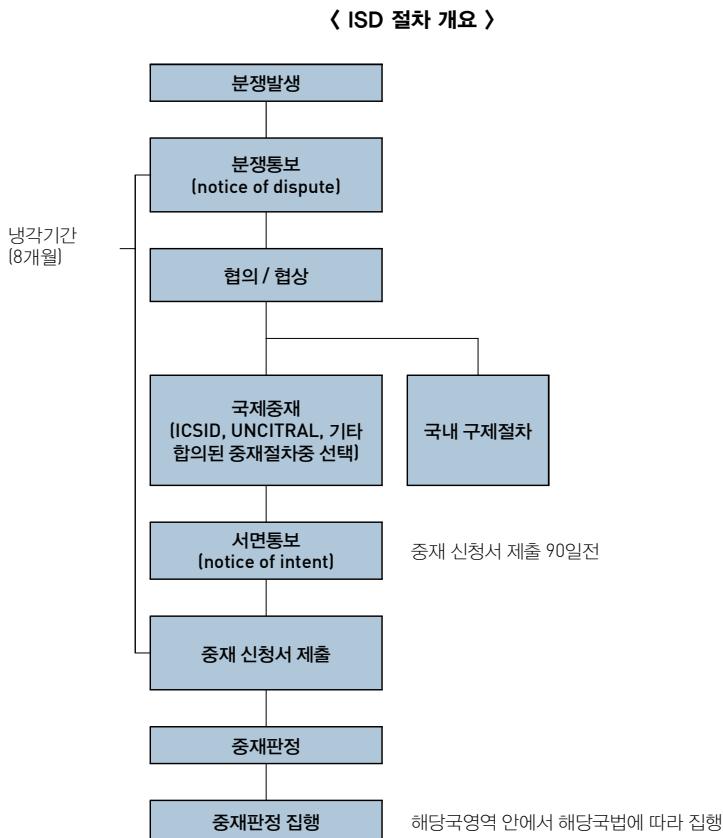
-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1절(Section A)상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기 가능
 - ※ 단, 다른 장과의 관계(제9.2조), 투자와 환경(제9.11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제9.14조 제1항)은 ISDS 제기 대상에서 제외 (제9.17조제2항)
 - ※ 금융서비스챕터(제11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ISDS 제기 대상 조항을 별도로 규정 (제11.1조제2항)

● 중재 판정부 구성 (제9.20조)

- 중재투자자와 피청구국 정부가 각각 지명한 1인과 분쟁당사자들이 합의로 선임한 1인(의장중재인) 등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Tribunal)에서 심리

●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절차 (제9.17조제4항)

- ICSID, ICSID 추가 절차규칙, UNCITRAL, 그 외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제3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을 이용
 - ※ ICS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 기구로서 회원국(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제공
 - ※ ICSID 추가절차규칙: 양국 중 일방이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 규칙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 가능
 - ※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국제무역 법위원회):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배조치로 투자자(또는 투자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 신청 불가

● 제소의 주체 (제9.17조제1항)

- ① 외국인투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해 직접 중재 청구하거나, ② 투자기업을 소유, 통제하는 외국인투자가 기업을 대리하여 중재 청구 가능

● 중재의 병합 (제9.26조)

-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 투자가 별개의 ISD를 청구한 경우, 정부는 그러한 중재사건을 병합하도록 신청 가능

● 국제중재와 국내제소 절차간 관계 (제9.17조제4항)

-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상대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ISD에 의거하여 국제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바, 일단 하나의 절차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이용 불가능

● 종재절차의 투명성 (제9.22조)

- 중재심리 및 제출 서류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하되, 비밀정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되도록 규정

● 제3자(외부조언자: *amicus curiae*) 의견 제출 (제9.21조제3항)

-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와 협의후 시민단체 등 제3자(*amicus curiae*) 의견제출 허용 가능

● 준거법 (제9.23조)

- 본 FTA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

● 국제중재판정의 효력 (제9.27조)

-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가능한 이자 및 원상회복의 복구만으로 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은 불가

5 정의 (제9.29조)

● 투자(*investment*)

- 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며, 자본 또는 기타 자원의 투입,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

※ 시장점유율, 시장접근권, 기대이익, 이윤창출 기회는 그 자체로서 투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각주 추가

● 투자자(*investor*)

- 일방의 국가, 공기업, 국민 또는 기업이 상대국 국가의 영토내에서 투자를 실행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거나, 이미 한 경우를 의미

- 이중국적자는 지배적이고 유효한(dominant and effective)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

6 부속서

● 수용부속서 (부속서 9-다)

- 간접수용 여부의 판단은 ①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 ② 정부행위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자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정도, ③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 상기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복지를 위한 비차별적이고 정당한 정부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
- 간접수용 판단기준 중 정부조치의 성격 관련, 우리 법제상 '특별희생' 법리를 추가

● 조세 및 수용 부속서 (부속서 9-마)

-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외부조언자(amicus curiae) 부속서 (부속서 9-사)

- 외부조언자가 의견 제출시, 사업장소나 주소, 활동의 성격, 분쟁당사자와의 직간접적인 관계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0. 국경간 서비스 무역

개요

- 동 협정은 양국간 국경간 서비스 무역(cross-border trade in services)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
 - 단,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관련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관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등은 제외
 - ※ 금융 서비스, 정부조달은 별도 챕터에서 논의
- 협정문상의 주요 의무로는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조치 도입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가 있으며, 그 외 투명성 제고, 자격상호인정, 지불 및 송금 등을 규율

상세내용

1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제10.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최혜국대우 (MFN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10.3조)
 - 동종의 상황에서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시장접근 (MA : Market Access) 제한 조치 금지 (제10.4조)
 - ① 서비스 공급자의 수, ②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③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 ④ 고용인의 총 수, ⑤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 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❶ 현지주재 (LP : Local Presence) 의무 부과 금지 (제10.5조)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혹은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❷ 비합치 조치 (NCM : Non-Conforming Measures) (제10.6조)

- 상기 4대 의무(NT, MFN, MA, LP)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시
※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는 4대 의무가 모두 적용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임
- 현재유보(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은 혼존조치로 래치이 적용)와 미래유보(향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현재의 비합치 조치 또는 새로운 제한조치가 도입될 수 있는 분야 나열)로 구성

❸ 국내 규제 (제10.7조)

-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청에 대해,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할 의무 (미래유보(Annex II)의 유보사항은 제외)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할 의무
-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 따른 국내규제 관련 협상이 타결·발효시 관련 규정의 보완을 위해 공동으로 검토

❹ 투명성 (제10.8조)

- 서비스 관련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유지할 의무

4 자격상호인정 (제10.9조)

-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고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타 당사국에게도 상호인정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

5 송금 및 지불의 자유 (제10.10조)

- 국경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고 자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

- 단, 다음의 사유와 관련한 경우에는 지불이나 송금을 금지 또는 연기할 수 있음
 - ①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② 유기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및 취급, ③ 법 집행이나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의 기록 또는 보고, ④ 형사범죄, 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준수를 보장

6 혜택의 부인 (제10.11조)

- ① 제3국인이 소유한 타당사국의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 ②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이른바 paper company)에는 협정상 혜택 부인이 가능함을 규정

서비스·투자 통합 유보(부속서 I,II)

1 개요

-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투자 챕터와 국경간 서비스 무역 챕터의 주요 의무*에 위배되는 현존 및 미래의 비합치조치를 부속서에 유보 목록으로 명시함으로써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투자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SMBD) 국적요건 부과 금지 등 4개 의무

* 서비스 :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시장접근(MA) 제한 금지, 현지주재(LP) 의무 부과 금지 등 4개 의무

☞ 여타 의무는 유보대상이 아님

Negative 방식의 유보 종류

①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협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자유화 이전 방향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예] 외국인투자 협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울러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② **미래유보(Annex II)** : 현존 비합치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그러나, 상기 4대 의무와 무관한 비차별적인 규제(예 : 면허·허가·인가 요건 등)는 서비스 챕터의 「국내규제」 조항에 의거, 국내정책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유지·신설·개정 가능

● **중미 국가는 중미-멕시코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보장**

- 중미 국가의 WTO GATS 시방 개방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중미 국가간 시장개방에 큰 불균형이 있었으나 동 협정으로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상호간 균형을 확보
- 특히, 중미 국가는 우리측 관심 분야에 대한 건설·유통·통신·엔터테인먼트 분야 시장 개방을 상당부분 확대함

● **우리는 한·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공공정책 목적상 정부 권한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 자율권을 확보**

2 우리나라의 주요 유보 내용

●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가능**

- 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및 이행 요건 부과 금지 의무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 공교육(유·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전기·가스·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고등교육(대학교), 성인교육은 현행 법령 수준으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 가능함을 확인
- 전기·가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및 산업환경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 수준을 유보

● 방송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관련 사항을 미래유보에 규정하여 자율적 규제 권한을 확보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 유지하고,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발효 후 2년내)
 - ※ 핵심 통신망을 보유한 KT, 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미 국가 중 엘살바도르에는 간접투자 추가 개방이 적용되지 않음

● 국내 전문직서비스(법무, 회계, 세무)에 대한 시장개방

- 법률 서비스는 한-아세안/페루/뉴질랜드 FTA에서와 같이 2단계로 개방(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업무협력을 허용)*하였으며, 회계 및 세무 서비스는 국내 자격 취득자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는 현행법령으로 개방
 - ※ 한-콜롬비아/호주/미국 등 FTA에서는 법률시장을 3단계(국내로펌과 합작법무법인 설립 및 합작법무법인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로 개방

●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

-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 정기간행물의 출판·유통 서비스

-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하고 신문을 제외한 여타 정 기간행물의 경우 ① 외국정부 및 외국인, ②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기업, ③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중미 국가 내에서 편집된 원어(스페인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국내의 지사·지국이 이를 인쇄·배포할 수 있음을 명시

● 육상운송

-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 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

-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에도 동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 과잉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 확보

●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 및 저장·창고 서비스

- 농·축산물의 국내 민감성을 반영하여 위탁증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농축산물, 식음료에 대해 미래유보하고, 도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인삼 및 비료에 대해,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쌀, 인삼, 홍삼에 대해 미래유보
- 저장·창고 서비스 관련 농·축·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미래유보

● 부동산 서비스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국내법 수준으로 개방하고, 부동산 관련 여타 서비스(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 (미래유보)
 - ※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개방은 외국인들이 국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내 자격증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 WTO GATS에서 개방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의무 유보

- 부속서 I에 열거된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유보에 기재된 MA 제한에 따라 MA 의무가 유보*되며, 기타 부속서 I, WTO GATS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시장 접근 의무에 대해 미래유보가 적용
 - ※ MA 제한이 없는 경우 제한없이 개방을 의미하며, MA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제한에 대해서만 유보가 적용
 - ※ 부속서 부록-가에 기재된 분야는 GATS에서의 시장접근 약속이 개선됨

11. 금융서비스

개요

- 금융 서비스는 서비스의 한 분야이나 금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를 통해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투명성, 분쟁해결 등 규범을 약속

※ 국경간 서비스 챕터에서 금융 서비스는 적용 배제되며, 투자 챕터에서는 비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서비스만 적용 대상임

상세내용

1 적용범위 (제11.1조)

- 상대국의 금융기관,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 및 그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며 다음의 서비스는 적용 배제

- 공적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제도(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 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및 국가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금융기관(예: 수출입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 다만, 해당 금융서비스가 상업적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 등과 경쟁하여 공급하도록 허용된 경우에는 동 협정문에 적용됨

2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챕터의 일부 의무도 동 챕터 범위에 적용

- 투자 챕터의 의무 중에서는 수용 및 보상, 송금, 투자와 환경, 혜택의 부인,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가 적용
- 그 중 수용 및 보상·송금·혜택의 부인·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국경간 서비스무역 챕터 의무 중에서는 혜택의 부인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1.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지불 및 송금 의무가 적용

〈 동 챕터에 통합되어 적용되는 투자 · 국경간 서비스무역 챕터의 의무 〉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ISD 대상이 되는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 및 보상 송금 혜택의 부인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ISD 대상이 되지 않는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혜택의 부인 지불 및 송금* <p>* 단,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1.5조에 따른 의무 대상이 되는 한도로 통합</p>

2 일반적 의무

● 내국민대우 (NT : National Treatment) (제11.2조)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및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 및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
 - 상대국 금융기관은 상대국인이 지배하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지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을 의미
-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상대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 단, 국경간 무역 조항(CBT : Cross-Border Trade, 제11.5조)에 따라 부속서 가에 열거한 분야에 대해서만 내국민 대우를 약속

● 최혜국대우 (MFN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제11.3조)

-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및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및 그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MA : Market Access) (제11.4조)

- 당사국은 상대국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려는 투자자에 대하여 ① 금융기관의 수, ② 금융서비스 거래 · 자산의 총액, ③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총 산출량, ④ 자연인의 총 수, ⑤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SMBD : 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제11.8조)

- 상대국 금융기관의 고위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의 국적 제한 및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자국 거주 요건의 부과 금지

● 비합치 조치 (NCM : Non-Conforming Measures) (제11.9조)

- 상기 의무(NT, MFN, MA, LP, CBT)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속서 유보목록에 명시
- ※ NT, MFN, MA, LP 4개 의무는 현재유보(Annex I) 또는 미래유보(Annex II)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에 모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이며, CBT 의무는 부속서 11-가에 기재된 분야에만 적용되는 포지티브 방식임

3 신금융서비스 (제11.6조)

※ 신금융서비스란 상대국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자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의미

●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행위 없이 자국 금융기관의 공급을 허용할 수 있는 신금융서비스를 상대국 금융기관이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전별 인가제도 운용이 가능하나 건전성 사유로만 인가를 거부 가능

4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의 개방 (제11.5조 및 부속서 11-가)

●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란 상대국 금융기관이 당사국에 자점, 현지법인 등 설립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속서 11-가에 명시된 분야에 대해서만 국경간 금융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합의

〈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 〉

분야	개방범위
보험	(1) 해상·항공·우주보험 ○
	(2) 수출입적하보험 ○
	(3) 재보험 및 재재보험 ○
	(4) 보험 중개·대리 · 우리나라, 엘살바도르, 온두拉斯, 니카라과 : (1)~(3) 관련 보험에 한정 · 코스타리카 : 전면개방
	(5) 보험부수서비스* ○
	(6) 기타 · 코스타리카 : 다국적 기업에 대해 타국에서 요구하는 보험, 자국 내 자격 있는 기업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국경간 서비스 개방
은행 기타 금융	(1) 금융정보 제공 ○
	(2) 금융정보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
	(3) 은행 기타 금융 부수서비스** · 우리나라, 코스타리카 : 자국에서 발행된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조회·조사 서비스는 제외 · 엘살바도르, 온두拉斯, 니카라과 : 전면개방

* 보험자문서비스, 보험계り서비스, 위험평가서비스, 손해사정서비스 등

**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자문, 기업구조조정·전략수립 자문 등

5 건전성 제도 등 예외조치 (제11.10조, 부록 III-가)

●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목적 조치를 도입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하며, 이러한 경우 동 챕터를 포함한 투자, 통신, 전자상거래 챕터의 예외로 인정 가능

-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 금융기관 등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 금융제도의 완전성·안전성 보장을 위한 제도

● 우리나라가 WTO에서 유보한 내용은 동 협정의 예외인 건전성 조치에 해당하여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 건전성 조치 외에도, 비차별적인 통화·신용·환율 정책, 비차별적 금융 관련 송금 제한 조치, 금융 사기 및 범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는 동 협정의 예외가 됨

6 국책금융기관의 취급 (제11.1.3조, 부속서 III 대한민국 유보목록 12번째 유보)

● 국책금융기관을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거나 그에 대한 현재의 특별 대우를 유보목록에 기재

● 동 협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국책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 동 협정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내국민대우에 대해 유보하여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는 국책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7 금융서비스 관련 우리 유보

● 방카슈랑스 판매방법의 제한 유보

●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영업직원의 수, 동일 보험회사 상품의 판매비율 제한 등을 유보

● 국내 은행 지분소유 제한

● 국제적으로 신용력있는 은행만 10% 이상의 국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지분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보

● 외국은행 지점의 개별인가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신설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

● 한국거래소·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지분 제한

● 미래에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을 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보

● 주택 금융에 관한 유보

● 국민주택 청약과 같은 주택 금융 상품을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택 금융 프로그램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

8 금융서비스 관련 중미 유보

[코스타리카]

- 예금 수탁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은행, 비은행 금융기업, 저축 및 신용 협동 조합 등)은 코스타리카 법에 따라 설립이 필요
- 은행, 보험 이외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에 법인 설립을 요구 가능

[엘살바도르]

- 은행, 보험 이외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에 법인 설립 요구 가능
- 신용 정보 기록, 뮤추얼 펀드(mutual fund), 전자화폐, 증권, 연금, 고리업 방지를 위한 여신 이자율 관련 조치를 유보

[온두라스]

- 외국은행의 지점은 최소 2명의 대표자가 온두라스에 거주해야하며, 대표자가 사업 전반을 관리 책임지며 지점 운영 전반을 관할
- 은행, 보험 이외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에 법인 설립 요구 가능

[니카라과]

- 외국은행의 지점은 최소자본 요구를 만족해야하며, 본점 자본을 공개(공표)시 그 지점에 할당된 자본을 공개(공표)해야 함
- 은행, 보험 이외의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에 법인 설립 요구 가능

[파나마]

- 외국 은행의 파나마 지점 및 재보험사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2명의 대리인 지정이 필요(2명 중 1명은 파나마 국민이어야 함)
- 파나마의 모든 재산, 인(자연인, 법인)은 파나마에서 인가된 보험회사에 의해 보험을 적용받아야 함

※ 단, 파나마 부속서 11-가에서 기재된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 허용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2. 기업인의 일시입국

개요

- 양국간 교역 증진의 일환으로 상대국 기업인*에 대한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관련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 별도 작업반 설치를 통한 원활한 이행을 규정
- ※ 기업인(business persons): 상품무역, 서비스 공급, 투자 활동과 관련한 자연인
- 양측은 상대국의 사업상 방문자, 무역업자 및 투자자, 기업내 전근자에 대한 일시입국 허용을 약속

상세내용

1 협정문 주요 내용

가. 일시입국의 허용 (제12.3조)

-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이 공중보건·안전·국가안보 등 관련 출입국관리법령을 준수할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
- ※ 단, 일시입국의 허용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활동,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나. 정보의 제공 (제12.4조)

-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챕터에서 규정된 일시입국의 요건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공표하거나 이용가능토록 하여야함

다. 분쟁해결 (제12.5조)

-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거부에 관해, ①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② 해당 기업인이 가용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분쟁해결 챕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라. 협력 (제12.6조)

- 출입국 당국 간 기술적 지원 강화, 역량 향상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관련 정보, 경험 등을 교환하는데 노력하기로 함

마. 작업반 (제12.7조)

- 양국은 이 챕터의 이행, 운영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동 작업반은 출입국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

2 일시입국 대상자 구분 및 입국허용 기준 (부속서 12-가)

구분	요건 및 내용
Section A: 사업상 방문자 (Business Visi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록(Appendix) 12-가-1에 규정된 사업상 활동(business activities)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12-가-1[예시적 목록]: 기술, 과학 및 통계 조사, 회의 및 협의, 마케팅, 판매, 수출입된 기계의 설치 또는 보수 등 당시국은 기업인이 동 부록에 열거된 활동에 종사하려는 목적이며 현지 노동 시장 진입의지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요구 가능 당시국은 사전 허가절차, 노동인증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절차를 요구하거나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없음
Section B: 무역가 및 투자자 (Traders and Inves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국간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거나, 상당한 자본을 투자 혹은 투자 과정에 있으며 이 투자의 설립, 개발,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인 당시국은 사전 허가절차, 노동인증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절차를 요구하거나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없음
Section C: 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1년 이상 본국의 기업에 고용된 기업인으로 그 기업의 타 당사국 내 자회사, 지점, 계열사 등으로 전근하는 고위간부·경영진·전문가

13. 통신

개요

-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의 의무,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기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 정보 서비스(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약속을 규정
 - 통신 서비스는 다른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별도 장을 마련하여 주요 규범을 약속
 - ※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국경간서비스 장에서 다뤄짐
- 본문은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중미 4개국(코스타리카 제외), 코스타리카에 적용되는 3개의 부속서를 규정
 - ※ 코스타리카의 경우 협정문 본문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속서의 의무만 약속

상세내용

1.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3.2조)

- 각 당사국이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단, 당사국은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부여 가능
 - ※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 요건, 통신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요건, 망과 연결되는 단말장치에 대한 승인 및 기술적 요건, 자격, 허가, 등록 등 절차를 요구 가능

2 공중통신사업자에 관한 의무 (제13.3조)

● 공중통신사업자가 상대국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번호이동, 동등 다이얼을 비 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 ※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타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 ※ 번호이동(number portability) :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동등다이얼(dialing parity):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 공중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때 동등한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번호이동 의무는 유선전화에 적용시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화에서 적용 되지 않음
- 동등다이얼 의무는 국제전화에는 적용 배제됨
- ※ 번호이동, 동등다이얼 의무에 대해 니카라과는 부속서(13-나)에 따라 무선 서비스 공급자, 영세 지역 유선서비스 공급자에 적용 제외하고, 코스타리카는 부속서(13-다)에 따라 상호접속만 약속

3 지배적 공중통신사업자의 의무 (제13.4조~11조)

●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

- ※ 지배적 사업자 : 필수 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자신·자회사·계열회사 등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경쟁보장장치) 교차보조행위,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의 이용 등 반경쟁적인 관행에 관여하거나 지속하는 것을 금지
- ※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 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 (재판매)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 부과 금지
- ※ 재판매(resale) :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또는 통신서비스를 도매로 구입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소매로 제공하는 것

- (망 요소 세분화)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신규제 기관에 부여
- (상호접속) 상대국 사업자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상호접속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비차별적으로 제공
 - ※ 새로운 상호접속약정을 위한 협상, 표준상호접속약정 또는 시행 중인 상호접속약정 활용 등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기회 보장
- (전용회선 서비스)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 ※ 전용회선(leased circuits) : 공중통신사업자와의 임차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두 지점 간 또는 다지점 간을 직통으로 연결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기통신회선
- (설비 병설)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제공
-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상대국의 사업자에게 전주·관로·도관의 이용 등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 및 요율로 제공
 - ※ 전주(Poles) : 전신, 전화, 전등 등의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
 - ※ 관로(ducts) 및 도관(conduits) : 지하에 매설한 전화용 케이블을 한 데 모아서 수용하는 강관 및 지하터널

- 우리나라와 중미 4개국은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재판매, 망 요소 세분화, 전용회선 서비스, 설비 병설, 전주·관로·도관 및 선로설치권에 대한 접근 등 의무에 대해서는 무선 서비스를 적용 배제하며, 코스타리카는 부속서(13-다)를 통해 상기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의무 중 경쟁보장장치, 상호접속만 약속

※ 니카라과는 국내 규범 미비로 인하여 영세 지역 유선서비스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의무를 배제

4 기타 규범 (제13.12조~21조)

-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 공급자에게 대중에 대한 일반적 공급, 서비스 요율의 비용상 정당화, 서비스 요율표 제출,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 공중 통신망 이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해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 준수 등 의무 부과 금지

- 단, 반경쟁적 정보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또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기 조치도 가능

※ 정보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중통신서비스 이외의 모든 통신 서비스를 지칭하는 부가서비스를 의미

● **(규제기관의 독립성) 정보통신 규제기관이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관련 절차가 공평하도록 보장**

●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의 종류를 당사국이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규제 당국이 투명·비차별적·경쟁중립적인 형태로 지도·감독해 나갈 것을 규정**

※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산간 오지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

● **(허가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조치는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국은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수립 권한 보유

●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의 신청 및 사법심사 요청 가능**

※ 코스타리카의 경우 부속서(13-다)에 따라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동 규범을 약속

● **(투명성)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국내관련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 보장**

14. 전자상거래

개요

전자상거래챕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

- 강행규정으로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에 대한 무관세 및 비차별대우(내국민 대우)를 규정
- 그 외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상거래 전반과 관련된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비강행 조항으로 규정

상세내용

1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제14.2조)

-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서비스·투자·금융 챕터의 관련 규범과 유보안 적용대상이 됨을 확인

2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제14.3조제1항)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 및 수수료 부과를 금지함

※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 또는 그밖의 제품 (디지털화된 금융상품은 제외)을 말함

- 전달매체(예: CD 등)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은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무관세를 적용하면서 해당 디지털 제품의 세번을 구체적으로 특정함
- 단, 이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세 대상 제품에 대해 내국세나 기타 국내 부과금은 부과 가능

3 디지털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transmitted electronically)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

* 등 디지털제품이 상대국 영역에서 창작, 생산,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으로 처음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및 그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상대국의 국민인 경우

- 투자 챕터, 국경간 서비스무역 챕터, 금융서비스 챕터에 따른 비합치조치에는 내국민대우 적용 배제

4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제14.4조)

- 전자상거래에서 사기·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

5 개인정보 보호 (제14.5조)

-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

6 종이없는 무역 (제14.6조)

- 전자적 형태의 무역행정문서*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그 법적 효력을 종이 문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력

* 무역에 사용되는 문서 중 정부에 의해 발행 또는 관리되는 문서를 지칭하며, 원산지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

7 타챕터와의 관계 (제14.8조)

- 전자상거래 챕터와 다른 챕터간 불일치의 경우, 다른 챕터가 우선

8 협력 (제14.7조)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 공유, 전자상거래 이용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애로 극복 지원 협력, 지역 및 다자 포럼 참여에 노력

15. 지식재산권

개요

- 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특허·민형사조치·국경조치 등에 걸쳐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중미 역내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세내용

1 비전형상표 (제15.8조 제2항)

- 소리로 구성된 표지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며, 냄새로 구성된 표지의 상표 등록 가능성을 인정

※ 예시 : Intel 효과음/MGM 사자 울음소리(소리상표),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냄새상표)

2 상표등록권자의 권리 (제15.8조 제3항)

- 상표 등록권자는 제3자가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
-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3 유명상표 보호 (제15.10조)

- 유명상표의 판단에 있어, 상표 등록, 유명상표 목록에 포함, 사전에 유명상표로 인정되었을 것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음

-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유명상표권자와 그 상품·서비스 간 연관성이 나타나고, 그러한 사용으로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리협약 제6조의 2를 준용하여 동 유명상표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

※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

-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유명상표와 혼동이나 오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 상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

4 상표출원 절차 개선 (제15.11조)

- 상표 등록에 대해 ①거절 이유의 서면 통보, ②거절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최종 거절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이해관계자에게 상표 등록 전 출원에 대한 이의제기, 상표 등록 후 상표의 취소·무효를 청구할 기회 보장, ④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그 결정은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

5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 불요 [제15.13조]

- 상표 사용권의 효력발생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주장을 위한 요건으로 전용사용권의 등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 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6 특허 대상 제외 범위 (제15.14조)

-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외과적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 그리고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절차 및 미생물적인 절차

7 특허 공지예외 요건 완화 (제15.16조)

-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발명자 자신이 공지한 발명에 한해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하는바, 해당 예외기간을 12개월로 규정

8 특허 출원의 보정·정정·의견진술 (제15.17조)

- 특허 출원자에게 자신의 출원에 대해 보정·정정·의견제출 기회를 최소 1번 제공할 의무

9 특허 우선심사 제도 (제15.19조)

-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을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제도의 도입 기반 마련

10 자료보호 (제15.20조)

- 신규 의약품·농화학품 시판허가를 조건으로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관련 미공개자료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보호하며, 신약은 최소 5년, 신규 농화학품은 최소 10년을 보호

11 디자인 보호 (제15.21조)

-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된 물품의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
- 미등록 외관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

12 저작권 · 저작인접권자의 배타적 복제권 (제15.26조)

-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 실연, 음반에 대해 모든 방식 및 형태의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 부여

- 복제의 범주에 영구적 복제 외에도 일시적 복제를 명시적으로 규정

※ 일시적 복제(Temporary Reproduction) : 컴퓨터로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이용할 경우 RAM(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

13 기술적 보호조치 (제15.32조)

-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효과적인 법적 구제절차 제공

-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행위

※ 기술적 보호조치(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물에 대한 접근 제한이나 복제 방지를 위한 통제조치

-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장치 · 제품 · 구성품을 거래(제조 · 수입 · 배포 등)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4 권리관리정보 (제15.33조)

-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뿐만 아니라 비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

※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을 이용을 위한 계약 체결이나 권리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 방송 · 전송에 수반

- 저작권 · 저작인접권 침해를 유인 · 가능 ·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게 할 것을 알면서 권한없이 행하는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민 · 형사 구제절차를 제공

- 권한 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 변경하는 행위

-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동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하기 위해 수입하는 행위
-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변경된 사실을 알고 저작물 등을 배포·공연·방송·전송하거나 배포하기 위해 수입하는 행위

15 암호화된 위성신호의 보호 (제15.35조)

-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위성신호를 불법으로 해독하는 기기 등을 이용한 무단 시청·청취·재배포와 관련된 아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민·형사 구제절차 제공
 - 배포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위성신호를 해독하는 기기·시스템을 제조·조립·변경·수출입·판매·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된 신호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사용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
 -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배포자의 허락 범위를 넘어 적법하게 해독된 위성신호를 고의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

16 집중관리단체 (제15.36조)

-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사국 간 콘텐츠의 용이한 접근·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중관리단체 간 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인식
-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에 있어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집중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

17 방송사업자 권리 강화 (제15.42조)

-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의 복제·동시중계방송에 대한 배타적 허락권 부여
-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50년간 보호할 의무 규정

18 권리자 추정 (제15.45조)

-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민·형사 및 행정 절차에서 저작물·저작인접물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름이 표시된 자를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로 추정

19 법정손해배상 제도 (제15.48조)

- 저작권·저작인접권(음반, 실연) 침해 및 상표위조 관련 민사 소송에서는 권리자가 실손해금액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

20 소송비용 (제15.49조)

- 저작권·저작인접권 등의 침해 관련 민사 소송의 종결시에 패소자가 승소자의 법정 비용 및 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

21 침해물품 압류 (제15.50조)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침해 물품,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 상표 위조의 경우,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도 규정

22 침해물품 폐기 (제15.51조)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 상품의 폐기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를 보상 없이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표위조 물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부착된 위조상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물품을 상거래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

23 정보제공명령 권한 (제15.52조)

- 지재권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되어 침해자가 소유·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권리자 또는 법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24 비밀유지명령 (제15.53조)

- 민사재판 당사자, 소송대리인,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25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5.58조)

-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26 일방적 잠정조치 (제15.59조)

- 일방적 잠정조치 요청에 당사국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규정
- 잠정조치 관련,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것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27 직권 국경조치 (제15.63조)

- 수입·수출·환적물품이 상표위조·저작권침해 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세관이 직권으로 국경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28 인터넷상 반복침해 금지 (제15.70조)

-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 규정

29 지재권 위원회 (제15.73조)

- 지재권 챕터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해 지재권 위원회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회합하기로 규정

16. 노동

16
하

개요

- ILO 선언의 기본 노동권 존중 노력, 자국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법적으로 인정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절차 보장 등을 규정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 및 노동위원회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함

상세내용

1 일반 원칙 (제16.2조)

-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상의 아래 원칙을 국내법 등에 채택 및 유지하도록 노력
 - ※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② 모든 형태의 강제적 노동 철폐, ③ 아동 노동의 효과적 폐지, ④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철폐
- 당사국이 자국의 정책과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 · 규정 및 관행 등 운영할 권리를 존중함
- 당사국 간 무역 ·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 관련 국내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을 면제하거나 이탈하지 않을 것을 규정
 - 자국 노동법 등이 보호무역주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

2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제16.3조)

- 노동법 집행을 위한 절차 및 제도가 이해관계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투명, 공정, 공평할 것을 보장

- 노동법 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노동 챕터에 따라 이행된 활동을 자국 대중에게 알리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음

3 제도적 장치 (제16.4조)

-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위해 노동부 또는 유관 부처에 접촉선을 지정
- 노동 챕터의 운영 및 협력 활동 등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달리 합의 하지 않는 경우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시 회합함을 규정

4 협의 (제16.5조)

- 노동 챕터의 이행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 대화와 협의(consultation), 협력 (cooperation)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
- 접촉선을 통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무 협의 및 필요시 노동 위원회를 통해 사안 해결에 대한 권고 등을 도출

- 동 챕터 내 사안에 대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

5 협력 (제16.6조)

- 상호 관심분야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협력 활동 추진 가능

- 인적 교류, 정책 등 정보 공유, 공동연구 등

17. 환경

개요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의 지속기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대중참여 메커니즘의 개발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규정 마련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제22장(분쟁해결) 적용을 배제하고, 접촉선 및 환경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것을 규정

상세내용

1 배경 및 목적 (제17.1조)

-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과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함
 - 환경법의 효과적인 적용,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전통지식의 보존 증진 노력,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강화 등 규정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

2 적용범위 (제17.2조)

- 환경문제의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유지할 경우, 동 챕터를 적용하도록 규정

3 일반원칙 (제17.3조)

- 당사국들이 지속가능발전 목적에 맞는 상호 보완적인(mutually supportive) 무역과 환경 정책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생물다양성 및 자국의 자원에 대한 적절한 이용을 규정
- 천연자원에 대한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환경 관련 정책 및 우선순위의 채택·수정에 대한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차 표명함으로써 환경 주권 침해 우려를 불식

4 구체적 약속 (제17.4조)

- 자국의 법·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감소시켜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인정
-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참여 메커니즘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
- 자국의 법·정책이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합치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

5 법 집행 (제17.5조)

-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및 작위·부작위의 지속적 과정을 통해 자국 환경법과 규정의 효과적인 집행 의무를 불이행할 수 없음을 규정

6 절차적 보장 (제17.6조)

- 법으로 인정된 이해관계인이 자국 환경법 집행을 위한 재판소(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그 밖의 관련 재판소)에 적절히 접근할 권리를 보장
 - 공정·공평·투명한 절차 보장하며, 당사자의 권리집행 보장을 위한 구제청구권을 제공하도록 규정

7 투명성 (제17.7조)

- 당사국 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의 보호 조치를 자국법에 따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도입·이행하기로 합의

8 환경위원회 (제17.8조)

- 양 당사국 행정부의 적절한 고위공무원으로 환경위원회를 구성

※ 합의된 협력활동의 작업계획 수립·감독·평가, 대화의 장(forum), 동 챕터 이행 및 당사국 들의 동의에 의한 그 밖의 조치 이행 등 기능 수행

9 접촉선 (제17.9조)

- 협정 발효일 이후, 당사국 간 환경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여 운영

10 환경 협의 (제17.10조)

- 동 챕터의 해석 또는 이행 관련 사안에 대해 당사국 간 직접적인 대화, 협의(consultation), 협력(cooperation)을 통해 우호적이고, 신의성실하게 해결함에 합의

● 상대국 접촉선에 서면을 전달함으로써 협의를 요청하고, 접촉선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은 위원회에서 논의

11 협력 (제17.11조)

- 환경법 및 다자간환경협정의 집행 등 제도적 역량 강화, 대기·수질 등 환경 관련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활동의 증진에 합의하고,

● 협력활동이 당사국 개발 전략 및 국가적 우선순위와 합치하고, 대중참여 기회 창출하며, 경제 및 사법체계 고려하도록 규정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18. 협력

개요

- 협력의 적용범위(제1조)와 목적(제2조)를 규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제6조)을 규정

상세내용

1 협력위원회 (제19.4조)

- 한-중미 양측은 협력 사업의 수립, 검토, 평가를 위해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 설치
 - (주요 기능) 협력 사업 작업 계획의 제안·수립, 협력 사업 제안의 검토 및 평가, 협력 사업의 이행 및 평가 등
 - (운영)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년 1회 회합

2 협력 분야 (제19.5조)

- 한-중미 양자간 협력 분야는 아래와 같으나, 당사국들이 별도로 합의하면 다른 분야에서 협력도 가능
 - 영세 및 중소기업
 - 문화(관광 및 시청각 서비스 포함)
 - 더 우호적인 기업환경 증진
 - 보건의료 산업
 - 농업, 축산(농공업 포함)

- 산업 및 상업(섬유 및 의류)
- 과학 및 기술(정보기술 및 통신 포함)
- 운송, 물류 및 유통
-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산림 및 재생에너지 포함)
- 어업 및 양식
- 금융서비스 분야, 등

● 또한, ①영세 및 중소기업, ②시청각 공동제작 및 서비스, ③기업활동 개선, ④보건산업 등 4개 분야는 별도의 부속서를 규정

- 영세 및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경험 공유 및, 상호발전과 투자 유입 촉진
-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 등 영역에서의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제작과 교류 촉진
- 무역,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좀 더 호의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보건산업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기술교역, 상호투자 등 규정

3 **분쟁해결 (제19.7조)**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 배제

19. 경쟁

개요

- 경쟁법 집행의 일반 원칙 준수, 공기업 및 지정 독점 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등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체적 내용 포함
- 경쟁당국간 통보, 협의,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협력 수단을 마련하여 양국간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 가능

상세내용

1 법 집행원칙 및 이행 [제20.2조 및 제20.3조]

- 양국은 경쟁법 및 경쟁 당국을 유지하며, 경쟁법과 그 이행은 투명성 · 시의 적절성 · 비차별성 · 절차적 공정성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
 - (투명성) 경쟁법 관련 규정의 공개, 경쟁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문은 결정의 법적근거와 관련사실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제공
 - (절차적 공정성) 청문시 피심인에 의견 진술권 · 증거 제출권 제공,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 조치에 대해 피심인의 재심 청구권 보장

2 협력 (제20.4조)

- 양국은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 법에 따라, 통보, 협의, 정보교환, 기술지원의 방식으로 협력

3 통보 (제20.5조)

- 일방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집행 내용을 타방 당사국에 통보

4 협의 (제20.6조)

-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또는 경쟁챕터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양국간 협의 진행

- 단, 협의는 경쟁법을 채택·유지·집행하는 각 당사국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음

5 정보의 교환 및 비밀 유지 (제20.7조)

- 양국은 경쟁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상대국에 비밀이 아닌 정보 제공

- 정보 제공은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각 당사국의 법령과 부합해야 함

6 기술지원 (제20.8조)

- 양국은 가용자원 범위 내 경쟁분야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

- 경쟁법 및 정책 집행 관련 경험의 교환,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경쟁문화 증진 등

7 공기업과 지정독점 (제20.9조)

-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대해서도 경쟁법을 적용하며,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대해 반경쟁적 행위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도록 보장

8 분쟁해결 (제20.11조)

- 동 챕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FTA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 배제

20. 투명성

1 공표 (제18.1조)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국내법·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
- 가능한 한도에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안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2 통보 및 정보의 제공 (제18.2조)

- 다른 쪽 당사국의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조치안 포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
-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되는 조치(조치안 포함)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 모든 통보, 요청 또는 정보는 다른쪽 당사국에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제공

3 행정절차 (제18.3조)

-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에 가능한 경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개진 기회 제공

4 재심 및 불복청구 (제18.4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 또는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유지

5 정의 (제18.5조)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모든 인(人)과 사실상황에 적용되고 행위 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의미

21. 분쟁해결

개요

-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 → ②공동위원회 개입 → ③패널 설치 → ④패널보고서 제출 → ⑤패널보고서 이행 → ⑥보상 및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협정상 절차, 분쟁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모두 해당할 경우, 제3국에 선택권을 부여하되, 하나를 선택한 경우 다른 절차의 이용을 제한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협의, 중재패널, 이행, 보상 및 보복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양허·기타의무 정지(혜택 정지) 절차를 규정

상세 내용

1 협력 (제22.1조)

- 협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합의,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협력 및 협의 노력을 규정
- 분쟁해결 장에 따라 제기되는 사안에 대한 모든 해결방안은 당사국들간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통보

2 범위 (제22.2조)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

-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SPS, 노동, 환경, 협력, 경쟁 챕터 외 챕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발생하는, “①협정상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②협정상 의무 불 이행, ③비위반 제소”에 대하여 적용

※ 무역구제 챕터의 제1절(긴급수입제한조치), 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도 적용 배제
※ 비위반제소 대상 : 제2장(상품), 제3장(원산지), 제6장(TBT), 제8장(정부조달), 제10장(서비스)

3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22.3조)

- 분쟁이 ①이 협정, ②WTO협정, ③당사국들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 포럼 선택 가능
 -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시, 다른 절차의 이용 제한

4 협의 (제22.4조)

- 요청국의 서면 협의 요청 → 피요청국은 접수 10일 내 서면 응답
→ 30일(부패·계절상품 : 15일) 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협의 개시 →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60일(부패·계절상품 : 20일) 내 종결 간주
- 기한내 협의 미실시 또는 미합의의 시, 요청국은 공동위원회 회부 가능

5 공동위원회 회부 (제22.5조)

-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부패·계절상품 : 20일) 내 사안이 미해결 시, 요청국은 서면으로 공동위원회 회부 가능
 - 공동위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 필요시 동일 조치·사안에 관련된 들 이상의 절차를 결합 가능

6 주선, 조정 및 증개 (제22.6조)

➊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당사국들은 주선, 조정, 증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당사국들의 입장은 비공개로 유지

- 당사국들은 절차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으며, 절차가 당사국들간 합의 없이 종결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 가능

7 패널의 설치 (제22.7조)

➊ 협의 및 공동위원회 절차를 거치고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서면으로 패널설치 요청 가능

※ 제안된 조치(proposed measure)에는 미적용

➊ 패널설치 요청 자격이 있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 서면통보를 통해 중재 패널절차에 제소국으로 참여 가능, 참여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아래 분쟁해결절차를 자제

※ ①이 협정의 분쟁해결, ②WTO협정상 분쟁해결, ③이 협정상 분쟁해결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제소국과 피소국이 당사자인 다른 자유무역협정상 분쟁해결

➊ 패널은 요청서 접수일에 설치되며, 패널선정 시 아래 절차가 적용

패널 구성(제22.7조 제8항 ~ 제13항)

- ① (인원)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8항가호)
- ② (의장) 당사국들이 의장이 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후보명부 구성원 중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자 중 추첨(8항마호)
- ③ (공동제소) 둘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제소(피소) 시 패널위원 선정에 미합의한 경우 추첨에 따라 선정된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을 대표(9항)
- ④ (후보명부) 각 당사국의 국민 3인과 당사국들의 국민이 아닌 개인 최소 8인 포함 (최소 3년 임기, 3년마다 재검토, 10항)
- ⑤ (해임) 행동규범 위반 시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해임 가능(11항)

8 모범절차규칙 (제22.8조)

- 패널은 공동위원회가 제정한 모범 절차규칙에 따라, 의견청취와 정보보호 및 공개 등 사항을 보장

9 제3당사국 (제22.9조)

- 제3당사국은 ①패널에 서면입장 제출 가능, ②패널절차 대상 조치가 협정상 자국 이익을 무효화·침해 시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이용 가능

※ 제3당사국 : ①분쟁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②자국의 이해관계를 분쟁 당사국 및 기타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당사국

10 패널 보고서 (제22.10조)

- 패널은 의장 임명 후 90일 내 조사결과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들에 제출하고, 이로부터 30일 내 최종 보고서 제출

11 절차의 정지 및 종료 (제22.11조)

- 분쟁 당사국들은 12개월 범위 내에서 패널 업무 정지에 합의 가능하고,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를 경우 종료에 합의 가능

12 불이행 및 혜택의 정지 (제22.13조)

- 제소국은 아래 사유에 따른 보상 불이행 시, 협정에 의해 피소국에 부여된 혜택의 정지를 통보하고, 그 15일 이후 혜택의 정지 가능

※ ①30일 내 보상에 대해 미합의, ②합의하였으나 피소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제소국이 판단되는 경우

- 불합치·무효화·침해 조치가 이 협정과 힘지되게 된 때 또는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의 해결에 달리 합의한 때까지 한정하여 적용

● 피소국이 복수의 중미 국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일부가 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혜택의 정지를 종료

13 이행 검토 (제22.14조)

- 피소국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무효화·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패널에 회부 가능
- 피소국이 불합치·무효화·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국은 정지하였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

14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22.17조~19조)

- 국내 사법·행정 절차상 이 협정의 해석·적용 문제 발생 시 다른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된 해석 또는 자국의 견해를 제출 가능
-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자국 법에 그 당사국에 대한 제소권을 규정할 수 없음
- 각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적 당사자 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사용을 장려



KOREA-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22. 예외

1 일반적 예외 (제23.1조)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 GATT 제20조와 관련 주제 적용 챕터 :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무역구제)
- GATS 제14조 적용 챕터 :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투자)

참고 : GATT 제20조/GATS 제14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GATT 제14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

2 필수적 안보 (제23.2조)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 현장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3 과세 (제23.3조)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 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조항 : 제2.2조(내국민 대우), 제2.12조(수출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3조(최혜국 대우)
 - ※ 다만,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 허가 가능
-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전 권한있는 당국에 먼저 제기하고,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SD 제소를 진행
 - ※ 동조 제6항은 과세조치의 수용 구성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4 정보의 공개 (제23.4조)

- 협정상 어떤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 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5 국제수지 보호조치 (제23.5조)

-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적인 수입조치 채택 가능
- 해당 조치의 채택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

23. 제도 및 최종 규정

① 공동위원회 (제21.1조)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엘살바도르 경제부, 과테말라 경제부,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니カラ과 개발산업통상부, 파나마 통상산업부의 장관급 대표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 한국과 중미공화국의 하나 이상의 국가 간 양자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공무원이 회합할 때 공동위원회가 회합하여 결정을 채택할 수 있으나 나머지 중미 공화국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고지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당사국들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정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협정의 추가적 구체화를 감독하고,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 검토
-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고, 비정부 인(人)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하고, 협정 개정을 권고하고,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 및 공동 위원회 절차 규칙을 채택하고, 협정의 목적의 이행을 수정할 수 있음
- 양 당사국은 매년 정기 회기로 회합하고, 한 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 특별 회기로 회합
-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② 협정 조정자 (제21.2조)

- 각 당사국은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공동위원회 결정 또는 권고의 후속조치를 위해 협정조정자를 임명

※ 협정조정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FTA이행과장 또는 그 승계인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대외무역국장 또는 그 승계인
(엘살바도르) 경제부 무역협정국장 또는 그 승계인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협정운영및교섭국장 또는 그 승계인
(니카라과) 산업통상개발부 대외무역국장 또는 그 승계인
(파나마)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운영및상업방어국장 또는 그 승계인

3 접촉선 (제21.3조)

- 양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

4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제24.1조)

- 협정문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구성

5 개정 (제24.2조)

- 각 당사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당사국들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모든 당사국이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

6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제24.3조)

- 이 협정에 통합된 WTO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7 가입 (제24.4조)

-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도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은 모든 당사국과 가입하는 국가 또는 국가집단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날 발효

8 발효 (제24.5조)

- 이 협정은 한국과 중미공화국의 하나 이상의 국가가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 중 더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한 다른 날 발효
-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당사국은 서면으로 각 당사국에 통보

9 철회 및 종료 (제24.6조)

- 각 당사국은 서면 통보로 이 협정으로부터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모든 당사국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80일 후에 효력 발생
- 한국이 철회하는 경우 모든 당사국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80일 후에 협정이 종료되며, 중미공화국의 한 국가가 철회하는 경우 남아있는 당사국들에 효력 유지

10 유보 및 해석적 선언 (제24.7조)

- 이 협정은 일방적 유보나 일방적 해석적 선언을 불허

11 정본 (제24.8조)

-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